

II. 손해배상청구사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내용을
임의로 과장, 왜곡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 또는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2. 15.자 판결(91가합38193)
서울고등법원 1994. 1. 11.자 판결(93나6210)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는 1994년 1월 1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등이 (주)파스퇴르유업(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게 5천만원, 원고 권 에게는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자사제품인 파스퇴르우유의 장점을 선전하기 위하여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내용을 임의로 과장, 왜곡하여 발표에 들어있지 아니한 내용을 삽입하는 등 그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내용을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혀 다른 의미나 내용으로 이해하도록 한 것으로, 피고는 이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 또는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원고등은 우유의 저온살균방법제품과 초고온살균방법제품간에 영양성 및 안정성에 대한 품질비교시험을 실시, 공표하라는 여론에 따라 저온살균법에 의한 파스퇴르 우유와 초고온살균방법에 의한 3·4우유등 9개사의 우유를 수거 품질검사한 시험결과의 글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주)파스퇴르유업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직원인 권 가 취미삼아 연습삼아 시험을 하고 과학술어조차도 자기의 형편대로 해석, 사용하였다거나, 사과도 삶아먹

어야 비타민 C가 5배로 증가한다는 식의 분석결과나 장난 같은 무기분석데이터를 마치 영양과 직결되는 양 발표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직원인 권 가 경제기획원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비위를 맞춰 출세를 꿈꾸어 국민보전에 해를 준다는 취지를 광고의 형식으로 일간신문에 게재하자, 원고등은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위 각 광고의 게재로 인하여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저하되고 원고 권 가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주)파스퇴르유업은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게 7천만원, 원고 권 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쌍방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1審 判 決 文

사 건 : 91가합38193 손해배상(기) 등

원 고 : 1. 한국소비자보호원(韓國消費者保護院)

서울

대표자 원장

2. 권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달 수

피 고 : 파스퇴르유업(乳業)주식회사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4리 1334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 승 영

변론종결 : 1992. 11. 17.

- 주 문 :** 1. 피고는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게 금 70,000,000원, 원고 권 에게 금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1. 5. 30.부터 1992. 12. 15까지는 연 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게 금 100,000,000원, 원고 권 에게 금 30, 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의 각 제1면 광고란에 별지 기재 활자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라.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제1호증의 1 내지 21, 갑제2호증의 5 내지 13, 갑제3호증의 5, 6, 7, 24 내지 34, 36 내지 41, 43,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 6, 7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 9, 10, 12호증, 갑제13호증의 1, 2, 갑제14호증의 1 내지 4, 갑제16호증의 1 내지 16, 갑제17호증의 3, 4, 갑제18호증, 을제1 내지 4호증,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2, 을제10호증, 을제11호증의 4 내지 12, 을제12호증의 5 내지 9, 12, 14, 15, 17, 18, 19, 33의 각 기재와 증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보호법(1986. 12. 31. 법률 제3921호) 제26조를 근거로 하여 정부출연기금을 재원으로 1987. 7. 1 설립된 특수공익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제17조에 의거,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시책의 연구 및 건의, 물품 및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실시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1987. 경부터 우유의 저온살균방법 제품과 초고온살균방법 제품간에 영양가 차이 분쟁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우유의 영양성 및 안전성에 대한 품질비교 시험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공포하라는 여론이 일고 국정감사시에도 이 문제가 제기되자 1989.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약 4개월간에 걸쳐 저온살균방법에 의하여 피고가 제조한 파스퇴르우유와 초고온살균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3.4우유, 두산우유, 롯데우유 등 9개사의 우유를 수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위 시험대상제품을 선정함에 있어 저온살균 및 초고온 살균 제품별로 시장점유율이 크고 서울지역에서 구입가능한 제품을 선택하였고, 식품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식품학계 교수 3인, 영양학계 교수 1인, 식품연구기관 1인 총 5인)의 심의를 거쳐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을 선정한 후 식품공학을 전공한 기술요원인 원고 권 (당시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식품연구실 주임연구원이었다)등으로 하여금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자동단백질분석기 등 18종의 장비를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

하게 한 다음 시험결과에 대하여 다시 위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적인 평가를 내렸다.

(3)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험한 항목은 품질면에서는 성상, 산도, 비중, 무지고형분, 유지방분이고, 안전성면에서는 세균수, 대장균수, 항생물질, 포스파타아제, 유산균수이며, 영양성면에서는 단백질, 카제인, 단백질환원가(이상은 일반성분임), 비타민 A, 비타민 B₂, 비타민 C(이상은 비타민류임), 칼슘, 인, 칼슘과 인의 비율(이상은 무기염류임), 단백질 등으로 총 21개 항목인데, 파스퇴르우유의 경우 단백질, 인, 무지고형분은 최고치, 비타민 B₂, 칼슘, 단백질은 2~3번째로 나타나 초고온살균 제품에 비해 비교적 우수하고, 비타민 A는 5번째, 비타민 C, 카제인은 최저치를 나타내고, 세균수는 초고온살균제품에서는 한마리도 나오지 않은 반면 파스퇴르우유에서는 1ml당 3,800마리가 나오고, 유산균도 초고온살균 제품에서는 한마리도 나오지 않은 반면 파스퇴르우유에서는 1ml당 550마리가 나왔으며 단백질환원가는 최저치를 나타냈다.

(4)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러한 시험항목별 데이터를 발표하고, 이러한 항목별 수치를 종합하여 시험대상 우유제품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며 시험항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영양가는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종합적 평가를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가). 유산균수에 대하여는 유산균 음료에서의 법정기준치가 1ml당 1천만마리 이상이어야 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파스퇴르우유의 유산균은 만족한 수치로 볼 수 없고, (나). 단백질환원가에 대하여는 단백질환원가는 단백질의 열처리 정도를 측정하는 수치로서 이는 고소한 맛과 관계가 있고 영양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유의 단백질이나 칼슘 등 영양가치의 분석은 무기분석방법에 의하여 분석하여서는 안되고 유기분석방법에 의하여 분석되어야 함에도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단백질 및 칼슘을 무기분석방법으로 분석하여 파스퇴르우유 속의 단백질이나 칼슘이 다른 제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화학분석의 기본원칙도 모른 채 시험한 결과이고, 단백질환원가는 단백질이 열에 의하여 변성된 것으로 이는 단백질의 파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파스퇴르우유가 단백질환원가가 낮은 것은 중요한 것임에도 이를 단백질의 맛에 관련될 뿐이라고 한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는 무지의 소치이며, 파스퇴르우유에 함유된 비타민 C의 양이 다른 우유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온 결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믿을 수 없고, 또한 유산균도 요구르트의 유산균은 인공적으로 배양된 것이므로 1ml당 2억 내지 10억마리 이상이 필요하나, 우유의 유산균은 천연 유산균이므로 힘이 강하며 1ml당 550마리만 들어있어도 우유의 부패를 억제하고 건강에 좋은 영양을 주

는 것임에도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파스퇴르우유 속에 들어 있는 유산균의 수가 너무 적어 있으나 마나 하다고 한 것은 우유와 요구르트를 혼동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였다.

(가) 1989. 8. 22. 세계일보, 같은 달 23. 서울신문, 같은 달, 25. 동아일보

『세계적인 공인단체 I.D.F(국제유업연맹)에서는 금년도 결정판으로 「우유의 열에 의한 영향」에 관한 논문집이 나왔습니다. 그에 의하면 !!!!』이라는 제목 아래 「한국경제기획원 산하단체인 소비자보호원에서 8월 18일 T.V. 저녁 9시 뉴스와 19일 중요 일간지에 발표한 ‘저온과 고온우유의 영양가치 별 차이없다’는 해괴망측한 폭탄발표에 답변드립니다.(광고상의 활자가 크게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하 같이 표시한다.) U.N. 식량기구에서조차도 그 권위와 발표를 절대적으로 믿고 이를 응용하는 세계적인 공인단체 I.D.F(광고상의 활자가 고딕체로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하 같이 표시한다.)에서는 1989년 판으로 우유가 열에 의하여 얼마만큼 많이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또 70℃ 이상에서 일단 변화된 우유는 다시 온도가 내려진다 해도 가역반응(우유의 질이 원상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일으키지 않고, 변한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우유에 관한 열의 영향에 대해 결정판을 냈습니다. 다음 신문광고에는 소비자보호원 분석의 허구성과 조그마한 소비자보호원 검사부와는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 학술연구단체에서 분석한 우리나라 우유의 분석결과 즉 열에 의한 손실량이 15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초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I.D.F(국제유업연맹) <우유의 열에 의한 영향>에 관한 결정적인 논문집 I.D.F 238호 제3집 알부민단백질 제4장 카제인칼슘을 그대로 인쇄하여 준비하고 있으니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나) 1989. 8. 28. 동아일보, 같은 달 29. 세계일보, 같은 달 30. 조선일보, 같은 해 9. 7. 한국일보

『사과도 삶아 먹어야 비타민 C가 5배로 증가한다는 식의 소비자보호원 분석결과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라는 제목 아래 「정부예산으로 움직이는 소비자보호원이 터무니 없는 장난으로 소비자를 우롱한다면 그 대가를 어디에서 받으려고 합니까? 소비자보호원의 기존 우유와 파스퇴르우유의 분석결과를 보면 비타민 C가 고온 우유에는 1.6mg인데 비하여 저온우유에는 그것의 5분의 1에 지나지 않는 0.3mg입니다. 삶으면 삶을수록 비타민 C가 늘었다는 결론입니다. 비타민 C의 섭취를 위하여 주로 먹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류도 신선한 그대로 먹을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폭폭 삶아 먹어야 비타민 C가 5배 이상 늘어난

다는 것과 같은 당신의 결론입니다. 소비자보호원 권 씨!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학교 학생조차도 믿기 어려운 분석결과가 아닙니까? 소비자보호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여도 되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데이터 때문에 좋은 우유를 마실 기회를 놓친 국민이 있다면 당신은 그 죄의 대가를 무엇으로 보답하려고 합니까? 모름지기 과학자는 신중하고 정확하여야 합니다. 다음 광고에 당신의 말도 되지 않는 분석결과를 계속 밝히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고온살균 우유가 짧은 시간에 멸균되기 때문에 영양의 손실이 적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63℃ 30분과 동일한 우유의 화학적 변화를 135℃에 있어서는 0.01초입니다. 0.01초내에 4℃의 우유를 135℃로 올렸다가 다시 4℃로 내린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실험실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다) 1989. 8. 30. 조선일보, 같은 해 9. 1. 한국일보, 같은 달 5. 동아일보, 같은 달 8. 국민일보

『소비자보호원 권 씨는 대학교 1학년 실습 학생입니까? 책임감 없는 자연과학자인니까?』라는 제목 아래 「영양가치의 분석을 무기분석으로 하였다니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실습용으로 한 것입니까?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분석에 대한 취미를 돋우기 위해서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질소량을 분석하여 그 질소량의 수치를 기초로 단백질의 양을 추정하는 방법을 흔히들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화학 초년생이 연습삼아 하는 것이요, 어디까지나 부정확하고 단백질 분석으로서의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분석에는 비단백태 질소화합물(예를 들면 요소등)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 이런 물질이 얼마만치 포함되었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추정치에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비단백태 질소화합물(예를 들면 요소)은 단백질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함유된 비단백태 질소화합물(예를 들면 요소)의 다과에 따라서 추정 숫자의 정확성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단백질을 무기분석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은 마치 인간사회에서 다 같은 사람이라 하여도 그 사회 그 민족에 유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필요 내지 해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단백질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를 나누어서 종류별로 함유량을 검사하여야만 비로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은 유기분석이 아니고서는 절대 무기분석으로 되지 않습니다. 권 씨는!! 세균의 죽은 찌꺼기도 무기분석하면 단백질로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세균의 죽은 찌꺼기도 무기분석에는 단백질로 나옵니다. 당신의 분석대로라면 세균의 죽은 찌꺼기가 많은 우유가 단백질의 수치가 높아지니 결과적으로 세균의 죽은 찌꺼기가 많은 우유가 단백질이 많은 좋은 우유라는 결론이 됩니다. 권

때 씨!! 당신은 우리 회사 직원의 물음에 무기분석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연습삼아 취미삼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정확하고 아무런 의미없는 데이터를 공표하여 사회보건문제와 연관시킴으로써 소비자를 현혹시켜야 되겠습니까? 권 씨!! 당신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의 직원입니다. 당신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잘못으로 좋은 우유의 선택의 길을 잃고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면 당신은 그 죄의 대가를 어디서 받으려고 하십니까?...」라는 내용의 광고

(라) 1989. 9. 1. 한국일보, 같은 달 5. 동아일보, 같은 달 8. 국민일보

『소비자보호원 권 씨!! 당신은 단백질환원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나 아십니까? 무기분석으로 영양가치를 판단하였더니 그 무지도 도(度)를 넘어섰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과학술어조차도 자기의 형편대로 해석, 사용하여서야 어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제기획원 산하단체인 소비자보호원이 할 짓이라 할겠습니까? 권 씨!! 단백질은 무슨 원소가 단백질이 됩니까? 탄소와 질소, 산소 그리고 수소 원자가 단백질이 된다는 것은 초보적인 상식이 아닙니까?... 당신이 분석한 데이터에 의하면 파스퇴르우유는 2.3이 환원되었고 고온살균우유는 11.7이 환원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수치도 당신의 형편에 맞도록 만든 숫자이나 그것마저도 고온멸균우유가 저온살균우유에 비해서 5배나 파괴되었습니다. 당신은 기자에게 설명하기를 단백질환원가는 우유의 고소한 맛과 관계될 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권 씨!! 단백질이 타서 그 고소한 맛을 내는 물질 그것이 즉, 변이원성 물질입니다. 이 변이원성 물질의 본질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발암 물질인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근본은 우유성분의 변화입니다. 단백질 환원도가 단백질의 파괴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단백질 중에서도 가장 인체에 필요한 알부민 단백질이 기존 우유가 파스퇴르우유에 비하여 15배나 파괴된다는 사실을 무기분석밖에 모르는 당신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권 씨!! 당신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의 직원입니다.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자기 상부기관인 경제기획원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비위를 맞춰 출세를 꿈꾸어 국민보건에 해를 준다면 그 죄의 대가를 무엇으로 받으려고 하십니까...」라는 내용의 광고

(마) 1989. 9. 6. 동아일보, 같은 달 11. 경향신문, 같은 달 12.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기사내용을 보고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신에게 한마디 물어봅니다』라는 제목 아래 「소비자보호원 김 실험실 부장!! 당신은 궁색한 변명만 하지 말고 도리에 맞는 말씀을 하십시오. 본인은 8월 22일 귀 원에 찾아가 김 부장과 권 씨를 만나 첫째로 고온처리 우유공장도 여러군데이며, 저온처리 공장도 세군데나 되는데 고온

처리 우유는 고온우유라고만 표기하고 저온처리 우유는 유독 파스퇴르우유라고 상호까지 명기한 이유가 무엇이나? 이는 파스퇴르의 신용을 실추시키기 위한 계획된 장난이 아니냐?고 물었고, 둘째로 고온우유에 비타민 C가 많다는 발표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설마 소비자보호원에서 그런 상식에 맞지 않는 발표를 했을까 혹은 기자들의 착각에 의한 것은 아닌가 싶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일이 이런 국면까지 되었는데 무슨 협상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소비자보호원 김 부장!! 기억을 똑똑히 더듬으십시오. 당신은 원유와 그 처리과정에서 단계적 검사를 하지 않고 최종제품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증가나 감소라는 말을 쓰는 것은 허위라고 하였는데, 이런 궁색한 변명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원유가 일반우유에 비하여 파스퇴르유업에서 사용하는 것이 월등하게 좋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우유에 비타민 C가 적고 나쁜 우유에 비타민 C가 많다는 말입니까? 또 국민학교 학생조차 믿지 않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비타민 C가 많은 우유를 저온처리했을 경우에 비하여 비타민 C가 적은 우유를 고온처리했을 때 비타민 C가 많다는 것은 또 무슨 얘깁니까?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고 국민앞에 사과하십시오...」라는 내용의 광고

(바) 1989. 9. 11. 경향신문, 같은 달 13. 조선일보

『소비자보호원 권 씨!! 당신은 왜 우유속에 있는 유산균이 살아있어야 하는가를 아십니까? 또 요구르트 속에 들어있는 인공배양 유산균과 우유 속에 들어있는 천연유산균이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제목 아래 「우유와 요구르트를 혼동하시는 권 씨!! 참으로 한심합니다. 우유속에 유산균이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따로 있고 요구르트 속에 유산균이 많이 있어야 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권 씨!! 당신은 기자에게 말하기를(신문기사에 의하면) 타 우유에는 유산균이 없고 파스퇴르우유에는 1cc 500마리의 유산균이 있으나, 최소한도 1천만 이상이 있어야 몸에 유익하기 때문에 500마리는 있으나마나 한 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권 씨!! 요구르트 속에 들어있는 인공배양 유산균과 우유 속에 들어있는 천연 유산균은 그 유산균이 가지는 힘도 다르며 효력 또한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이 나뉠대로의 존재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같은 유산균으로 평가하시는 권 씨!! 당신은 이에 필요한 유산균의 수를 1천만마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의 법이 요구르트로 인정하기 위한 법적 최소요건으로 세계 학계에서는 1cc 1천만 마리보다 백배나 많은 2억 내지 10억이 필요하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의 존재목적은 요구르트와는 달리 세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유속에 유산균이 있게 되면 몸에 해로운 균과 생존경쟁을 함으로써 몸에 해로운 균의 성장·번식을 억제하고, 심지어는 사멸까지 시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멸

균시켜 세균이 한 마리도 들어있지 않다는 기존우유가 살균시켜서 균이 다소 남아있는 우유보다 보존기간이 짧은 이유도 바로 유산균의 작용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이 만약 터어키에 가서서 냉장고에 들어있지 않은 우유를 보고 왜 우유를 냉장고에다 넣지 않느냐고 물어 본다면 그곳 터어키 사람은 오히려 우유를 왜 냉장고에 넣느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터어키 우유는 배달된 직후에는 우유로 마시고 시간이 경과된 우유는 상온에 그대로 놓아두어 그속에서 있던 유산균을 자연번식시켜서 천연 요구르트를 만들어 마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유산균은 장에 도달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구르트 속에 2억 내지 10억이나 되는 많은 유산균이 필요한 것은 유산균이 식도와 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 속에 있던 산으로 인해 많은 수가 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유의 경우에는 우유와 같이 마시기 때문에 우유의 완충작용으로 중화되며 더군다나 힘이 강한 천연 유산균이기 때문에 500마리라는 적은 수의 유산균을 가지고도 장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구르트와 우유에 있어서 같은 유산균이 필요하다고 착각한 권 씨!! 우유의 영양분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려면 우유공부를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라면 모름지기 깊은 연구와 정확한 데이터가 요구됩니다. 당신의 짧은 지식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죄의 대가를 무엇으로 갚으려고 하십니까?...」라는 내용의 광고

(사) 1989. 9. 13. 조선일보

『소비자보호원 권 씨!! 당신은 칼슘의 열변성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세계 학자들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우유 속에 칼슘이 존재할 때 칼슘이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 씨!! 당신은 경제기획원 산하단체로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의 직원입니다. 국민에게 책임을 지십시오. 소비자보호원 권 씨!! 당신은 칼슘이 파스퇴르우유에는 114mg, 고온살균우유에는 116mg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양가치적 측면에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대학 1년생이 연습 삼아서 우유 속에 칼슘이라는 원소만을 추출하여 본 것입니까?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칼슘은 반드시 타 원소와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결합되는 원소의 성격에 따라서 칼슘 자체의 성격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아직껏 세계 우유학자들과 화학자들은 우유가 73℃에서 소화가 잘 되는 칼슘카제인네트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인산칼슘으로 변한다는 사실만을 발견하였을 뿐 그 변화정도를 수치로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작업을 당신이 해냈다는 말입니까? 우리 파스퇴르우유는 73℃미만인 63℃에서 열처리를 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칼슘카제인네트가

풍부하게 남아있는데 반해, 기타 기존우유는 135℃까지 온도를 올렸기 때문에 인산칼슘으로 변성이 된 것입니다. 인산칼슘은 조개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몸에 부담만 줄 뿐 칼슘으로서의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권 씨!! 우유를 왜 마셔야 하는지 아십니까?... 양질의 칼슘은 저온처리 우유와 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권 씨!! 당신의 장난 같은 무기분석 데이터는 우유의 성분만을 얘기했을 뿐 우유의 영양가와 우유의 생명인 칼슘과 단백질의 영양적 평가면에서는 아주 무관한 데이터입니다. 이것을 마치 영양과 직결되는 양 발표함으로써 국민이 자칫 이를 믿고서 좋은 우유와 나쁜 우유의 선별을 그르친다면 당신은 그 죄의 대가를 무엇으로 받겠습니까?...」라는 내용의 광고

(아) 1989. 9. 15. 동아일보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질문계획을 바꾸면서』라는 제목 아래 「소비자보호원은 민간단체가 아닌 경제기획원 산하단체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은 크린랩에 대하여 일탄을 쏘고 한 달만에 파스퇴르에 대해서 다시 또 2탄을 쏘았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나도 신묘하게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처와 다투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가 차례로 얻어 맞았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진리를 탐구하여야 합니다. 이런 엉터리 데이터를 과학의 힘을 빌어 악용한다면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말할 수 없이 큼니다. 저는 다소의 회생을 감수하는 한이 있어도 이런 사회악을 근본적으로 없애야겠다는 생각에 그 엉터리 데이터를 열 번에 나누어 낱알이 국민 앞에 폭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파스퇴르를 아껴주는 수많은 친지, 그리고 진정한 우리 소비자가족(소비자를 가장한 충고를 제외)들로부터 이제 국민들이 파스퇴르우유가 제일 좋다는 심판을 내리지 않았으나, 또 이 정도만 되어도 소비자보호원의 분석실의 데이터가 엉망이라는 것은 다 알게 되지 않았느냐?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지 너무 심한 것 같다는 등 많은 충고가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격려전화는 경제기획원 산하단체이면서 이러한 사회악을 저지르는 것은 근본부터 뿌리뽑아야 한다, 힘을 내어 분투하라는 전화였습니다만, 소비자보호원 분석실에서 아무런 대꾸가 없으니 좀 맥이 빠지는 감이 듭니다....아무쪼록 앞으로는 진리를 찾는 소비자보호원 분석실이 되어주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6) 그런데 피고는 위 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피고의 임원들을 통하여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위 시험검사 결과발표에 관해 항의를 한 적은 있으나, 자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유기분석에 의한 데이터나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시험결과와 다른 분석 결과물을 제시하는 등의 정당한 방법으로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석결과를 반박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위 광고를 게재하였다.

(7) 그러나 생유를 살균처리하는 방법은 62℃~65℃에서 30분 정도 가열하여 저온장시간살균법(LTLT : Low Temperature Long Time pasteurization), 72℃에서 15초간 가열하는 고온살균법(HTST : High Temperature Short Time pasteurization), 135℃~150℃에서 2~3초간 가열하는 초고온살균법(UHT : Ultra High Temperature process) 등이 있는 바, 저온장시간살균처리법과 초고온살균처리법 사이에는 영양분의 변성 및 파괴정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저온장시간살균의 방법으로 생산하는 우유가 초고온순간처리방식으로 생산하는 우유보다 영양분이 덜 파괴된다고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보면 초고온살균법에 의하여 비타민 C, 엽산(葉酸, folic acid) 및 비타민 B₁₂가 약간 열손실을 입고, 비타민 B₁의 20%와 유청단백질(whey protein) 특히 베타락토글로부린(β -lactoglobulin)의 70%가 열변성을 받는다], 그 영양분의 차이라는 것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큰 것이 아니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비타민 C의 경우 일반적으로 열에 약하여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많이 파괴된다는 것이 정설이나 비타민 C는 열 이외에도 태양광선이나 용존산소의 양, 원유에서의 함량차이 및 열처리 시설등에 함유된 금속이온 등의 원인에 의해서도 파괴될 수 있고,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수거된 각 우유에 함유된 비타민 C의 양을 측정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어떤 잘못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며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수거된 우유 속에 함유된 비타민 C의 양을 측정한 결과 여타 우유에 비하여 파스퇴르우유에 비타민 C가 가장 적었다고 발표한 것일 뿐, 사과도 삶아 먹어야 비타민 C가 증가한다는 식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고, (나) 식품의 성분분석방법은 대상성분에 따라 일반 성분분석과 미량 성분분석으로, 측정하는 수단에 따라 적정법, 비색법, 중량법, 기기분석법 등으로 구분되며, 이를 유기분석, 무기분석으로 구분하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가 아니고 우유의 영양가치의 분석을 무기분석으로 하였다 하여 그 분석이 연습삼아 재미삼아 한 것이라거나 그 분석결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다) 유청단백질의 변성이나 칼슘의 용존상태의 변화를 영양가의 파괴나 손실이라고 볼 수 없고, (라)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요구르트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보다 힘이 강하여 적은 수로도 장에 도달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거나 우유의 부패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는 주장이며,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저온장시간살균법에 의하여 처리한 우유의 경우에는 유청단백질이나 칼슘 등의 변성이 적고 유산균이 살아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초고온살균처리우유의 경우에는 살균율(99.999~100%)이 저온장시간살균법(97~99.9%)보다 높아 위생적 측면에서 안전하고, 보존기간이 길어지며 대량생산에 적합한 장점도 있어 영양가면에서는 저온장시간살

균법에 의한 우유가 나음이 사실이나 일률적으로 어느 방법이 낫다고 할 수 없고 외국에서도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직원인 원고 권 가 취미삼아 연습삼아 시험을 하고 과학술어조차도 자기의 형편대로 해석, 사용하였다거나, 사과도 삶아먹어야 비타민 C가 5배로 증가한다는 식의 분석결과나 장난 같은 무기분석데이터를 마치 영양과 직결되는 양 발표하고,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직원인 원고 권 가 경제기획원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비위를 맞춰 출세를 꿈꾸어 국민보건에 해를 준다는 취지를 광고의 형식으로 일간신문에 게재한 것은, 피고가 자사제품인 파스퇴르우유의 장점을 선전하기 위하여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내용을 임의로 과장, 왜곡하고 발표에 들어있지 아니한 내용을 삽입하는 등 하여 그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내용을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혀 다른 의미나 내용으로 이해하도록 한 것으로, 피고는 이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 또는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위 각 광고의 게재로 인하여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저하되고, 원고 권 가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일, 설립목적, 업무내용, 업무실적, 원고 권 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사회적 지위, 위 각 광고가 게재된 일간신문들의 신문발행부수, 위 각 광고의 내용과 크기, 그 게재경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게 금 70,000,000원, 원고 권 에게 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광고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위 각 광고로서 원고들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다 하여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은 광고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헌법 제19조가 불가침의 기본적 자유로서 모든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음에 비추어 민법 제764조 소정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에는 가해자에 대한 사죄광고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원고가 구하는 위 광고의 내용이 문언상은 사죄의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아니하나 피고의 명의로 위 내용의 광고게재를 명하는 것 역시, 피고가 양심상 원치 않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규정

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죄광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게 손해배상금 70,000,000원, 원고 권 ○○○에게 금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1. 5. 3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2. 12.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12. 15.

재판장 판사 황 인 행

 판사 김 용 빈

 판사 김 익 현

〈별지〉 게재문 내용

소비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는 1989. 8. 23.부터 동년 9. 15.까지 주요 일간지 7개 신문에 한국 소비자보호원 및 동 직원 권 ○○○를 상대로 동 소비자보호원에서 공표한 시중 우유제품에 대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를 비난한 광고를 게재한 바 있으나 동 광고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에서 당사 사장 최 ○○○는 명예훼손, 허위사실보도로 인한 업무방해죄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는 동시,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당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게 금 100,000,000원, 원고 권 ○○○에게는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동 사실에 대한 경우를 광고로 게재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므로 그 판결요지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고 그 간의 사실경위를 알려드립니다.

1992. . . .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대표이사 ○○○

【형사판결요지】

1. 피 고 인 : 최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사장)

2.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이하 생략)

3. 범죄사실 : 피고인(최)은 ... (1)항에서 (7)항 생략

(8)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시판우유를 수거하여 우유의 살균방법에 따른 영양가등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1989. 8. 18.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험대상 우유 전 제품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며 시험항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영양가 등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검사결과를 발표하자 평소 저온살균방법으로 제조하는 파스퇴르유업(주)의 우유제품이 초고온살균방법으로 제조하는 타사 제품 우유제품에 비하여 영양가면에서 우수하다는 홍보를 하여 온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과 상치되는 위 검사결과 발표에 불만을 가지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1989. 8. 29.자 중앙일간지인 세계일보 3면 하단에 「정부예산으로 움직이는 소비자보호원이 또 다시 터무니없는 장난으로 소비자를 우롱한다면」 등 마치 소비자보호원이 장난으로 소비자를 우롱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후 20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이를 전국에 배부케 하여...소비자보호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1991. 2. 26.

춘천지방법원 판사 지 대 운

【민사판결요지】

원 고 : 1. 한국소비자보호원

2. 권

피 고 :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대표 최)

주 문 : 1. 피고는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게 금 100,000,000원, 원고 권 에게 금 30,000,000원 및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신문 전국판에 별지기재의 사실경위 광고를 별지 기재 조건으로 게재하라.

판결이유 : 피고회사는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대하여는 엉터리 분석을 가지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단체로, 소속 직원인 원고 권 는 이해관계인의 비위를 맞춰서 엉터리 분석을 하는 자로 각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직원인 동 권 의 명예를 크게 훼손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치명적으로 방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동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동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동시 동 원고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서울민사지방법원

2審 判決文

사 건 : 93나6210 손해배상(기)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한국소비자보호원(韓國消費者保護院)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91 국제센터빌딩 8층

대표자 원장

2. 권

성남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달 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파스퇴르유업(乳業)주식회사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4리 1334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 승 영

변론종결 : 1993. 12. 14.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2. 15. 선고, 91가합38193 판결

주 문 : 1. 원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게 금 50,000,000원, 원고 권에게 금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1. 5. 30.부터 1994. 1. 11.까지는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

각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원고들의 항소취지 :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게 금 100,000,000원, 원고 권 ○○에게 금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익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의 각 제1면 광고란에 별지 기재 활자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광고(다만, 광고명의인은 피고와 동일적)를 게재하라(당심에서 청구취지 일부 변경).

피고의 항소취지 :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인용증거에 「갑제20호증」을 추가하고, 원심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판결’을 ‘관련’으로 원심판결 제20쪽 제2행의 ‘(사)’를 ‘(아)’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문의 해당부분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위 각 광고의 게재로 인하여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저하되고, 원고 권 ○○가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일, 설립목적, 업무내용, 업무실적, 원고 권 ○○의 나이, 경력, 사회적 지위, 위 각 광고가 게재된 일간신문들의 발행부수, 위 각 광고의 내용과 크기, 횟수, 그 게재경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생유를 살균처리하는 방법에는 저온장기간살균법과 초고온살균법 등이 있는 바, 피고가 채택하고 있는 저온장기간살균법은 외국에서도 초고온살균법에 못지 않게 보편적인 방법이고, 피고가 그동안 저온장기간살균 제품인 파스퇴르우유를 개발하여 우유의 다양화, 고품질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위 각 광고의 게재 행위도 피고 제품에 대한 애착이 지나친 나머지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위 각 광고의 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부분도

있는 점등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광고 청구부분이 받아 들여지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게 금 50,000,000원, 원고 권 ○에게 금 15,0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광고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위 각 광고로서 원고들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다 하여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광고의 게재를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사정과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991.

4. 1. 선고 89헌마160) 취지를 참작할 때, 피고에게 앞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광고의 게재를 명하는 것은 상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게 금 50,000,000원, 원고 권 ○에게 금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 5. 30.부터 피고가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시 판결 선고일인 1994.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하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 11.

□

재판장 판사 박 영 무
 판사 이 종 오
 판사 유 원 석

국가기관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법사실에 대한 확증도 없이 원고의 실명을 공표하여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서울고등법원 1993. 2. 25.자 판결(92나32878)

대법원 1993. 11. 26.자 판결(93다18389)

事實概要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993년 11월 26일 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기관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법사실에 대한 확증도 없이 언론에 이름을 공표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는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청장이 토지거래허가 대상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면서 이를 증여로 위장한 82명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태씨에 대한 충분한 조사없이 막연한 의구심에 근거하여 위법 사실을 발표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세청 발표당시 소유권 이전등기 지체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 등 태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고 오로지 공익 목적으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하더라도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90년 2월 국세청장이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인 강원 거진읍 거진리 일대 임야에 대해 태씨가 당국의 허가 없이 매매해 놓고 이를 증여로 위장했다며 언론에 보도자료를 낸 뒤 원고인 태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태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審 判決文

사 건 : 92나3287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태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태 윤 기

피고, 피항소인 :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이 정 우

2. 김

서울

3. 박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철, 최 석 봉

변론종결 : 1993. 2. 4.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4. 29. 선고, 91가합 43911 판결

주 문 : 1. 원심판결 중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 6. 22.부터 1993. 2. 2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김 및 피고 박 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0분하여 그 1은 위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김종창 및 피고 박남균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확장),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의 각 제1면에 2일간 계속하여 총 12cm, 횡 8cm 크기의 지면에 제5호 활자로서 별지와 같은 사죄광고를 게재하라.

이 유 : 1. 피고 김 피고 박 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이하 피고 국가라 한다) 소속의 공무원인 위 피고들이 행한 위법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

배상등을 구하고 있으나, 위 피고들이 공무원으로 직무상 행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그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국가를 상대로 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피고들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되는 자에게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이고 위 피고들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의 당부는 본안에서 청구권의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전에서 당사자적격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은 국가배상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 것에 불과하며,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공무원 자신에 대하여도 직접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72. 10. 10. 선고, 69다701 판결 참조), 결국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증인 이 당심 증인 황, 강 의 각 증언, 원심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회사원인 원고(당시 36세)는 1989. 4. 9. 소외 황 의 중개로 소외 이 로부터 강원 고성군 거진읍 송정리 산 21 3074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및 같은 리 145 대 172평, 같은 리 146 전 62평 등 3필지의 부동산을 합계 금 2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2필지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되 위 이 의 처 전 의 의붓아버지인 소외 망 박 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는 상속등기절차를 밟은 뒤 1989.

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1989. 5. 11.까지 잔금을 완불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2필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상속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이 앞으로의 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되고 있었고, 따라서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절차 역시 지연되자 서울에 거주하는 원고는 그 이전등기절차를 위 부동산매매를 중개하였고 이 사건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 황에게 위임하여 두고 있던 중, 1989. 5. 4.부터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부근 토지들이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다) 위 이 는 상속등기절차를 밟는 것이 번거로워서 1989. 11. 4.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따라 자기 앞으로 1975.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는 다시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이미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실제 작성되었던 매매계약서에 관할 관청의 확인을 받는 등 매매일자에 관한 객관적 소명을 하여야 하는데 그 어느 것도 쉽게 되지 아니하자, 그와 같은 제한을 피하는 방편으로 위 황 의 제의에 따라 1990. 2. 9.경 1990. 2.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런데 1990. 3. 초순경 피고 국가 소속 중부지방국세청은 강원도 일대의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 내에서 토지매매의 경우에는 그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나 증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하였으면서도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국토이용관리법위반 사례 등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러한 위장증여자 40여명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여부를 확인 조사하였다.

(마) 원고 역시 위 위장증여자로서 확인조사대상이 되었고, 이를 담당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관인 소외 김 등은 1990. 3. 2.경 중재인 황 를 소환, 조사하였고, 역시 같은 조사관인 피고 빅 은 1990. 3. 29. 원고를 소환, 조사하였던 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임야등 3필지를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수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위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진술하였고, 위 황 도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1989. 2. 14. 매매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상에도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그 부근 토지들이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된 1989. 5. 4. 이전의 날짜인 1989. 4. 9. 위 이로부터 다른 2필지의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임야를 총대금 26,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 중에 위 이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박의 사위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동인을 조사하려 하였으나 출타중이어서 소환할 수 없게되자 동인의 호적을 조사한 결과 이이의 처는 소외 전이어서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증명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를 보면 먼저 위 박으로부터 위 이 앞으로의 등기는 위와 같이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으로 고시된 후인 1989. 11. 4.자로, 다시 위 이로부터 원고 앞으로의 등기는 1990. 2. 9.자로 각 경료되어 있어서, 원고와 이 간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이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된 1989. 5. 4. 이후에 체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등이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 2 제1항, 제21조의 3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인 피고 김은 원고를 검찰청에 고발을 하는 한편, 국세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바) 위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1990. 4. 10.경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투기가 성행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투기 분위기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위장증여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명단공개에 관하여는 국세청 내부의 규정도 없다)「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면서 이를 증여한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한 자」82명의 명단 중에 원고를 포함시켜 각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각 일간신문에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위장증여등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죄를 구성하는 범법행위의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2)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을 접수한 검사는 원고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0. 2. 7. 강원 거진읍 거진 소재 위 황 경영의 금강부동산에서 위 이로부터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임야를 금 21,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는 같은 해 10. 30. 원고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임야가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1991. 4. 4.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이유

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국가 소속 중부국세청 공무원인 피고 김 박 의 위와 같은 원고등에 대한 조사, 고발 및 피고 국가 소속 국세청장의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 자료제공으로 인하여 나타난 위 일간신문사의 기사내용 중에는 원고가 위장증여의 방법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여 부동산투기를 하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따라서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한 원고에게는 일부 진실이 아닌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점에 관한 한 원고의 명예 및 신용이 훼손된 바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김 피고 박 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국가는 산하 공무원인 피고 김 박 및 국세청장이 직무집행상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관하여 중부국세청장인 피고 김 및 그 조사관인 피고 박 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의 언론기관에 공개된 투기자명단 자체는 피고 박 등의 세무 조사결과에 따라 중부국세청장인 피고 김 이 한 보고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 명단의 공개는 전적으로 국세청장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명예훼손의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중부국세청장인 피고 김 이나 그 조사관인 피고 박 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국세청장이 소속된 피고 국가만이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1) 언론기관에 대한 명단공개에 관한 면책주장

(가) 먼저 피고 국가는, 산하 공무원이 원고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조사한 후 국세청장이 언론기관에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기관에 제공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실로서 그 목적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위법성이 없으며, 가사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세청장이 이를 공표할 당시에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 국가에는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 국가 소속 국세청장의 보도자료 제공에 의하여 게재된 신문기사의 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보도자료 및 기사의 내용이 공

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거나, 또는 비록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은 아니지만 위 국세청장이 이를 진실로 인정한 것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귀책사유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이 흠결되고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진실한 것으로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언론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의 광범위성과 그 전파속도의 신속성 및 일단 언론매체에 의하여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후에는 그 실질적 회복이 지극히 곤란한 점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17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으로 하여야 할 조사를 다한 후 합리적 의심이 불식될 정도의 단계에서 얻어진 믿음이어야 할 것이고, 더구나 행정기관의 내부적 자료가 언론기관의 취재의 대상이 되어 언론기관이 이에 접근하더라도 언론의 전문성에 의하여 그 진실성 여부를 나름대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통상적인 경우에 있어서와는 달리 이 사건에서의 보도자료와 같이 국세청장이라는 고위 행정기관이 스스로 자신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여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로서 그 대상 인원도 82명이나 되어 이를 입수한 언론기관이 일일이 그 진실성 여부를 더 이상 검증한 후 보도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언론기관에 공표하기 위하여는 더욱 그 조사를 심도 있게 하여 그러한 믿음을 형성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먼저 국세청장이 언론에 대하여 원고에 관한 보도자료를 제공한 행위의 공공성 및 공익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건설부 장관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규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는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계약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 제21조의 3 참조), 국토가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일한 자원이며 공통기반임에 비추어, 국토이용에 있어서 공공복리를 우선 시키며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또한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같은 법 제1조의 2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의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하였다는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실임이 명백하고,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의 공표의 목적은 일반 국민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법행위를 통한 부동산투기를 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그 범죄 및 투기행위를 예방할 뿐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한다

는 측면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를 모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실의 공표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에서 비롯하였다고 볼 것이다.

(라) 피고 국가는 언론기관에 제공한 보도자료의 진실성에 관하여 그 내용은 원고가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오로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였다는 점을 적시한 것일 뿐이므로 결국 그 내용은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피고들이 이를 공표할 당시에 그 내용은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 국가에는 그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실제로는 1989. 4. 9. 이를 위 이상구로부터 매수하였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1990. 2. 7.자로 증여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1990. 2. 9.자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점은 1989. 5. 4.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위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의 내용 중 원고가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을 강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만큼 이를 단순히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 국가의 주장과 같이 위 보도자료등이 전적으로 진실에 합치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이 사건 임야가 토지거래 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된 1989. 5. 4. 이후인 1989. 11. 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인 위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기하여 1990. 2. 9.에 같은 달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인 위 이 가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등기된 소외 박 의 사위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이 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에는 동인의 처가 소외 전 으로 등재되어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만일 토지거래 허가대상구역 지정일인 1989. 5. 4. 이전에 원고와 소외 이 사이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이후에도 관할 속초군청에 가서 소지한 매매계약서에 확인을 받아 바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 원고가 굳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에 비추어 피고들이 그 토지거래 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1989. 4. 9.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원고 등의 주장을 선뜻 믿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 1989. 5. 4. 이후에 체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진 것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위 조사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외에 2필지가 거래 대상에 포함된 1989. 4. 9.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다른 2필지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 일자인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절차를 마쳤으나 이 사건 임야만 상속등의 문제로 등기 절차가 지연된 관계로 편의상 위와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중개인인 소외 황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부동산등기부등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2필지의 부동산은 토지거래 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 일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절차가 경료되었는지를 조사하였더라면 이 사건 임야만 특별히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매매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나아가 무엇보다도 매매계약의 다른 일방인 매도인인 소외 이가 출타중이라면 그가 돌아온 후 다시 사실을 조사하거나 그의 가족들로부터라도 가족관계나 매매일자 등을 조사하였더라면 소외 이의 처인 소외 전과 소외 망이가 의붓부녀관계인 점과 실제 매매일자 등을 쉽사리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상적으로 하여야 할 조사를 다함이 없이 피고 박 등이 위와 같은 의구심에 근거하여 작성한 조사복명서등에 기하여 국세청장이 위와 같이 언론기관에 제공할 보도자료등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관하여는 그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청장이 위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위의 신문 등에 기사화하여 명단이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과실 있는 행위로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국가 소속의 국세청장의 보도자료 제공에 의하여 게재된 신문기사의 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국가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고발에 관한 면책주장

다음으로 피고들은, 원고를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의거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결국 피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공무원의 고발은 수사의 단

서에 불과하므로 결국 위 규정은 당해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에 대한 주관적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인 바(아무런 여과과정이 없는 앞에서 본 언론기관에 대한 명단공개에 있어서와는 달리, 공무원에 의한 고발의 경우에 있어서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과정을 거쳐 범죄혐의 유무를 가리게 되고, 또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하여 기소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유죄여부가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종의 여과과정이 있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고발행위는 결과적으로는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었지만 당시로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당행위라 할 것이고, 사후에 법원에서 원고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이 무죄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만일 사후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들의 고발행위가 위법하다고 한다면, 이는 단지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법률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결론을 요구하는 것이 되므로, 이와 같은 해석은 위 법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국, 피고 국가는 위장증여자 명단공개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데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산하 공무원들의 위 고발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 김 박 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원고는 피고 국가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명예와 신용이 훼손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국가는 금전으로써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입은 피해의 경위와 정도, 원고의 연령과 직업 및 위와 같이 피고 국가가 원고를 위장증여자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로 오신하여 불법행위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원고도 이 사건 임야를 토지거래 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고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제 거래내용대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토지거래 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증여받은 것으로 거래내용과 달리 등기한 잘못도 결합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피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금 13,7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죄광고청구

원고는 피고 국가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피고 국가는 민법 제 764조 소정의 「적당한 처분」으로서 피고 국가가 제공한 위 보도자료를 게재하였던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에 별지 기재와 같은 사죄광고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명예회복을 위한 민법 제764조 소정의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가 포함된다고 한다면 그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서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되므로(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위의 「적당한 처분」에는 사죄광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 국가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국가에 대하여 사죄광고를 신문에 게재할 것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 6. 22.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1993. 2.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원고는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국가에 대한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지연손해금 부분 포함)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국가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김 박 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 중 피고 국가에 관한 부분은 일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김 박 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5조, 제96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2. 25.

재판장 판사 이 보 현

판사 강 용 현

판사 김 상 호

〈별지〉

1990. 4. 11.자 동아일보(또는 중앙일보, 조선일보)의 지상에 귀하를 증여위장 땅투기사건의 용의자로 오판하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과장된 허위사실을 선전케 하여 귀하의 명예를 실추케한 데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된 오늘까지도 귀하와 친지, 동창, 우인, 회사동료, 거래선의 고객 등에 다대한 괴로움을 주고도 아무런 위로를 못한 데 대하여 깊이 사죄합니다.

년 월 일

위 중부지방국세청장 김

위 동청 조사관 박

태 귀하 끝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3다18389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 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태 윤 기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92나32878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기관이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實名)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공표된 사람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는 것이고, 이 점은 언론을 포함한 사인(私人)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할 것인 바, 한편 이러한 상당한 이유의 존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실명공표 자체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서 비롯되는 무거운 주의의무와 공권력의 광범한 사실조사능력, 공표된 사실이 진실하리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강한 기대와 신뢰,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 법령준수의무 등에 비추어,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세청장이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면서 이를 증여한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한 자」 82명의 명단을 담은 이 사건 보도자료를 판시 각 언론사에 공표함에 의하여 각 일간신문에 원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위장증여등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죄를 구성할 죄를 구성할 범법행위의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1989. 5. 4. 토지거래 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가 1990. 2. 9. 소외 이 로부터 같은 달 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실제로는 그로부터 위 임야를 포함한 3필의 토지를 1989. 4. 9. 매수하고서도 임야에 관하여는 이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이 지체되었던 관계로 편의상 위와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따름이므로 위 공표가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정된 후, 위장증여사실의 여부를 조사한 판시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임야와 함께 매수한 다른 토지는 잔금을 지급한 1989. 5. 11. 이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서 위장증여사실을 부인하였고 위 매매의 중개인인 소외 황 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었으므로, 무엇보다 매도인인 이 나 그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제의 매매일자과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등을 조사함과 아울러 이미 원고에게 이전된 다른 토지의 등기부를 열람하는 등의 통상적인 조사를 다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밝혀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가 출타중이어서 조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단지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를 열람하고 그의 호적을 조사한 결과 이상구와 원고의 각 소유권이전일자가 모두 위 1989. 5. 4. 이후로 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서

에 위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 망 박 의 사위라고 기재된 이 의 신분관계가 증명되지 아니한다는 점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지체사유가 남득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의 막연한 의구심에 근거하여 원고가 위장증여자로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요지의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이어서, 국세청장이 이에 근거한 위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또 위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러한 실명공표가 오로지 공익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원고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를 좌우할 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1. 26.

□

재판장 대법관 박 준 서
대법관 김 상 원
주 심 대법관 윤 영 철
대법관 박 만 호

제목만으로는 오인의 소지가 있기는 하나 내용과 함께 전체적인 취지를 파악하면 단지 혐의내용일 뿐이라는 점은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4. 6.자 판결(92가합48463)

서울고등법원 1994. 1. 21.자 판결(93나22236)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선석 부장판사)는 1994년 1월 21일 지난 1992년 5월

당시 김영삼 민자당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소취하로 풀려난 월간지 「인사이드 월드」 발행인 손 씨가 서울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 제목만 본다면 원고가 기사를 날조한 것이 사실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는 하나, 그 기사내용과 함께 그 전체적인 취지를 파악할 때 기사날조라는 것은 원고의 혐의내용일 뿐이라는 점은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단지 언론기관이 확정판결 이전에 혐의사실을 보도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1992년 6월 2일자 서울신문에 『민자대표 기사 날조 손 피고인 석방』이라는 제목하에 김영삼 민자당 대표의 사생활을 날조해 기사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고가 석방됐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원고는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월간지 5월호에 게재되었던 『김영삼은 나의 아버지, 김영삼에게 숨겨 놓은 딸 있었다』 제하의 기사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기사를 기초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게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서울신문사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1억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문제의 신문기사 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었다」며 소송을 기각하자 원고가 항소했다.

1審 判 決 文

사 건 : 92가합48463 손해배상(기)

원 고 : 손

성남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덕 우, 천 정 배, 임 중 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 해 철

피 고 : 1. 주식회사 연합통신(聯合通信)

서울 종로구 수송동 85의 1

대표이사 현 소 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인 섭, 오 용 석, 이 재 식, 김 성 진, 강 종 구, 오 양 호,

최 우 석, 김 종 길, 김 인 만, 이 정 한, 이 후 동, 정 의 종, 한 이 봉

2.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대표이사 윤 형 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경 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 용 근

변론종결 : 1993. 3. 23.

- 주 문** : 1. 피고 주식회사 연합통신은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5. 8.부터 1993. 3. 23.까지는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분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연합통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연합통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연합통신은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5.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분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6.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분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피고 주식회사 연합통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6호증(각 신문기사), 을 제1호증(통신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연합통신(이하 피고 연합통신이라 한다.)은 1992. 5. 7. 『월간 「인사이드 월드」 발행인 구속』 제하로 원고는 「지난 88년 신동아그룹 최 회장이 통일교도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 한 후 최 회장에게 7억원짜리 땅을 21억원에 사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쳐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었다」라는 기사를 부산일보등 각 일간 신문사에 송고하여 위 각 일간 신문사로 하여금 같은 날짜로 위

내용을 보도하게 한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당시 문제된 이는 원고가 아닌 LA 데일리 타임즈 발행인인 소외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연합뉴스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각 일간 신문사에 송고하여 보도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인 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같은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직업, 사회적 지위, 이 사건 기사와 내용과 크기 및 그후 정정보도를 게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같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월간지 「인사이드 월드」의 발행인으로 1992. 4.경 위 잡지에 『김영삼은 나의 아버지, 김영삼에게 숨겨 놓은 딸 있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는 바, 위 글의 내용은 미국 LA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에 실린 기사를 기초로 하여 원고측이 위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위 잡지에 게재한 것임에도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이하 피고 서울신문사라고 한다.)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 또, 자신이 발행하는 1992. 6. 2.자 서울신문에 『민자대표 기사날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고가 위 김영삼의 「사생활을 날조해 기사화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같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서울신문사의 면책주장

이에 대하여 같은 피고는, 위 1992. 6. 2.자 서울신문 중 문제의 기사내용을 보면 「...사생활을 날조해 기사화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월간지 〈인사이드 월드〉 발행인 손 피고인 ...」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원고가 소외 김영삼의 사생활을 날조해 기사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의 전말을 아무런 논평없이 사실 그대로 게재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 제목이 『민자대표 기사 날조 손 피고인 석방』이라고 된 것은 「민자대표 기사 날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 피고인 석방」이라는 기사의 요지에서 기사내용을 압축하여 제목화하다 보니 괄호부분이 지면관계상 내지 편집기술상 불가피하게 생략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위 기사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써 같은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당원의 판단

갑 제2호증(신문기사), 갑 제4호증의 2(공소장), 5(고소취하서), 7(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미국 LA 매일신문 발행인으로 있는 소외 연 으로부터 송부받은 1992. 2. 20.자 LA 매일신문 기사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토대로 1992. 4. 하순 경 『김영삼은 나의 아버지, 김영삼에게 숨겨놓은 딸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소외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에게 숨겨놓은 사생아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 편집한 후 이를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던 월간지 「인사이드 월드」 1992. 5월호에 게재, 같은 책자 25,000부를 인쇄하여 시중에 배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김영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1992. 5. 7. 구속되고, 같은 달 22,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기소된 사실, 같은 법원은 1992. 6. 1. 위 김영삼으로부터 같은 날짜에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원고를 석방한 사실, 피고 서울신문사는 1992. 6. 2.자 서울신문에 『민자대표 기사 날조 손 피고인 석방』 『피해자측 소취하』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형사지법 ×××판사는 1일 민자당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의 사생활을 날조해 기사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월간지 <인사이드 월드> 발행인 손 피고인(51)에 대해 김 대표측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손씨를 석방했다」 내용의 기사를 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을 의하면, 위 1992. 6. 2.자 서울신문의 기사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가 소외 김영삼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위 「인사이드 월드」를 시중에 배포하여 위 김영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위 신문기사 중 「날조해 기사화한 혐의」에 있어서의 「날조」의 사전적 의미는 「무실(無實)한 일을 사실처럼 꾸밈」이라는 것이므로 「날조해 기사화한 혐의」의 의미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기사화 한 혐의」의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다만 보다 직설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의 공판진행 중 위 김영삼의 고소취소로 말미암아 법원이 원고를 석방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는 당시의 원고에 대한 수사 및 공판진행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써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위 기사내용 중 제목인 『민자대표 기사 날조 손 피고인 석방』 『피해자측 소취하』는 이 기사내용을 압축한 단어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피고 서울신문사가 게재한 위 신문기사의 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사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므로 같은 피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

피고에 대하여 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연합통신은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1992. 5. 8.부터 위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3. 3.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분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연합통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연합통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4. 6.

재판장 판사 박 준 수
판사 허 용 석
판사 강 선 명

2審 判 決 文

사 건 : 93나2223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손

성남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덕 우, 노 무 현, 천 정 배, 전 해 철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대표이사 이 한 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경 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 용 근

변론종결 : 1993. 12. 17.

제1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4. 6. 선고, 92가합48463 판결

주 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6. 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월간지 「인사이드 월드」의 발행인으로서 1992. 4.경 위 잡지에 『김영삼은 나의 아버지, 김영삼에게 숨겨 놓은 딸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위 기사 내용은 미국 LA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에 실린 기사를 기초로 하여 원고측이 위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 잡지에 게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가 발행하는 1992. 6. 2.자 서울신문에 『민자대표 기사 날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고가 위 김영삼의 「사생활을 날조해 기사화하였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신문기사),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원고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의 수사기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위 사건에 관한 공판기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미국 LA 매일신문 발행인으로 있는 소외

으로부터 송부받은 1992. 2. 20.과 21.자 LA 매일신문의 기사내용(갑 제3호증의 9, 10)을 토대로 하여 1992. 4. 하순 경 『김영삼은 나의 아버지, 김영삼에게 숨겨놓은 딸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소외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에게 숨겨놓은 사생아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후, 이를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던 월간지 「인사이드 월드」 1992년 5월호에 게재하고, 같은 책자 25,000부를 인쇄하여 시중에 배포한 사실, 이에 대하여 위 김영삼이 1992. 5. 1. 고소를 제기함에 따라 피고가 서울지방법 검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1992. 5. 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되었고, 같은 달 22.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기소되었으나, 같은 법원이 1992. 6. 1. 위 김영삼으로부터 같은 날짜에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원고가 석방된 사실, 이에 피고는 1992. 6. 2. 발행의 서울신문에 1단 기사로 『민자대표 기사 날조 손 피고인 석방』이라는 제하에 『피해자측 소취하』라는 부제를 달고 「서울형사지법 주경진 판사는 1일 민자당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의 사생활을 날조해 기사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월간지 인사이드 월드 발행인 손 피고인(51)에 대해 김 대표측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손씨를 석방했다」는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무릇 활자로 작성된 대중매체인 신문이 그 기사에 의하여 보도하는 내용은 통상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적 평균인인 독자의 수준에 따라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기사가 제목과 본문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기사의 내용은 그 전체로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히 제목만으로 그 기사내용을 파악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대, 피고가 발행한 1992. 6. 2.자 서울신문의 기사에 『기사날조』라고만 제목에 표시함으로써 그 제목만 본다면 원고가 기사를 날조한 것이 사실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기는 하나, 그 기사내용과 함께 그 전체적인 취지를 파악할 때, 「기사날조」라는 것은 원고의 혐의내용일 뿐이라는 점은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위 기사의 본문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위 김영삼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실은 잡지를 시중에 배포하여 위 김영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고, 그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의 공판진행중 위 김영삼의 고소취소에 의하여 법원이 원고를 석방하였다는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위 기사의 제목인 『민자대표기사 날조 손 피고인 석방』, 『피해자측 소취하』는 위 기사의 내용을 압축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전체적인 취지는 당시의 원고에 대한 수사 및 공판진행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비록 피고가 발행한 위 신문의 기사의 제목에 「혐의」라는 말을 생략하였으며, 본문에도 「허위사실 게재의 혐의」라거나 「명예훼손의 혐의」라고 무색투명하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다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날조」라는 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날조」(捏造)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무실(無實)한 일을 사실처럼 꾸밈」 혹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거짓으로 꾸밈」라는 것이므로 위 기사의 본문 중 「날조해 기사화한 혐의」의 의미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기사화한 혐의」라고 해석되는 바, 이러한 것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의 명예훼손에 관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가 추정되므로, 그 이전에 혐의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일응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인격의 존엄과 그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개인의 명예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그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지만, 헌법상 다른 권리나 제도, 즉 언론의 자유와 아울러 그와 표리의 관계에 있는 국민의 알 권리나 재판공개 원칙 등 공공의 이익이 더 우월한 경우도 많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언론기관이 확정판결 이전에 혐의사실을 보도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 21.

□

재판장 판사 김 선 석

판사 김 대 휘

판사 임 호 영

원고의 피의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정도 없고,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국가수사기관이 이를 공표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7. 2.자 판결(92가합23099)

서울고등법원 1994. 5. 17.자 판결(93나32639)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는 1994년 5월 17일 지난 91년 서울 마포구 가정집에서 9살짜리 여동생을 칼로 찌른 뒤 불에 태워 죽인 혐의로 붙잡혔다 풀려난 권모 군과 그 가족들이 피의사실 등을 공표한 수사관계자들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공표한 피의사실은 진실한 것이라는 증정도 없고 진실

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이런 행위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원고의 부모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실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대한민국 역시 경찰공무원인 피고들의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위와 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자백은 믿을 수 없는 허위 자백이기는 하지만 피고들이 위 자백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폭행·협박·기망·신체의 불법구금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거나 허위로 증거를 조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들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수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권관과 가족들은 마포경찰서 소속 형사인 피고들이 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원고에 대하여 유도심문을 하거나 협박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수사한 결과 허위 자백을 받아냈고 그 허위자백의 내용이 객관적인 제반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러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범인이라고 단정하여 언론기관에 이를 공표하였는 바 이러한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행위나 피의사실공표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함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국가는 위 피고들의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강압적인 추궁과 유도심문을 통해 자백을 받은 다음 이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를 진범으로 단정 수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원고의 부모들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등 원고들의 가정환경에 문제가 많고 원고 권을 불량소년인 것처럼 각 언론기관의 기자들에게 설명,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고들에게 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하자 피고측이 이에 불복 항소했다.

1審 判決文

사 건 : 92가합23099 손해배상(기)

원 고 : 1. 권

2. 권

3. 이

원고들 주소 서울

원고 권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모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기 남, 주 수 창, 김 동 우

피 고 :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김 두 희

소송수행자 옥 영 정, 천 진 우, 최 록 규, 정 주 건, 이 무 상

2. 김

서울

3. 정

서울

4. 진

서울

피고 2, 3,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진 석

피고 2, 3, 4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 대 성

변론종결 : 1993. 6. 11.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권 에게 금 40,000,000원, 원고 권 이 에
게는 각 금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2. 5. 9.부터 1993. 7. 2.까지
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0원씩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93, 94, 98의 각 기재, 증인 고 ○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권 ○은 1991. 9. 30. 서울 마포구 ○ 원고들의 집 방안에서 전선에 목이 감긴 채 불에 탄 사체로 발견된 소외 ○ 경(○)의 친오빠이고, 원고 영, 숙은 위 권 ○ 경의 부모이다.

나. 피고 김 ○는 그 당시 망 ○ 경의 변사사건에 관한 수사책임을 맡고 있었던 마포 경찰서의 서장이고, 피고 정 ○은 위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책임자였던 위 경찰서 형사과장이며, 피고 진 ○은 위 수사를 직접 담당하였던 위 경찰서 형사과 강력 1반 주임으로서, 위 피고들은 그 부하직원들인 형사(수사관)들을 지휘, 감독하며 각종 범죄의 수사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자들이다.

다. 피고 김 ○, 정 ○, 진 ○은 1991. 9. 30.부터 같은 해 10. 6.까지 위 변사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다음, 원고 권 ○이 위 ○ 경을 살해한 후 방화한 것으로 단정하고, 같은 해 10. 6.경 「원고 권 ○은 1991. 9. 30. 오후 학교(염리국민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오락실에 들어서 놀다가 같은 날 16 : 40경 위 원고의 집으로 들어가자, 집을 보고 있던 위 ○ 경이 ‘오빠, 아까 왜 안 들어왔어’라고 말하면서 위 원고를 밀었고, 위 원고는 성이 나서 위 ○ 경과 치고 받고 서로 싸우다가, 위 ○ 경이 실같은 줄로 위 원고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자, 위 원고는 위 ○ 경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다음 달려들었으며, 위

○ 경이 손톱으로 위 원고의 목과 얼굴을 할퀴자 화가 난 위 원고가 ‘씹할 년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나와서, 도망다니는 위 ○ 경의 복부를 찔러서 살해하였고, 같은 날 17 : 10경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같은 곳에 있던 전기줄로 위 ○ 경의 목을 감고 그 위에 방안에 있던 이불로 덮은 다음, 가방속에 가지고 다니던 성냥을 켜서 불을 붙여 방화하여 이불등을 소훼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그들이 현주하는 목조기와 단층 약 22평 주택 1채가 소훼될 것을 예견하면서도 아무런 소화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가재도구 및 주택 1채 등을 소훼시키고, 위 ○ 경의 사체를 소훼시키는 등 방화를 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기관에 제공하여 위와 같은 수사결과를 공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형사과장이던 피고 정 ○은 각 언론기관의 기자들과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문일답을 통하여 「범인인 원고 권 ○의 부모가 생업에 쫓들려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매우 부실하였고, 원고 권 ○은 교과서를 제대로 읽지 못할 정도였다. 위 원고는 폭력물 비디오를 보거나 파괴적인 전자오락게임을 하는 것을 유일한 즐거움으로 알고 있었으며, 전자오락게임에서 만점을 얻어 동네 오

락실 주인으로부터 받은 상금으로 폭력비디오를 빌려보는 일까지 있는 등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는 단골로 통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도 위 원고가 폭력비디오에 심취한 결과 저지르게 된 모방범죄의 일종이다.]라는 취지로 원고들의 가정환경등에 관한 언급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각 일간신문에 원고 권 이 위 경을 살해한 다음 방화하였다는 내용의 기사와 아울러 위 원고의 가정환경에 대한 정황기사등이 함께 게재되었다.

2. 한편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고 권 의 위 사건 당일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권 은 1991. 9. 30. 14 : 00경 동급생인 소외 노 , 정 과 함께 학교 옆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다가, 위 정 은 그곳에 남고 위 원고는 위 노 과 함께 위 노 근의 집을 들렀다가 위 원고의 집으로 갔다. 위 노 이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위 원고는 어머니인 원고 숙에게 전화한 다음, 집안에 있던 돈 1,600원 중 위 경이 800원을 들고 먼저 과자를 사먹으러 나갔고, 그후 원고 권 은 나머지 돈을 가지고 위 노 과 함께 동네 오락실에 가서 놀다가 함께 귀가하던 도중 집앞에 「예원빵집」의 벽시계를 보니 16 : 45경이었다.

나. 원고 권 과 위 노 이 위 원고의 집에 도착하여 보니 현관에 낫선 갈색 가죽신발이 놓여 있었는데, 평소 위 원고의 누나인 소외 권 를 무서워하던 위 노 은 위 권 가 집으로 돌아와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위 원고에게 「너희 누나가 집에 있는 것 같으니깐 나는 대문 밖에서 기다리겠다. 집안으로 들어가서 주기로 약속한 자전거 스티커를 갖다 달라.」고 말하였고, 위 원고는 손님(위 가죽신발의 주인)이 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집안으로 들어갔다.

다. 원고 권 이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장롱앞에는 위 경이 옷이 완전히 벗겨진 상태로 누워 있었고 그 입과 성기 주변에서는 피가 나 있었으며 코를 고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라. 이에 원고 권 은 이상한 사람이 집안에 들어 왔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안을 둘러보고 있는데, 부엌쪽에서 우체부와 비슷한 차림을 한 20대 정도의 남자가 나오길래 「누구냐」고 물어보았으나 위 남자는 아무런 대답이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고, 위 원고가 다시 「 경이 왜 이래요」라고 물어보자 위 남자는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위 원고는 어머니인 원고 숙에게 전화를 하려고 전화기를 들었는데, 위 원고의 뒤에 있던 위 남자는 전화기 뒷부분에 연결된 가느다란 전선으로 위 원고의 목을 감아서 이를 잡아당겼고, 위 원고는 숨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대문밖에 있던 위 노 이 몇차례 「

아』라고 하며 위 원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으나, 곧 정신을 잃었다.

마. 얼마후에 원고 권 은 머리가 뜨겁다고 느끼면서 일어나보니 방안에는 연기가 가득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이에 위 원고는 목에 감긴 전선을 푼 다음 현관쪽으로 나왔는데 때마침 대문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으며, 위 원고는 위 남자가 아직 대문밖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겁이 나서 옆집 담을 넘어 어머니인 원고 숙의 가게 (철뚝시장)쪽으로 달려갔다.

3. 원고들은, 피고 김 , 정 , 진 을 비롯한 마포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원고 권 에 대하여 유도심문을 하거나 협박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수사한 결과 위 원고로부터 허위자백을 받아내었고, 그 허위자백의 내용이 객관적인 제반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이 지극히 의심스러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원고 권 이 위 사건의 범인이라고 단정하여 언론기관에 이를 공표하였는 바, 이와 같은 위 피고들의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행위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포괄하여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위와 같은 수사발표 당시 원고 권 이 위 사건의 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는 취지로 다룬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와 같은 수사결과와 공표 및 그에 기한 보도내용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점은 분명하나, 한편 각종 범죄사건의 범인을 수사하는 과정은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 또한 수사기관이 그 수사결과를 공표하는 목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법행위를 예방하고 이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한다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피고들의 수사결과 공표의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니, 결국 위 피고들이 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등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 위와 같은 수사발표 당시에 위 피고들이 원고 권 을 범인이라고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사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 피고들이 이를 공표할 당시에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수사발표 당시에 원고 권 을 위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였는지 여부)등이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4. 위 사건의 수사과정 및 증거관계

위 피고들이 위 사건에 관한 수사발표를 한 1991. 10. 6.까지의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주

요 증거는, 원고 권 ○의 1991. 10. 5.자 자백(갑 제3호증의 83, 88), 위 노 ○의 진술(갑 제3호증의 76, 77, 90), 위 사건 당일 위 원고가 입고 있던 티셔츠, 바지, 운동화(갑 제3호증의 38)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갑 제3호증의 98 참조), 이를 중심으로 하여 위 피고들의 수사과정등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 본다.

가. 원고 권 ○의 자백

(1) 위 피고들은, 위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장 중요한 참고인으로서 원고 권 ○을 1991. 10. 1.부터 같은 해 10. 4.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1991. 9. 30.자 목격자 진술조서를 포함하면 5차례이다.) 조사하였는 바, 그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은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허위인 점이 인정되어 그 모순점을 계속 추궁한 결과, 1991. 10. 5. 오전 경찰 제5회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에 위 원고가 순순히 위 제1항 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자백을 하였으며(갑 제3호증의 83), 그 진술의 임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날 19 : 00경 위 원고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데리고 갔고, 담당검사가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위 원고가 위와 동일한 취지의 자백을 한 바도 있으며(같은 호증의 88), 이러한 수사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이 원고 권 ○에 대한 조사를 할 당시에 위 원고의 나이는 10세에 불과하였고, 갑 제3호증의 16, 30, 53, 54, 55, 70, 71. 72, 83, 88,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와, 원고 권 ○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1991. 9. 30. 위 사건의 현장에서 머리, 눈, 손등, 귀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 화상을 입었고 목둘레에는 가느다란 선으로 졸린 듯한 색흔이 남아 있었으며, 위 원고는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연기를 많이 들이마셔서 병원에 입원한 다음 검은 가래를 토할 정도의 상태였던 사실, 위와 같은 상처등으로 인하여 위 원고는 사건당일 한마음병원의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같은 해 10. 4. 9 : 00경까지 약 5일간 위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위 한마음병원의 의사는 1991. 9. 30. 위 원고의 입원직후에 진찰을 하여 본 결과, 심한 목졸림으로 인한 뇌의 산소부족현상이 염려되어 산소호흡기를 통하여 위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하여 주었고, 그 당시 위 원고는 몹시 흥분되어 떨고 있었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수사당시 위 원고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가) 한편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마포경찰서 소속 형사들은 1991. 10. 1. 위 한마음병원 중환자실에서 원고 권 ○을 처음 조사하였는데(갑 제3호증의 30), 그 당시 위 원고는 「위 살인사건 당일 16 : 50경 안방에서 위 ○경과 함께 비디오를 보고 있

다가 40대 우편배달부가 들어와서 범행을 하였으며, 그 당시 화장대 위에 있던 시계를 보았기 때문에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원고는 방과후에 동네 오락실을 간 사실을 부모가 알면 혼이 날까봐 이를 감추기 위하여 동네 오락실에 간 사실이 없이 집에서 비디오투를 보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위 원고의 친구인 노 〇〇의 경우도 처음에는 오락실에 간 일이 없는 것처럼 진술했었다. 갑 제3호증의 76 참조), 한편 위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에서의 주장사실과 크게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형사들은 위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로 드러나자, 위 원고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하고 같은 달 4. 9 : 00경 아직 병원에 입원중이던 위 원고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지난번 진술이 잘못된 이유에 대하여 추궁하였고, 이에 위 원고는 바로 위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사실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3호증의 70).

(다) 그런데 위 형사들은 위와 같은 위 원고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위 원고를 귀가시키지 아니한 채 계속 추궁하자, 위 원고는 누나인 소외 권 〇〇가 위 〇〇경을 죽인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갑 제3호증의 71), 이는 위 원고가 자발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다는 위 형사들의 계속된 강압적인 추궁과 유도심문에 따라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위 형사들은 그당시 위 권 〇〇에 대하여 혐의점을 두고 같은 달 3. 부터 같은 달 4.까지 이틀동안에 위 권 〇〇를 상대로 무려 5차례에 걸쳐 위 사건 당일의 행적에 관하여 집중조사를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증거수집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는데(갑 제3호증의 64, 65, 67, 68, 69 참조), 그 후 갑자기 위 권 〇〇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 것은 위 권 〇〇의 담임교사인 소외 김 〇〇와 친구인 소외 최 〇〇이 같은 달 4.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 권 〇〇가 위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한 결과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갑 제3호증의 74, 75 참조).

(라) 그러자 위 형사들은 같은 달 4. 밤까지도 원고 권 〇〇을 계속 추궁하였는데, 위 원고는 제3회 진술조서 작성시에 누나인 권 〇〇가 위 〇〇경을 죽이고 집에 불을 놓았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사실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갑 제3호증의 72).

(마) 다시 위 형사들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5. 아침에 원고 권 〇〇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는데, 그때에 위 원고는 위 제1항 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자백을 하였고(갑 제3호증의 83), 같은 날 19 : 00경에는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의 자백을 하

였으나(같은 호증의 88), 위와 같은 자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임의성 및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① 사망의 원인

위 자백에 따르면 위 원고는 위 경의 복부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한 다음 자신의 행위를 위장하기 위하여 이미 사망한 위 경의 목에 전선을 감았다는 취지인데, 갑 제3호 증의 101, 12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경의 사인은 질식사이고, 위 사체의 복부가 갈라져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으나, 그 내부장기에 아무런 손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칼에 깊이 찔린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자백내용은 객관적인 정황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위 형사들이 수사과정에서 외전상 위 경의 복부가 갈라진 사실을 확인한 다음, 동생의 사망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계속된 신문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극도로 불안정해진 위 원고에게 강압적인 추궁을 함과 동시에 유도심문을 하여 위 원고가 칼로 위 경의 복부를 찔렀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아낸 후에, 다시, 위와 같이 사망한 위 경의 목에 전선이 감겨 있었던 상황에 맞추어서 위 원고가 자신의 행위를 위장하기 위하여 이미 사망한 위 경의 목에 전선을 감았다는 내용의 허위자백을 받아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② 갈색 가죽신발의 존재

위 자백에 따르면 위 살인사건은 남매간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고, 외부인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위 원고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 현관에는 닳은 갈색 가죽신발이 있었다는 것이고, 위 노 도 계속하여 위 신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는 바(다만, 1991. 11. 13. 일시적으로 위 신발의 존재를 부인한 적이 있으나, 같은 달 17. 이후 원래의 진술내용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위 사건 당시에 외부인이 침입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점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 권 의 상처경위

위 자백에 의하면 위 원고는 친구인 노 이 대문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 경이 자신을 밀자 갑자기 싸움을 시작하였고, 위 경은 실같은 줄로 위 원고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위 원고의 목과 얼굴을 할퀴었으며, 위 원고가 경을 칼로 찔러 살해한 다음 이불을 덮고 불을 질렀는데, 불이 예상보다 빨리 불기 때문에 겁이 나서 불을 끄려고 하다가 머리와 손등등에 화상을 입었다는 취지인데, 우선 친구가 집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갑작스럽게 동생을 찔러 죽일 정도로 격렬한

싸움을 하였다는 점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는 목이 심하게 졸려서 뇌에 산소공급이 부족하게 될 정도였는데, 9세에 불과한 위 경이 가느다란 선으로 목을 감아서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갑 제3호증의 53, 54, 55, 121의 일부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원고의 목둘레에 발생한 색흔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이라는 취지이나, 위 한마음병원 의사의 같은 해 9. 30. 산고공급조치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위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3일후인 같은 해 10. 3. 11 : 30경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소견으로 보인다.), 또한 위 원고가 스스로 불을 놓았다고 한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머리, 눈, 손등, 귀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 화상을 입고 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연기를 그토록 많이 들이마시게 되었을까 하는 점이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다.

④ 수사의 전개과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권은 위 형사들의 유도심문에 따라 객관적인 정황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자백을 하였고, 위 형사들은 그 임의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위 원고를 검찰로 데리고 가서 같은 취지의 자백을 반복하게 하였으나, 위 형사사건이 정식으로 검찰로 송치되기 이전에(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은 1991. 10. 21.이다.), 위 원고를 검사에게 데려가서 자백진술을 받게 한 것은 오히려 위 피고들이 위 원고에 대하여 무리한 수사를 하여 자백을 받아냈기는 하였으나 그 임의성 문제가 스스로도 의심스럽기 때문에 위와 같은 편법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나. 노 의 진술

(1) 위 노 의 1991. 10. 4.자 진술(갑 제3호증의 76, 77)의 요지는, 1991. 9. 30. 14 : 00경 원고 권, 정 과 함께 학교옆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다가, 위 정 은 그곳에 남고 그는 위 원고와 함께 위 원고의 집으로 갔는데, 그가 집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위 경이 돈을 들고 먼저 과자를 사먹으러 나갔고, 그후 원고 권 이 돈을 가지고 나와 함께 동네 오락실에 가서 놀다가 다시 위 원고의 집으로 갔는데, 그 현관에 갈색 가죽신발이 놓여 있어서 평소 두려워하던 위 원고의 누나인 위 권 가 돌아와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위 원고에게 「너희 누나가 집에 있는 것 같으니까 나는 대문밖에서 기다리겠다. 집안으로 들어가서 주기로 약속한 자전거 스티커를 갖다 달라.」고 말하였고, 그후 위 원고가 나오지 않아 위 원고의 이름을 몇차례 불렀으나 대답이 없어 그대로 귀가하던 중 위 정 을 다시 만나 함께 집으로 와 비디오를 함께 보다가 할머니로부터 위 원고의 집 화재소식

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대체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장사실과 어긋나지 아니한다(다만, 위 노 이 오락실을 갔었다는 사실을 잠시 숨기려 했었던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후 위 형사들이 원고 권 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낸 후 같은 달 6. 위 노 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였는데(갑 제3호증의 90), 위 노 은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다음, 위 사건 이전에 위 원고가 성냥을 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를 추가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위 노 의 대체적인 진술내용은, 위 피고들의 수사발표내용보다는 오히려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가까운 증거자료라 할 것이고, 특히 원고 권 이 자백한 이후에도 일관되었던 위 갈색 가죽신발에 관한 진술부분은 위 사건 현장에 외부인이 침입하지 않았는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지게 한다.

(2) (가) 한편 위 형사들은 위 수사발표 이후인 1991. 11. 13. 위 노 을 다시 소환하여 추궁한 결과, 위 노 은 위 사건 당일 위 권 로부터 혼날 것이 두려워서 원고 권 의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당시 위 갈색 가죽신발을 목격한 바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갑 제3호증의 107), 다시 위 형사들이 1991. 11. 17. 위 노 을 소환하여 추궁하자 위 노 은 위 사건 당일 위 갈색 가죽신발을 분명히 목격하였고, 다만 그 이전까지 위 원고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진술은 잘못된 것이며, 그 당시 집안으로 들어간 위 원고를 불러도 대답이 없고 방안에서는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집안으로 들어가서 안방 문틈으로 보니, 위 권 은 코에 피를 흘리고 누워있었고 위 원고가 자신에게 무엇을 던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겁을 먹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신발을 손에 든 채로 뛰어 도망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완전히 번복한 다음, 그후 같은 해 12. 26. 검찰에서도 위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고(갑 제3호증의 128). 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노 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믿기 어렵다. 위에서 본 각 증거들에 갑 제2호증의 2, 3, 4, 5, 갑 제3호증의 100,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를 모아 보면, 우선 위 사건 수사 발표 이전에는 위 노 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었다가, 위 수사발표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언론기관들이 수사과정에서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던 중, 위 사건 발생이후 40여일이 경과한 1991. 11. 13. 에 이르러 갑자기 위 가죽신발문제에 관하여 위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그 진실이 1차 번복되었고, 다시 같은 달 17. 이후에 이와 같이 번복한 위 신발문제는 다시 번복되는 한편 그 당시 위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등 위 원고에게 상당히 불리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점등은, 통상 목격자들의 증언이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진다는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거듭된 번복과정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의 강압이나 회유로 인한 허위진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왜냐하면 평소 위 권 를 무서워하여 친구의 집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었던 위 노 이 집안에서 싸우는 듯한 소리를 듣고서 바로 집안으로 들어갔다는 점도 쉽게 설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1991. 11. 17. 이후, 위 노 은 위 사건의 현장에 있던 원고 권 이 자신에게 무엇을 던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겁을 먹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신발을 손에 든 채로 뛰어 도망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사건 당일 위 노 은 길에서 만난 소외 정 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위 노 의 모습에 이상한 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비디오를 보던 중 위 노 의 할머니로부터 위 원고의 집에 화재소식을 듣고 서로 정말 불이 났을까 하는 말들을 주고 받으면서 위 원고의 집으로 갔다는 것인 바(갑 제3호증의 87, 116 참조),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번복된 노 의 진술내용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기타 증거관계 및 수사과정등

(1) 위에서 본 원고 권 , 노 의 진술이외에 위 피고들이 위 수사발표 당시에 부합 증거라고 거시하고 있었던 위 원고의 티셔츠, 바지, 운동화 등에 관하여 보전대, 갑 제3호증의 38, 9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물건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1991. 10. 12.경 위 물건들에서 특이한 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회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물건들은 위 원고가 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라고 볼 수 없다.

(2) 또한 위 피고들은 1991. 10. 3. 원고 권 이 위 경의 복부를 찌르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 부엌칼을 압수하였으나(갑 제3호증의 51, 52), 그후 전개된 수사과정에서 이에 관한 혈흔감정등을 의뢰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더욱이 위 피고들은 위 경에 대한 부검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1991. 10. 6. 원고 권 이 위 경을 찔러 살해하였다고 단정한 후 이를 언론기관에 발표하였고, 같은 날 21 : 00 수사본부전담반까지 해체하였는 바, 갑 제3호증의 101의 기재에서 보면 같은 달 15.경에 이르러서야 위 부검결과가 통보되었는데 부검결과 나타난 위 경의 사인은 위 피고들의 수사결과 발표와는 달리 질식사로서, 위 피고들은 사인이 명백하게 밝혀지기도 전에 언론기관에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그 수사본부전담을 해체하였다.

(4) 또한 원고 권 의 처음 진술에 따르면 위 경은 옷이 벗겨진 상태로 누워 있었다는 것이고, 그후 위 원고의 1991. 10. 5.자 자백에 의하면 위 경은 옷을 입은 상태에

서 불에 탔다는 취지인 바, 위 피고들은 1991. 10. 2, 위 경의 사체에 대하여 1차로 감정을 의뢰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변경에 따른 추가 감정의뢰를 한 사실이 없다(갑 제3호증의 122 참조).

(5) 그리고 원고 영, 숙은 마포구 에 살면서 약 7년전부터 경기 고양군 신도읍에 비닐하우스를 세워 콩나물재배, 두부제조 등을 하여 이를 도매상에 넘기는 일을 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생업으로 인하여 새벽에 일찍 집을 나와서 밤늦게 귀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큰딸인 위 권 (중학교 2학년)가 아침마다 동생인 원고 권 과 위 경을 깨워서 세수시키고 도시락까지 싸서 등교시키는 등 동생들을 잘 돌보아 왔고, 비록 위 원고의 학급성적은 중하위권이지만, 성품이 착실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등 학교생활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또한 위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위 원고의 집에 있던 비디오 기계가 고장나서 약 6개월동안이나 비디오를 보지 못하는 상태였다가, 그 후 위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빌려본 일은 있으나, 그때마다 누나인 위 권 와 동행하여 아동용 비디오테이프만을 빌렸던 것일 뿐이고, 이와는 달리 위 원고가 폭력물 비디오등에 심취하였다거나, 혹은 원고들의 가정교육이 특별히 잘못되어 위 원고에게 난폭성, 폭력성등의 심각한 성격적인 결함이 생겼다고 보이는 자료는 없다(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42, 67, 124참조).

5. 배상책임

가. 그렇다면, 위 피고들과 마포경찰서 소속 형사들은 원고 권 에 대한 강압적인 추궁과 유도심문을 통하여 1991. 10. 5. 위 사건에 대한 자백을 받은 다음 이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충분한 증거자료가 수집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를 진범으로 단정하여 위와 제1항 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또한 원고 영, 숙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등 원고들의 가정환경에 문제가 많고 원고 권 은 불량소년인 것처럼 각 언론기관의 기자들에게 설명하여, 그러한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여 원고들에게 막대한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니,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 역시 경찰공무원인 위 피고들 및 위 형사들의 위와 같은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피고들의 위 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서 그 수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수사발표의 내용은 원고 권 이 친동생

인 위 경을 살해한 다음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방화를 하였다는 충격적인 것이고, 위 수사절차에서 자백을 받기에 이른 과정, 원고들의 연령, 학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항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권 에 대하여 금 40,000,000 원, 원고 영, 숙에 대하여 각 금 20,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6.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권 에게 금 40,000,000원, 원고 영, 숙에게는 각 금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2. 5. 9.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1993. 7. 2.까지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7. 2.

재판장 판사 이 창 구
판사 김 시 철
판사 전 명 호

2審 判 決 文

사 건 : 93나3263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1. 권

2. 영

3. 숙

원고들 주소 서울

원고 권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기 남, 주 수 창, 김 동 우

피고, 항소인 :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김 두 회

소송수행자 홍 용 재, 신 낙 준, 하 명 수, 옥 영 정, 조 해 구

2. 김

서울

3. 정

서울

4. 진

서울

피고 2, 3,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대 성

변론종결 : 1994. 4. 26.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7. 2. 선고, 92가합23099 판결

주 문 : 1. 원심판결 중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권 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영, 원고 숙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2. 5. 9.부터 1994. 5. 1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0원씩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4, 93, 94의 각 기재, 원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1991. 9. 30. 오후 5시경 서울 마포구 소재 원고들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진화된 후 안방에서 소위 경이 전선에 목이 감긴 채 불에 탄 사체로 발견되었는데, 위 경은 1982. 8. 20.생의 국민학교 3학년 여학생이고, 원고 권 은 1981. 5. 21.생의 국민학교 4학년 남학생으로서 위 경의 친오빠이며, 원고 영, 숙은 위 권 , 경의 부모이다.

(나) 피고 김 는 위 경의 변사사건에 관한 수사책임을 맡고 있었던 위 사건 당시 마포경찰서의 서장이고, 피고 정 은 위 경찰서의 형사과장이며, 피고 진 은 위 경찰서의 형사와 강력1반 주임으로서, 위 피고들은 사건 직후 위 사건에 대한 수사전담반을 설치하여 소속 형사(수사관)들을 지휘 감독하며 위 사건을 수사한 결과 1991. 10. 5. 원고 권 으로부터 자기가 위 경을 부엌칼로 복부를 찔러 살해한 다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방화하였다는 내용의 자백을 받자 위 자백을 진실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 원고를 위 사건에 대한 범인으로 입건한 후 다음날은 10. 6. 마포경찰서에서 각 언론기관의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원고 권 은 1991. 9. 30. 오후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 하던 중 오락실에 들어서 놀다가 같은 날 16 : 40경 위 원고의 집에 도착하였는데 집을 보고 있던 여동생인 경이 위 원고를 밀므로 위 원고는 화가 나서 위 경과 치고 받고 서로 싸우다가, 위 경이 손톱으로 위 원고의 목과 얼굴을 할퀴자 화가 난 위 원고가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나와 도망다니는 위 경의 복부를 찔러서 살해하고, 같은 날 17 : 10경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경에게 이불을 덮은 다음 책가방 속에 가지고 다니던 성냥을 켜서 이불에 불을 붙여 현주하는 목조기와 단층 약 22평 주택 1채에 방화하였다.」는 내용의 위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피고 정 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하여 위 사건의 원인과 동기에 관하여 위 사건은 폭력 비디오에 빠져있는 위 원고가 폭력 비디오를 모방하여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여, 다음날인 10. 7.자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각 일간신문에 위 원고가 여동생인 위 경을 살해한 다음 방화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2. 원고들의 청구

원고들은, 피고 김 정 진 은 마포경찰서 소속 형사들을 지휘하여 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원고 권 에 대하여 강제연행, 자백강요, 증거조작 등의 불법수사를 자행하여 위 원고로부터 허위자백을 받아내어 원고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였고, 위와 같이 불법수사에 의하여 얻어진 허위자백에 기하여 함부로 원고 권 을 위 사건의 범인이라고 단정하고 언론기관에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수사나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대한민국도 위 피고들의 직무수행상의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김 정 진 이 원고 권 에 대하여 강제연행, 자백강요, 증거조작과 같은 불법수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강제 3호증의 16, 30, 70, 71, 72, 83, 88, 129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은 부모인 원고 영이나 원고 숙의 승락하에 임의동행의 방식으로 원고 권 을 경찰서로 연행하였거나 또는 소환의 방법으로 임의출석하게 하여 조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피고들이 위 원고를 강제연행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권 의 위 자백은 믿을 수 없는 허위자백이기는 하지만 위 피고들이 위 자백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위 원고에게 폭행, 협박, 기망, 신체의 불법구금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거나 허위로 증거를 조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피고들이 수사과정에서 불법수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다음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사실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 할 것이나, 비록 위와 같은 행위로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 있거나 또는 증명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호 판결 참조), 우선 위 피고들이 원고 권 을 범인이라고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만약 증명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다시 위 피고들이 위 보도자료를 배포할 당시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공표된 사실의 진실 여부

위 공표된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원고 권 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1991. 10. 5.자 각 자백(갑제3호증의 83, 88)과 소외 노 의 경찰에서의 1991. 11. 17.자, 검찰에서의 같은 해 12. 26.자 각 진술(갑제3호증의 112, 128), 및 원심법정에서의 증언이 있으므로 위 증거들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원고 권 의 자백

(1) 자백의 내용

갑제3호증의 83, 8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의 자백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권 은 1991. 9. 30. 14 : 00경 동급생인 소외 노 , 정 과 함께 학교 옆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다가, 위 정 은 그곳에 남고 위 원고는 위 노 과 함께 위 노 의 집에 들른 후 함께 위 원고의 집으로 가 위 노 이 집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위 원고는 어머니인 원고 이 에게 전화한 다음, 집안에 있던 돈 1,600원 중 위 권 이 800원을 들고 먼저 과자를 사먹으러 나가자 원고 권 도 나머지 돈을 가지고 위 노 과 함께 동네 오락실에 가서 30분 정도 놀다가 위 노 과 함께 집으로 왔다.

(나) 위 원고의 집에 도착하여 보니 집을 보고 있던 여동생인 경이「왜 같이 안 놀아주고 늦게 왔느냐」고 하면서 위 원고를 밀어부치므로 위 원고는 화가 나서 위 경 과 치고 받고 서로 싸우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싸울 때 위 경이 실같은 줄로 위 원고의 목을 감아 졸르므로 위 원고는 경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전기장판의 전기 줄로 경의 목을 감았으며 이에 경이 손톱으로 위 원고의 목과 얼굴을 할퀴자 화가 난 위 원고가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나와 도망다니는 위 경의 복부를 찌르자 경은 뒤로 넘어졌으며 경의 코와 배, 성기에서 피가 나므로 죽었다고 생각하여 같은 날 17 : 10경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경에게 이불을 덮은 다음 책가방 속에 가지고 다니던 성냥을 켜서 이불에 불을 붙여 현주하는 목조기와 단층 약 22평 주택 1채에 방화하였다.

(2) 자백에 이르는 경위

갑 제3호증의 16, 30, 70, 71, 72, 82, 83, 8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가 위와 같은 자백을 하기에 까지 이른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위 원고는 1991. 9. 30. 사건 당일 마포경찰서와, 다음날인 10 .1. 한마음병원 중환자실에서 유일한 현장 목격자로서 최초로 조사를 받았는데, 위 조사에서 원고 권 은「위 사건 당일 5교시 수업을 마치고 오후 2 : 30경 집에 도착하여 먼저 집에 와 있는 위 경 과 함께 안방에서 비디오를 보고 있다가 오후 4 : 50경 40대 우편배달부가 들어와서 먼저 원고 권 의 목을 전화줄로 졸라 기절을 하였는데 뜨거운 불에 깨어보니 경이 살해되어 있어 놀라 집을 뛰쳐 나왔으며, 당시 화장대위에 있던 시계를 보았기 때문에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경찰에서는 위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위 진술에 나오는 귀가 시간과 비디오를 보는 시간, 범행시간이 서로 맞지 아니하고 범행상황에도 납득

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같은 달 4. 09 : 00경 병원에서 퇴원하는 위 원고에 대하여 다시 제2회 진술조서를 받았는 바, 위 조사에서 위 원고는 위 최초 진술을 번복하여「위 사건 당일 학교 수업을 마치고 노 과 함께 오락실에서 놀다가 노 과 함께 집에 도착하니 경이 먼저 집에 와 있어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과자를 사먹어도 좋다는 승락을 받고 경이가 과자를 사먹으러 나가자 원고 권 도 뒤따라 나가 노 과 또 오락실에서 놀다가 오후 4 : 50경 다시 집에 들어 와 보니 안방에서 경이 입과 엉덩이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으며 옆방에서 우체부가 있어 어머니에게 전화하려고 하니까 위 우체부가 전화선으로 목을 졸라 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위 원고는 당일 계속하여 제3회 진술조서를 받게 되자 위 조사에서는「위 원고는 사건 당일 학교에서 귀가하여 경과 싸웠는데 누나인 소외 권 가 이를 보고 위 경을 죽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후, 위 권 가 위 사건 당일 현장에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 위 번복된 진술이 허위임이 명백하여지자 당일 계속하여 받게된 제4차 진술조서에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을 부연하기는 하였으나 위 제2회 진술조서에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경찰은 위 원고의 진술이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번복되자 위 원고를 일단 귀가시킨 후 다음날인 같은 달 5. 아침에 원고 권 을 다시 경찰서로 소환하여 제5회 진술조서를 받았는 바, 위 조사에서 위 원고는 위 공표된 피의사실과 같은 취지의 자백을 하였고, 같은 날 19 : 00경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도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 때에도 위와 동일한 취지의 자백을 하였다.(다만, 위 경의 목에 감겨져 있는 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경을 살해한 후 목에 줄을 감았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경과 싸우는 과정에서 경의 목에 줄을 감았다고 진술한다).

(마) 위 원고는 1991 .12. 28. 검찰에서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 때에는 다시 위 자백을 번복하여 경찰에서의 위 제2회, 제4회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2) 위 자백의 신빙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자백에 이르기까지 수차 진술을 번복한 끝에 위 자백을 하게되었고, 위 자백 이후에도 다시 자백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의 진술 중 자백만을 선뜻 믿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도 위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

(가) 사망의 원인

위 자백에 따르면 위 원고는 위 경의 복부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것이고 위

경의 목에 감긴 전선은 싸우는 과정에서 일시 감겼거나(검찰에서의 진술) 또는 사망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감았던 것(경찰에서의 진술)이므로 경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인데, 강제3호증의 101, 12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경의 사인은 질식사이고 질식사의 종류는 알 수 없으나 목졸림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많으며, 위 경의 사체는 복부가 갈라져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고, 원인이 칼에 찔려서 된 것인지 또는 불에 타서 파열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내부장기에 아무런 손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칼에 찔렸다고 하더라도 깊이 찔린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경의 복부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자백내용은 경의 사체부검 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갈색 가죽신발의 존재

위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현관에는 낫선 갈색 가죽신발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자백에 따르면 위 살인 사건을 남매간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고 외부인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되어 위 낫선 갈색 가죽신발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되므로 위 점에 비추어서도 위 자백은 믿기 어렵다.

(다) 원고 권의 상처경위

강제3호증의 16, 30, 53, 54, 55, 70, 71, 72, 83, 88, 강제5호증의 1의 기재와, 원고 권의 본인 신문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사건 후 신체검사를 받아 본 결과 머리, 양쪽 눈부위, 좌측 귀부위, 우측 손등에 화상이 있었고, 목둘레에는 가느다란 선으로 목을 졸리운 색흔이 있었으며, 허 중앙 우측부위에는 자신의 이빨로 난 상처로 보이는 일혈반이 있고, 좌측 얼굴과 복부에는 수개의 표피박탈 상처가 있었던 사실, 위 원고는 위 화재현장에서 연기를 많이 들이마셔서 병원에 입원한 다음 검은 가래를 토할 정도의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자백에 의하면 위 원고의 위와 같은 색흔과 표피박탈은 위 경이 실같은 줄로 위 원고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위 원고의 목과 얼굴을 핏귀어 생겼다는 것이나 친구인 노 이 대문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위 원고와 경이 위와 같은 색흔과 상처를 낼 만큼 격렬하게 싸웠을 것이라거나 또는 9세의 여자 아이인 경이 목을 졸라 위와 같은 색흔이 생겼을 것이라고는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자백에 의하면 위 원고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불을 지른 후 불이 예상보다 빨리 불기 때문에 겁이 나서 불을 끄려고 하다가 위와 같이 화상을 입고 연기도 다량 흡입하게 되었으며 허의 상처도 불이 나 밖으로 나오다가 마당에서 넘어져 생긴 것이라는 취지인데, 위와 같은 화상의 정도나 흡입한 연기의 양,

혀의 상처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자백은 믿을 수 없다.

나. 노 의 진술

(1) 다음 위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소위 노 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노 은 1991. 11. 17. 경찰조사에서, 위 노 은 위 사건 당일 2번째로 원고 권 의 집에 갔을 때 현관에 갈색 가죽신발이 놓여 있어서 평소 두려워하던 위 원고의 누나인 위 권 가 돌아와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위 원고만 집에 들어 가게 하고 노 은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집안에서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집안으로 들어가서 안방 문틈으로 보니 위 경은 코에 피를 흘리고 누워있었고 위 원고가 자신에게 무엇을 던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겁을 먹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신발을 손에 든 채로 뛰어 도망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해 12. 26. 검찰에서의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도 위와 비슷한 취지이다.

위 1991. 11. 17.자 경찰에서의 진술 이전에는 일관되게 「위 사건 당일 2번째로 원고 권 의 집에 갔을 때 현관에 갈색 가죽신발이 놓여 있어서 평소 두려워하던 위 원고의 누나인 위 권 가 돌아와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위 원고만 집에 들어 가게 하고 노 은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위 원고가 나오지 않아 위 원고의 이름을 몇차례 불렀으나 대답이 없어 그대로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여 집안에 들어가 보았다는 위 진술과는 반대되는 진술을 하였었는데, 통상 목격자들의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희미하여 진다는 점 및 갑 제3호증의 87, 1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2번째로 원고 권 의 집에 갔다가 귀가하는 위 노 을 소위 정 이 길에서 만났는데 위 노 은 평상시와 조금도 다른 바가 없었고, 노 과 함께 노 의 집에서 비디오를 보았는데 위 노 의 할머니로부터 위 원고의 집에 불이 났다는 말을 듣고 서로 정말 불이 났을까 하는 말을 주고 받으면서 위 원고의 집으로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노 이 원고 권 의 집안에 들어가 위와 같은 장면을 보았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위에서 본 원고 권 , 노 의 진술 이외에 원고 권 의 바지에서 나온 인혈반응이라거나 위 원고가 경을 찔렀다고 하는 압수된 부엌칼도 위 진술들을 믿을 수 없는 이상 위 원고가 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공표된 피의사실은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다 할 것이다.

4.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그러므로 나아가 위와 같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 김 , 정

, 진 이 위 피의사실을 공표할 당시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범인을 단정하거나 피의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단순한 주관적인 혐의만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고 합리적으로 수궁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다.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이 위 피의사실을 공표하던 당시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 권 의 위 10. 5.자 경찰과 검찰에서의 자백증거와 위 원고가 범행에 사용하였다는 부엌칼 뿐이다(위 공표 당시에는 위에서 본 노 의 1991. 11. 17.자 이후의 진술도 없었다).

그러나, 위 자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내용자체가 통상의 합리적인 사고로 판단하여 보면 선뜻 믿을 수 없는 여러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위 부엌칼은 위 원고의 자백에 따라 수색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사건현장에서 발견되어 압수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위 부엌칼 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문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공표 당시 위와 같은 자백과 부엌칼만을 근거로 하여 원고 권 을 범인이라고 단정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더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의사실을 공표할 당시까지 위 원고와 노 은 사건 당시 현판에는 낫선 갈색 가죽신발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무엇보다도 우선 위 갈색신발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이는 원고 권 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갈색신발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살인 피의자의 자백을 진실한 것으로 믿기 위하여는 적어도 사망의 원인에 관하여 피살자에 대한 부검결과와 자백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들은 위 피의사실을 공표할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둔 위 경에 대한 부검결과가 아직 나오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원고의 자백을 가볍게 진실한 것으로 믿고 위와 같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위 피고들이 위 피의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5. 배상책임

(가) 위 인정에 의하면 피고 김 , 정 , 진 이 공표한 피의사실은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도 없고,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 권 의 명예가 훼손되어 위 원고 본인은 물론이고 위 원고의 부모인 원고 영과 숙이 정신적

고통을 당한 사실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 역시 경찰공무원인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나아가서 그 수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수사발표는 원고 권 이 친동생인 위 경을 살해한 다음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방화를 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위 원고의 명예에 대하여 치명적인 손해를 가하는 것인 점, 위 수사절차에서 자백을 받기에 이른 과정,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과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권 으로서도 수사기관에서 유일한 현장목격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락실에 갔다는 점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수사 진술을 번복하여 수사기관의 초동 수사에 혼선을 빚게한 결과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인으로까지 지목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원고에게도 잘못이 인정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의 액은 원고 권 에 대하여 금 10,000,000원, 원고 에 대하여 각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권 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영, 숙에게는 각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2. 5. 9.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4. 5.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위 인용범위를 초과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5. 17.

□

재판장 판사 박 영 무
판사 유 원 석
판사 여 상 훈

동의없이 사진을 찍어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기사 중간에 삽입하여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2천만원씩 지급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7. 8.자 판결(92가단57989)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3. 30.자 판결(93나31886)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2부(재판장 이재곤 부장판사)는 1994년 4월 30일 권 외 2명이 미국 시사주간지 「Newsweek」를 발행하는 뉴스위크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 뉴스위크사는 원고들에게 각 2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뉴스위크측이 6쪽에 걸쳐 한국의 과소비 실태에 대한 기사를 다루면서 원고들의 동의없이 정면 인물사진을 싣고 <돈의 노예들>이란 제목을 단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이며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뉴스위크가 1991년 11월 11자에 『너무 빨리 부자가 되다(Too Rich Too Soon)』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인의 과소비 실태를 다루면서 「돈의 노예들 ;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Slaves to Money ; Student at Ewha Women's University)」이라는 설명과 함께 원고들의 사진을 게재하자 1992년 6월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26단독 박시환 판사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얼굴사진을 찍어 게재 배포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또한 <돈의 노예들>이라는 부제를 달아 원고들이 기사에서 나오는 부정적 측면의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고들에게 각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1審 判決文

사 건 : 92가단57989 손해배상

원 고 : 권 외 2인

피 고 : 뉴스위크사

변론종결 : 1993. 5. 27.

주 문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3천만원씩 및 이에 대한 1991년 11월 12일부터 1993년 7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7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1억원씩 및 이에 대한 1991년 11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 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5, 6호증, 갑3호증의 1, 2, 3, 갑4호증의 1, 2, 이 법원의 문화부 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원고 김 본인 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뉴스위크(Newsweek)라는 이름으로 잡지를 발행하여 세계적으로 배포하는 회사인데, 1991년 11월 11일자로 발행된 뉴스위크 잡지(이하 이 사건 잡지라 한다)의 11면 내지 16면에 『너무 빨리 부자가 되다(Too Rich Too Soon)』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그 16면의 가운데 윗부분에 제1별지와 같은 가로 5센티미터, 세로 11.5센티미터 크기의 천 연색 사진을 삽입하였고, 그 사진 아래에는 『돈의 노예들 :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Slaves to Money : Students at Ewha Women's University)』이라는 부제가 붙여져 있으며, 사진 안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 5명이 이야기를 나누며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앞을 걸어 나오고 있는 장면이 찍혀있다.

나. 위 사진에 나와 있는 5명의 사람 중 왼쪽에서 3번째가 원고 권 , 2번째가 원고 김 , 4번째가 원고 김 이며, 원고 권 은 얼굴 앞 모습이 정면으로 찍혀있고, 원고 김 , 김 는 오른쪽 얼굴을 돌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옆얼굴 모습이 찍히기는 하였으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나와 있다.

다. 원고들은 모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던 학생들로 1992년 2월에 있게될 졸업을 앞두고 1991년 10월 22일 졸업기념사진을 찍기 위하여 정장차림을 하고 학교에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학교 정문을 나서는 중에 자신들도 모르게 위 사

진을 찍히게 되었고, 위 사진이 위 기사 중에 삽입되어 게재되는 과정에서도 전혀 그 사실을 알거나 승낙한 바가 없다.

라. 위 기사의 내용은 제2별지 기재와 같은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경제성장을 계속해 오던 한국 국민들이 경제성장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소비성향이 증가하게 되어 사치성 고급물건의 소비가 늘고 과소비 풍조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지는 반면 열심히 일하고 근검 절약하려는 의식보다는 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경향이 짙어지게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위 기사 중에는 「한 때는 국수국물이나 마시며 수도원 같은 기숙사 생활을 하던 검소한 대학생들도 비싼 카페에서 식사하고 과시적으로 고급옷을 즐겨 입는다.」, 「소유욕은 배우자의 물색에서도 나타난다. 의사나 변호사 등 1등 신랑감을 찾는 야멸찬 젊은 신부후보들은 그들을 낚기 위해 최소한 1억원 상당의 혼수를 준비해야 한다. 대학을 갓 졸업한 ○○○는 ……‘출세나 벼락부자, 과소비 등이 전망의 대상이 되어 남자들이 결혼할 때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고 통탄해 마지 않았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마. 피고가 발행하는 뉴스위크 잡지는 영어판, 일본어판, 한국어판이 있는데 위 사진은 영어판과 일본어판에만 게재가 되었으며, 사진 밑에 적힌 부제는 영어판에만 적혀 있다. 그리고 뉴스위크 영어판은 판매지역에 따라 대서양지역판, 태평양지역판, 중남미지역판이 있으며 위 사진과 부제는 위 세가지 지역판에 모두 게재되었고, 그 배포 부수는 대서양지역판 32만3천9백58부, 태평양지역판 22만1천9백3부, 중남미지역판 6만3천99부이고, 한국에는 영어판 5만5천부가 수입되어 배포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얼굴 사진을 찍고 이를 잡지에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사치와 과소비 또는 배금주의 풍조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문제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사의 중간에 위 사진을 삽입하면서 『돈의 노예들』이라는 부제까지 달아 놓아, 그 사진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최소한 그 기사에서 나오는 부정적 측면 또는 위 부제에서 의미하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러한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위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그 액수는 위에서 살펴 본 사정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별로 각 돈 3천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3천만원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7. 8.

판사 박 시 환

2審 判決文

사 건 : 93나31886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1. 권

서울

2. 김

서울

3. 김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고, 항소인 : 뉴스위크사(Newsweek, Inc.)

미합중국 10022 뉴욕주 매디슨가 444

(444 Madison Avenue, New York, New York 10022, U.S.A.)

대표자 사장 리차드 엠 스미스(Richard M. Smith)

부사장 티나 에이 래비츠(Tina A. Ravitz)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성용

변 론 종 결 : 1994. 3. 9.

원 판 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7. 8. 선고, 92가단57989 판결

주 문 : 1. 원판결 중 원고들에게 각 금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 11. 12.부터 1994. 3. 3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 소 취 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강제1, 2호증(뉴스위크 잡지 표지 및 내용), 강제3호증의 1내지 3(각 선서진술서), 강제4호증의 1(조선일보), 2(한겨레신문)의 각 기재, 강제5호증(사진)의 영상, 이 법원의 문화부 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 김현주 본인 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뉴스위크(Newsweek)라는 이름으로 주간시사잡지를 발행하여 이를 세계적으로 배포하는 미국회사인데, 1991. 11. 11.자로 발행한 뉴스위크 잡지 (이하 「이 사건 잡지」라 한다)의 12면 내지 16면에 『너무 빨리 부자가 되다(Too Rich Too Soon)』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과소비 풍조등에 대하여 비판적인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면서, 그 16면의 윗부분 한가운데에 별지 제1과 같이 가로 5cm, 세로 11.5cm 크기로 대학생으로 보이는, 정장차림을 한 여자 5명이 이야기를 나누며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앞을 걸어 나오고 있는 장면이 찍힌 천연색 사진을 삽입하였다.

나. 위 사진에 나와 있는 5명의 여자들 중 왼쪽으로부터 세번째가 원고 권 , 두번째가 원고 김 , 네번째가 원고 김 인데, 원고 권 은 얼굴 앞모습이 찍혀있고, 원고 김 , 원고 김 는 오른쪽으로 얼굴을 돌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옆얼굴 모습이 찍혀기는 하였으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은 원고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나와 있다.

다.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별지 제2 기재와 같은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경제성장을 계속해 오던 한국 국민들이 경제성장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소비성향이 증가하게 되어 사치성 고급물건의 소비가 늘고 과소비 풍조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지는 반면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하려는 의식보다는 투기나 탈세등 부정한 방법으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경향이 짙어지게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며, 위 기사 중에는 「한때는 국수국물이나 마시며 수도원 같은 기숙사생활을 하던 검소한 대학생들도 비싼 카페에서 식사하고 과시적으로 고급옷을 즐겨 입는다」, 「소유욕은 배우자의 물색에서도 나타난다. 의사나 변호사 등 1

등 신랑감을 찾는 야멸찬 젊은 신부후보들은 그들을 낚기 위해 최소한 1억원 상당의 혼수를 준비해야 한다. 대학을 갓 졸업한 ○○○는 ‘출세나 벼락부자, 과소비 등이 선망의 대상이 되어 남자들이 결혼할 때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통탄해 마지않는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들이 찍힌 사진 아래에는 『돈의 노예들 :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Slaves to Money」: Students at Ewha Women's University)』이라는 부제가 붙여져 있다.

라. 피고가 발행하는 뉴스위크 잡지는 영어판, 일본어판, 한국어판이 있는데 위 사진은 영어판과 일본어판에만 게재되었으며, 사진밑에 적힌 부제는 영어판에만 있는 바, 뉴스위크 영어판은 판매지역에 따라 대서양지역판, 태평양지역판, 중남미지역판이 있으며 위 사진과 부제는 위 세가지 지역판에 모두 게재되었고, 그 배포부수는 대서양지역판 323,958부, 태평양지역판 221,903부, 중남미지역판 63,099부이며, 한국에는 영어판 55,000부가 수입되어 배포되었다.

마. 한편 1992. 10. 22. 위 사진이 촬영될 당시 원고들은 모두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던 학생들로서 이듬해 2.에 있게 될 졸업을 앞두고 졸업기념사진을 찍기 위하여 원고들이 입을 수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정장을 입고 학교에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학교 정문을 나서는 중이었는데, 자신들도 모르게 위 사진을 찍히게 되었고, 위 사진이 위 기사 중에 삽입되어 게재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거나 승낙한 바가 전혀 없다.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가. 보통의 감수성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 타인이 자신의 용모, 자태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널리 공표하면 수치심 곤혹감 등의 불쾌한 감정을 강하게 느끼게 되고 그 결과 정신적 평온이 방해받게 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이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상의 이익으로서 이는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도덕적으로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아야 할 한 개인의 인격에 관한 권리(이를 편의상 「초상권」이라고 한다.)라고 함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사진을 찍고 이를 잡지에 게재하여 전 세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나. 또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투기와 탈세를 이용한 치부, 호화사치풍조와 과

소비, 배금주의 풍조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기사, 특히 「대학생들이 비싼 카페에서 식사를 하고 과시적으로 고급 옷을 즐겨 입는다」, 「의사나 변호사 등 1등 신랑감을 찾는 젊은 신부들은 그들을 낚기위해 최소한 1억원 상당의 혼수를 준비하여야 한다」라는 내용 및 「젊은이들이 결혼에 있어서도 사랑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어느 대졸여성의 신문칼럼등을 인용하여 배금주의 풍조를 비판한 내용등이 실린 기사의 중간에 마침 졸업기념사진을 찍기 위하여 가장 잘 어울리는 정장차림을 한 원고들의 사진을 넣고 그 밑에 『돈의 노예들』이라는 부제를 달아 놓았는 바, 이 사건 잡지의 「통상적인」 독자들이라면 그러한 사정하에서는 그 사진 속에 나오는 원고들이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이 과시적으로 비싼 옷을 입고, 결혼에 있어서도 돈을 중요시하는 젊은 여대생들 중 하나이거나(이 사건 기사에서 한국의 젊은 여성들을 언급하고 있어 위 사진으로 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이화여대생들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위 사진과 이 사건 기사를 연결시키려 하였다는 점은 피고도 준비서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최소한 그러한 경향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사진의 게재와 그에 붙인 부제에 의해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원고들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원고들의 명예감정에 손상을 입혔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초상이 은거에의 침입에 의하여 획득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초상권은 그 자신의 용모, 자태가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고 또 널리 공표됨으로써 야기되는 정신적 고통등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표된 초상이 반드시 은거에의 침입에 의하여 획득될 것을 요한다고 보기 어렵고(다만 은거에의 침입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획득한 초상이 상업적으로 이용된 경우에 한정하여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초상권의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켜 부당하며, 다만 초상의 획득 및 공표가 공익적인 사항에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인 점이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이상적인 독자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검토하여 가장 최선의 의미가 부여되도록 해석하여야 한

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기사가 학술논문등 깊이있는 연구의 결과라거나 그 의미에 대한 음미를 요구하는 글이라기 보다는 「주간지사잡지」에 실린 비평기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잡지의 통상적인 독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독자가 이 사건 기사를 일독하여 전체 문맥에서 내용을 파악함에 있어, 한국의 젊은 여성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하고 있는 이 사건 기사 중간에 한국의 대표적인 젊은 여성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게재된 위 사진과 이 사건 기사를 연결시켜서 갖게 될, 그 사진에 실린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위와 같은 초상권 침해, 그리고 객관적 명예와 명예감정의 훼손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료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의 성별과 나이 및 신분, 사진촬영 경위, 기사 내용, 이 사건 잡지의 배포부수와 배포지역,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별로 각 금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잡지의 발행일 다음날인 1991. 11.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4. 3. 3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들은 1991. 11. 12.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에 따른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기간동안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 중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3. 30.

□

재판장 판사 이 재 곤
 판사 이 진 만
 판사 강 을 환

비록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3. 8. 12.자 판결(93가합2361)

서울고등법원 1994. 5. 26.자 판결(93나39814)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재판장 이강국 부장판사)는 1994년 5월 26일 TV텔런트 겸 영화배우인 최 씨가 주식회사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신문 및 주식회사 인천일보 등 5개 지방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비록 그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취재행위와 관련하여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 내지 책임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건 기사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영화배우등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으로 공인 또는 유명인이며,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들은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가 불법유학을 알선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등의 기사가 게재되자 각 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했었다.

1심 법원이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그 취재 행위와 관련하여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항소했다.

1審 判 決 文

사 건 : 93가합2361 손해배상(기)

원 고 : 최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창 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 현 석, 이 건 호, 장 건 상

피 고 : 1. 주식회사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신문

서울 중구 회현동 3가 1의 12

대표이사 김 명 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 성 환, 신 영 무, 심 재 두, 오 종 한, 박 교 선, 장 응 수

2. 주식회사 인천일보

인천 중구 항동 4가 2

대표이사 문 병 하

3. 주식회사 경인일보(京仁日報)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1122의 11

대표이사 임 상 규

4. 주식회사 부산매일신문(釜山毎日新聞)

부산 동래구 연산2동 1637의 1

대표이사 김 인 수

5. 주식회사 국제신문(國際新聞)

부산 동구 범일동 252의 127

대표이사 이 광 우

6. 부산일보(釜山日報) 주식회사

부산 동구 수정동 1의 10

대표이사 송 정 제

피고 3 내지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인 섭, 이 후 동, 이 재 식, 전 병 하, 김 성 진, 최 병 호, 강 종 구,

유 욱, 오 양 호, 박 형 연, 김 인 만, 양 시 경, 김 종 길, 도 건 철, 이 정 한, 표 재
진

변론종결 : 1993. 6. 24.

주 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송달 다 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 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 1. 기초사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 내지 8호증(각 신문기사)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피고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신문(이하, 피고 코리아헤럴드라고 한다)이 발행하는 영자지 일간신문인 1991. 4. 12.자 코리아헤럴드(Korea Herald)에 『여배우 불법유학관련 혐의(Film Actress accused of overseas scam)』라는 제목과 『약 100억원 챙겨 ; 한국 유 학생 250명 미국 산악지역 가건물에서 시간만 낭비(Pockets about W10 bil. ; 250 Korean students idling in makeshift building on U.S. mountatin)』이라는 소제목 아래 「최 (Choi)」라는 설명이 붙은 원고의 사진과 함께 그 내용으로, 「서울 경찰은 중, 고생 수백명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유학토록 불법 알선하고 100억원 이상을 챙겼다는 미확인 혐의로 유명 여배우 최 를 찾고 있다. 이 학생들은 유학비자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일년짜리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국내 여권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은 유학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의 부유층 자녀들로 영어 실력이 모자라는 관계로 미국 학교측에서 수업시간 후 학교부설농장에서 말먹이를 주는 등의 하찮은 일도 시킨다고 한다. 서울 소재의 한 유학알선업체인 코리아 아카데미의 대표 인 최 는 경찰수사가 시작된 후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법위반혐 의로 경찰이 찾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은 이 유학알선업체의 최고경영자인 유 씨인데, 그 또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의 이사인 호 는 어제 경찰에 의해 구속 되었다. 이 업체에서 미국 고등학교에 입학할 알선한 약 250명의 한국 학생은 산간지방의 임시건물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이 미국 고등학교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최씨의 이 업체는 서울의 주요신문에 광고를 내어 학생들을 모집했다. 경찰은 또 다른 유학알선업체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의 대표인 김 를 허위 토플성적표를 발급 한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김씨의 허위 토플성적표로 15명 이상의 한국 학생이 작년과 올해 미국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0년 3월 부당한 방 법으로 500점에 훨씬 못 미치는 6명의 고등학생의 토플점수를 500점 이상으로 올려주고 대신에 총 6천 100만원을 학생들의 부모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 된 사실, (원문 : Popular film actress Choi is being sought by the Seoul police

for allegedly illegally arranging for hundreds of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o be enrolled at a U. S. high school and pocketing at least 10 billion won in “arrangement fees.” The students entered the United States with a one-year tourist visa because they could not apply for students passports, Current domestic passport law bans people under 18 from applying for students passports. The students, mostly from highly affluent families in Seoul, were forced by U. S. school authorities to do menial work at the school farm, such as feeding horses after class, because they lacked English ability, the police investigators said. The -year-old Choi, head of the Korea Academy, an overseas study arrangement agency in Seoul, is known to have fled to the United States after getting the wind of the investigation. Also being sought by the police for violation of the passport law is another top executive of the agency, Yu who has also gone into hiding. The agency’s managing director -ho, a -year-old man, was arrested by the police yesterday. The roughly 250 Korean students whom Choi’s arranged to have enrolled at a language program in the U. S. high school stayed in a makeshift building high on a mountain. The police refused to identify the U.S. high school. Choi’s agency recruited the students by carrying advertisements in major Seoul dailies. 이하 생략)

(2) 피고 인천일보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1991. 4. 12.자 인천일보에 『서울시경』이라는 소제목 옆에 『최 씨등 6명 적발』이라는 제목과 『토플성적위조 관광비자로 유학알선』이라는 소제목 아래 「서울 시경은 11일 해외유학자격이 없는 중, 고교생들을 토플성적표를 위조하거나 관광비자를 발급받게 해 미국과 호주 등지로 유학시켜 온 (주)코리아 아카데미 상무 호등 해외유학알선업자 4명에 대해 사문서위조, 여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주)코리아 아카데미 이사장 최 영화배우)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자녀의 해외유학을 의뢰한 학부모 채모 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월 해외유학 알선업체인 (주)코리아 아카데미를 설립, 미국유학 경험이 있는 배우출신의 최씨를 월 1백50만원씩 주고 이사장으로 내세운뒤 일간지등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남모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남씨의 아들을 관광비자를 발급받게 해 유학을 보내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250여명의 학생들을 불법유학시켜주고 25억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최씨는 유학희망자 모집과 진학상담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

(3) 피고 경인일보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1991. 4. 12.자 경인일보에 『유학사기 25억 챙겨』라는 제목과 『중고생 토플성적 위조 미, 호주 등 보내』, 『4명 영장 배우 최 씨 등 둘 수배』라는 소제목 아래 위 인천일보의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

(4) 피고 부산매일신문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1991. 4. 12.자 부산매일신문에 『중고 250명 사기유학』이라는 제목과 『토플성적위조 25억여원 챙겨』, 『알선업자 4명 영장 여배우 최 씨 등 둘 수배』라는 소제목 아래 위 인천일보의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

(5) 피고 국제신문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1991. 4. 12.자 국제신문에 『여배우 최 씨 해외유학사기』라는 제목과 『중고생 2백50명 불법알선 25억 챙겨』라는 소제목 아래 위 인천일보의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

(6) 피고 부산일보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1991. 4. 12.자 부산일보에 『25억대 유학사기』라는 제목과 『성적위조 미국보내 농장일』, 『여배우 최 씨 등 8명 적발』이라는 소제목 아래 위 인천일보의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1991. 4.경 서울시 경찰국이 해외유학알선업체들 가운데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대표 김)에 대하여는 토플성적표위조등의 혐의로, 태평양유학진흥원(대표 오)에 대하여는 위조토플성적표행사등의 혐의로, 위 (주)코리아 아카데미에 대하여는 여권법위반 혐의로 수사하면서 위 (주)코리아 아카데미의 유 상무등 4인을 구속하고 원고등 수명을 불구속 입건하자, 피고들은 원고가 유학사기에 관여한 바 없고, 외국으로 도피하거나 위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지명수배를 받은 일이 없으며, 위 (주)코리아 아카데미는 토플성적위조와는 무관한데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의 허위내용의 보도를 함으로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며, 가사 위 기사가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과 통신전재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연합통신의 통신문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그대로 전제된 것이어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룬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 11호증(각 판결), 갑 제12, 13호증(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14호증(불기소장), 갑 제15호증, 을 제27호증(수사결과보고), 을 제3호증(광고), 을 제7호증(의견서), 을 제8호증(범죄정보보고),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 23호증, 을 제26호증의 1, 2(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0, 15, 16호증,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1, 22호증(진술조서),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4호증(각 수사보고), 을 제12, 25호증(수사지휘품신), 을 제17호증(진술서), 을 제19호증(공소장)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세살부터 방송에 출연하여 연예활동을 해 온 연예인으로 고등학교 재학중이던 1981. 미국으로 유학을 가 그곳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1986. 6.경 귀국하여 국내에서 다시 연예활동을 계속하여 온 사실, 소외 호는 국외여행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코리아 아카데미(이하, 코리아 아카데미 라고 한다)의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는데, 교육법, 병역법 및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유학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국외유학을 할 수 없음에도 1989. 1.부터 시행된 해외여행자유화조치 이후부터는 17세 미만자들의 관광이나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일반여권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는 점과 미국내 고등학교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약 4주간의 단기어학연수과정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미 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단 미국으로 출국하기만 하면 학업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학비만 지급하면 쉽게 입학할 허가하는 학교가 있어서 탈법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학을 원하는 중, 고등학생 및 학부형을 상대로 마치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유학생을 모집, 알선하고 그 비용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89. 2. 경 코리아 아카데미의 광고모델로 출연한 바 있었는데, 위 호는 유학희망자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국유학경험이 있는 인기 여배우인 원고에게 위 회사에서 같이 일해 줄 것을 제의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그 무렵부터 위 회사의 강남지사 에서 근무하게 되어 처음에는 「강남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같은 해 말경 이 회사의 본사가 강남으로 이전한 후에는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사실, 원고가 코리아 아카데미에서 담당한 업무는 유학생모집광고를 내는데 있어 광고모델의 역할을 하는 일과 시간이 나는 대로 위 회사에 출근하여 원고의 유학경험과 대학에서의 전공과목인 심리학을 바탕으로 위 회사를 찾아 온 유학희망자나 그 학부모들에게 미국에서의 학교생활과 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법, 미국의 교육제도, 어학공부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해 주는 일

이었고 그 대가로 위 회사로부터 월 금 1,500,000원의 보수를 받아 왔는데, 그후 위 호는 「코리아 아카데미의 이사장」이라는 설명이 붙은 원고의 사진을 게재한 팜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한편, 같은 내용으로 광고문안을 작성하여 일간신문 등에 유학알선광고를 한 사실, 원고는 그후 약 40명 정도의 학생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주었고 1990. 여름에는 위 회사가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토폴시험없이 미국내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등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면서 미국대학관계자들을 안내하고 소개하였으며 그 세미나의 통역을 담당하였고, 같은 해 7. 하순 경에는 미국에 있는 엘리엇트팜이라는 중, 고등학교에 약 30명의 유학희망자를 인솔하여 안내한 사실, 한편, 서울시 경찰국에서는 해외여행자유화조치 이후 해외유학알선업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학자격이 없는 중고생들의 유학을 알선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하여 1991. 3.경 코리아 아카데미,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을 포함하여 「한국해외유학본부」「해외교육문화원」 등 9개 해외유학알선업체를 내사하였고 이에 따라 범죄혐의가 짙은 코리아 아카데미 및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에 대하여 수사에 들어가 코리아 아카데미 관계자로 위 호, 유, 원고(나중에 위 코리아 아카데미 회장인 소의 혼도 함께 입건되었다)를 유학여권을 받을 수 없는 250명의 중, 고등학생을 유학알선하고 그 명목으로 합계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혐의로,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 원장인 소의 김 를 학부모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토폴성적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태평양 유학진흥원 상담실장인 소의 오 을 위 유학희망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위 김 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위조된 토폴성적표를 교부받아 이를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각 입건한 사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코리아 아카데미 운영관계자로 위 호에 대한 신병만을 확보하여 조사하였고, 위 유 에 대하여는 그를 검거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그의 주소지를 찾아 갔으나 그가 이미 도주한 관계로 조사를 할 수 없었고, 원고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상 1991. 3. 1.자로 인천 18로 전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서울

호에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 내어 위 경찰관이 위 거주지를 찾아갔으나 역시 만날 수가 없어 조사하지 못했고 한편, 원고는 1991. 3. 7.부터 같은 달 11.까지와 같은 해 4. 4.부터 같은 달 9.까지 두차례 일본에 다녀온 일이 있는 사실, 서울시 경찰국은 1991. 4. 11. 09:30경 수사과 기자실에서 시경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위 불법해외유학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 원장인 김 가 정, 모 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토폴시험성적표를 이용하여 그들의 자녀를 유학하게 한 사실이 밝혀져 동인들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코리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위

호, 유 과 그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원고에 대하여는 그들이 공모하여 1990. 1. 25.부터 1991. 4. 10.까지 사이에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여권발급신청시 그 목적과 체류기간 등을 유학이 아닌 일반 관광 목적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250명 중, 고등학생의 불법유학을 알선하여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하였다는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였는데, 위 호는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여권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와 유 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기자들의 질문에 서울시 경찰국 담당직원은 「원고가 소위 호 등과 공모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원고는 현재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미국으로 도피하여 신병이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배중이다」라고 보충설명을 한 사실, 라디오 방송매체들은 같은 날 13:00경 뉴스부터 마치 원고가 위 불법유학사기사건의 주모자이고 이로 인하여 도피한 듯한 표현으로 뉴스를 내보내었고, 같은 날 오후 석간신문인 중앙일보에서도 『여우가 해외유학사기』라는 제목과 『최 씨 미 도피, 2백여명에 백억원 가로채』, 『중고생등 미국서 영어 못해 목장일 하기도』라는 소제목아래 「해외 유학자격이 없는 2개 해외유학알선 업체 대표, 브로커 등 4명이 구속되거나 영장이 신청됐으며 최씨 등 2명은 수배됐다. (중략) 서울 시경은 11일 해외유학여권을 받을 수 없는 만 18세이하 중, 고생들을 미국 캘리포니아고등학교에 유학알선해주겠다며 2백50여명으로부터 1백억원 상당을 받은 (주)코리아아카데미 이사장 최 영화배우), 대표 유 등 2명을 여권법위반 등 혐의로 수배하고 상무 호 씨 를 구속했다. (중략)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부터 이모 양(16, 중3) 등 부유층자녀들을 대상으로 미국, 프랑스 등 외국 정규종합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중, 고생 조기유학생모집이라는 신문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2백50여명을 1년짜리 관광비자로 미국고등학교영어학연수과정에 취학시킨 뒤 알선비등 명목으로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1백억원 상당을 받았으며 최근 물의를 빚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하 행략)」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배포한 사실, 한편, 피고 코리아헤럴드는 영자지인 특수한 사정으로 경찰서에 상주하는 기자가 없는 관계로 경찰수사 관련기사나 기타 사건기사는 국내 통신사인 소외 주식회사 연합통신에서 운영하는 연합통신으로부터 수신료를 지불하고 수신하는 통신문과 방송, 기타 다른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을 위주로 기사를 작성하며, 나머지 피고들은 지방지인 관계로 서울에서 발생한 국내 시사사건은 거의 위 연합통신의 통신문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 연합통신은 같은 날 오후 피고들에게 『학생 250여명 불법유학』이라는 제목과 『알선업자 넷 영장신청 2명 수배』, 『토플성적위조-관광비자이용』이라는 소제목 아래 『서울 시경은 11일 해외

유학자격이 없는 중고교생들을 토폴성적표를 위조하거나 관광비자를 발급받게 해 미국과 호주등지로 유학시켜 온 (주)코리아 아카데미 상무 호(서울 13)등 해외유학유학알선업자 4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 여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주)코리아 아카데미 이사장 최 영화배우)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자녀의 해외유학을 의뢰한 학부모 채 모 씨(45, 주부 서울 강남구 아파트)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월 해외유학 알선업체인 (주)코리아 아카데미를 설립, 미국유학경험이 있는 배우 출신의 최씨를 월 1백50만원씩 주고 이사장으로 내세운 뒤 일간지등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남모 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남씨의 아들을 관광비자를 발급받게 해 유학을 보내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250여명의 학생들을 불법유학시켜주고 25억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최씨는 유학희망자 모집과 진학상담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통신문을 송신한 사실, 피고 코리아헤럴드 소속 기자들은 위 방송을 들은 사회부장인 소외 김 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경찰국에 가서 당시 다른 신문사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던 보도자료를 위 김 에게 팩시밀리를 통하여 전송하는 한편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고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원고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코리아 아카데미에서도 그 진위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한 사실, 그래서 피고 코리아헤럴드는 경찰의 보도자료, 연합통신의 통신문, 다른 신문사의 보도기사, 방송매체의 방송내용 등을 참고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기사의 제목만 연합통신과 조금씩 다르게 붙였을 뿐 연합통신의 통신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사실, 원고는 언론매체가 위 사건을 보도한 이후인 1991. 4. 18.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 호, 유 , 훈과 공모하여 국외유학자격이 없어 유학여권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관계로 국외로 출국할 수 없는 중, 고등학생의 여권을 여권발급신청시 진정한 목적인 유학이 아닌 관광등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았다는 여권법위반의 점과 유학알선을 구실로 국외유학자격이 없는 중, 고등학생의 부모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에 관한 각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 그러나 검찰에서는 1991. 5. 18. 원고 및 소외 호 등에 대한 여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여권 신청시 그 목적을 유학이 아닌 관광등으로 기재하여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후 그 목적과는 달리 유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권발급신청 자체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원고와 소외 유 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일단 기소중지 결정

(위 호에 대하여는 사기죄로 구속기소를 하였다)을 하였으나 이후 1992. 6. 26.에 이르러 원고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고가 위 호등이 불법유학알선의 대가로 금원을 받는다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배포한 경우라도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시된 기사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또는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취재행위에 관련된 자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는 위법성 내지 책임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선 피고 코리아헤럴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앞에서 인정한 소위 호등의 해외유학알선에 대하여 원고가 관여하게 된 경위와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사들의 내용은 그중 원고가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달란한 것으로 표현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 할 것이나(그 이외에 원고소외 회사 이사장으로 내세워졌고 월급을 받으면서 유학희망자의 모집과 상담을 한 것으로 기재한 부분은 사실에 부합된다) 원고는 영화배우등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으로 일반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공인 또는 유명인이며 위 기사 내용은 불법유학알선등의 위법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피고들로서는 지방지인 관계로 보도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비교적 공신력이 있는 연합뉴스가 제공한 기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연합뉴스가 제공한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피고들이 위 기사를 작성배포한 행위는 가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성 내지 책임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피고 코리아헤럴드에 대하여도 위 피고는 원고가 위 불법유학사기에 관련된 듯한 표현의 기사와 경찰로부터 수배를 받아 미국으로 도피하였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 할 것이어서(위 피고가 토폴성적위조에도 원고가 관련되었다고 보도한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점

은 인정되나, 한편 그 당시 위 피고로서는 경찰에 출입하는 기자가 없었던 관계로 위 사건을 경찰로부터 직접 취재한 것이 아니라 후에 입수한 경찰의 보도자료, 연합통신의 통신문, 다른 신문사의 보도기사, 방송매체의 방송내용 등을 참고로 하였고, 또한 원고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 접촉을 시도하여 원고의 반론권을 보장하려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가 위 기사를 작성배포한 행위는 비록 그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그 취재행위에 관련하여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결국 위법성 내지 책임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들의 위 보도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손해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그 범위를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8. 12.

재판장 판사 이 국 주
판사 국 상 종
판사 송 영 철

2審 判決文

사 건 : 93나39814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최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창 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 현 석, 이 건 호, 장 건 상

피고, 피항소인 : 1. 주식회사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신문

서울 중구 회현동 3가 1의 12

대표이사 박 정 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 성 환, 신 영 무, 심 재 두, 오 종 한, 박 교 선, 장 응 수

2. 주식회사 인천일보

인천 중구 항동 4가 2

대표이사 문 병 하

3. 주식회사 경인일보(京仁日報)

수원시 권선구 인제동 1122의 11

대표이사 임 상 규

4. 주식회사 부산매일신문(釜山每日新聞)

부산 동래구 연산2동 1637의 1

대표이사 김 인 수

5. 주식회사 국제신문(國際新聞)

부산 동구 범일동 252의 127

대표이사 남 정 식

6. 부산일보(釜山日報) 주식회사

부산 동구 수정동 1의 10

대표이사 송 정 제

피고 3 내지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인 섭, 유 욱, 이 재 식, 박 형 연, 김 인 만, 양 시 경, 서 동 우,
도 건 철, 강 종 구, 표 재 진, 김 종 길, 이 후 동, 이 정 한, 전 병 하, 한 이 봉, 최
병 호, 정 의 종

변론종결 : 1994. 4. 21.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3. 8. 12. 선고, 93가합2361 판결

주 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20,00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 1. 기초사실

갑제3 내지 8호증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
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신문(이하, 피고 코리아헤럴드라고 한다)이 발행하는 영자지 일간신문인 1991. 4. 12.자 코리아헤럴드(Korea Herald)에 『여배우 불법 유학관련혐의(Film Actress accused of overseas study scam)』라는 제목과 『약 100억원 챙겨 ; 한국 유학생 250명 미국 산악지역 가건물에서 시간만 낭비(Pockets about W10 bil. ; 250 Korean students idling in makeshift building on U.S. mountatin)』라는 소제목 아래 「최 (Choi)」라는 설명이 붙은 원고의 사진과 함께 그 내용으로, 「서울 경찰은 중, 고생 수백명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유학토록 불법 알선하고 100억원 이상을 챙겼다는 미확인 혐의로 유명 여배우 최 를 찾고 있다. 이 학생들은 유학비자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일년짜리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국내 여권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은 유학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의 부유층 자녀들로 영어실력이 모자라는 관계로 미국 학교측에서 수업시간후 학교부설농장에서 말먹이를 주는 등의 하찮은 일도 시킨다고 한다. 서울 소재의 한 유학알선업체인 코리아 아카데미의 대표인 최 는 경찰수사가 시작된 후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법위반혐의로 경찰이 찾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은 이 유학알선업체의 최고경영자인 유 씨인데, 그 또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의 이사인 호 는 어제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이 업체에서 미국 고등학교에 입학을 알선한 약 250명의 한국 학생은 산간지방의 임시건물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이 미국 고등학교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최씨의 이 업체는 서울의 주요신문에 광고를 내어 학생들을 모집했다. 경찰은 또 다른 유학알선업체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의 대표인 김 를 허위 토플 성적표를 발급한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김씨의 허위 토플성적표로 15명 이상의 한국 학생이 작년과 올해 미국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0년 3월 부당한 방법으로 500점에 훨씬 못 미치는 6명의 고등학생의 토플점수를 500점 이상으로 올려주고 대신에 총 61,000,000원을 학생들의 부모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원문 : Popular film actress Choi is being sought by the Seoul police for allegedly illegally arranging for hundreds of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o be enrolled at a U. S. high school and pocketing at least 10 billion won in “arrangement fees.” The students entered the United States with a one-year tourist visa because they could not apply for students passports, Current domestic passport law bans people under 18 from applying for students passports. The

students, mostly from highly affluent families in Seoul, were forced by U. S. school authorities to do menial work at the school farm, such as feeding horses after class, because they lacked English ability, the police investigators said. The -year-old Choi, head of the Korea Academy, an overseas study arrangement agency in Seoul, is known to have fled to the United States after getting the wind of the investigation. Also being sought by the police for violation of the passport law is another top executive of the agency, Yu who has also gone into hiding. The agency's managing director -ho, a -year-old man, was arrested by the police yesterday. The roughly 250 Korean students whom Choi's arranged to have enrolled at a language program in the U. S. high school stayed in a makeshift building high on a mountain. The police refused to identify the U.S. high school. Choi's agency recruited the students by carrying advertisements in major Seoul dailies. 이하 생략)

나. 피고 인천일보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1991. 4. 12.자 인천일보에 『서울시경』이라는 소제목 옆에 『최 씨등 6명 적발』이라는 제목과 『토플성적위조 관광비자로 유학알선』이라는 소제목 아래 「서울 시경은 11일 해외유학자격이 없는 중, 고교생들을 토플성적표를 위조하거나 관광비자를 발급받게 해 미국과 호주 등지로 유학시켜 온 (주)코리아 아카데미 상무 호등 해외유학알선업자 4명에 대해 사문서위조, 여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주)코리아 아카데미 이사장 최 영화배우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자녀의 해외유학을 의뢰한 학부모 채모 씨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월 해외유학 알선업체인 (주)코리아 아카데미를 설립, 미국유학 경험이 있는 배우출신의 최씨를 월 1백50만원씩 주고 이사장으로 내세운 뒤 일간지 등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남모 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남씨의 아들을 관광비자를 발급받게 해 유학을 보내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250여명의 학생들을 불법유학시켜주고 25억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경인일보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1991. 4. 12.자 경인일보에 『유학사기 25억 챙겨』라는 제목과 『중고생 토플성적 위조 미, 호주 등 보내』, 『4명 영장 배우 최 씨등 둘 수배』라는 소제목 아래 위 인천일보의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라. 피고 주식회사 부산매일신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1991. 4. 12.자 부산매일신문에

『중고 250명 사기유학』이라는 제목과 『토플성적위조 25억여원 챙겨』, 『알선업자 4명 영장 여배우 최 씨등 둘 수배』라는 소제목 아래 위 인천일보의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마. 피고 주식회사 국제신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1991. 4. 12.자 국제신문에 『여배우 최 씨 해외유학사기』라는 제목과 『중고생 2백50명 불법알선 25억 챙겨』라는 소제목 아래 위 인천일보의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바. 피고 부산일보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1991. 4. 12.자 부산일보에 『25억대 유학사기』라는 제목과 『성적위조 미국보내 농장일』, 『여배우 최 씨등 8명 적발』이라는 소제목 아래 위 인천일보의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1991. 4.경 서울지방경찰청(당시 서울특별시 경찰국)이 해외유학알선업체들 가운데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대표 김)에 대하여는 토플성적표 위조 등의 혐의로, 태평양유학진흥원(대표 오)에 대하여는 위조토플성적표행사등의 혐의로, 주식회사 코리아 아카데미여행사(이하 코리아 아카데미라고 한다)에 대하여 여권법위반 혐의로 수사하면서 코리아 아카데미의 호 상무등 4인을 구속하고 원고등 수명을 불구속 입건하자, 피고들은 원고가 유학사기에 관여한 바 없고, 외국으로 도피하거나 위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지명수배를 받은 일이 없으며, 코리아 아카데미는 토플성적위조와는 무관한데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허위내용의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각 기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며, 가사 위 각 기사가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과 통신전재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연합통신의 통신문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거나 그대로 전재된 것이어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그러므로 보전대, 갑 제10 내지 16호증, 을 제3, 7, 8, 10, 12, 14 내지 17, 19, 21 내지 25, 27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 20, 2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위 호는 국외여행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코리아 아카데미의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는데, 교육법, 병역법 및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유학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국외유학을 할 수 없음에도 1989. 1.부터 시행된 해외여행자유화조치 이후부터는 17세 미만자들이 관광이나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일반여권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는 점과 미국내 고등학교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약 4주간의 단기어학연수과정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미국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단 미국으로 출국하기만 하면 학업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학비만 지급하면 쉽게 입학할 허가하는 학교가 있어서 탈법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학을 원하는 중, 고등학생 및 학부형을 상대로 마치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유학생을 모집, 알선하고 그 비용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여 왔다.

(2) 한편, 원고는 세살경부터 방송에 출연하여 연예활동을 해 온 연예인으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1. 10.경 미국으로 유학을 가 그곳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1986. 6.경 귀국하여 국내에서 다시 연예활동을 계속하여 오다 1989. 2. 경 코리아 아카데미의 광고모델로 출연한 바 있었는데, 위 호는 유학희망자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국유학경험이 있는 인기 여배우인 원고에게 위 회사에서 같이 일해줄 것을 제의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그 무렵부터 위 회사의 강남지사에서 근무하게 되어 처음에는 「강남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같은 해 말경 이 회사의 본사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으로 이전한 후에는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

(3) 원고가 코리아 아카데미에서 담당한 업무는 유학생모집광고를 내는데 있어 광고모델의 역할을 하는 일과 시간이 나는 대로 위 회사에 출근하여 원고의 유학경험과 대학에서의 전공과목인 심리학을 바탕으로 위 회사를 찾아 온 유학희망자나 그 학부모들에게 미국에서의 학교생활과 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법, 미국의 교육제도, 어학공부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해 주는 일이었고 그 대가로 위 회사로부터 월 금 1,500,000원의 보수를 받아 왔는데, 그후 위 호는 「코리아 아카데미의 이사장」이라는 설명이 붙은 원고의 사진을 게재한 팜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한편, 같은 내용으로 광고문안을 작성하여 일간신문 등에 유학알선광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그후 약 40명 정도의 학생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주었고 1990. 여름에는 위 회사가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토론회 없이 미국내 대학교에 입

학할 수 있는 방법등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면서 미국대학관계자들을 안내하고 소개하였으며 그 세미나의 통역을 담당하였고, 같은 해 7. 하순경에는 미국에 있는 엘리엇트팝이라는 중, 고등학교에 약 30명의 유학희망자를 인솔하여 안내하였다.

(4) 한편, 서울특별시 경찰국에서는 해외여행자유화조치 이후 해외유학알선업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학자격이 없는 중고생들의 유학을 알선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하여 1991. 3.경 코리아 아카데미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을 포함하여 한국해외유학본부 해외교육문화원 등 9개 해외유학알선업체를 내사하였고 이에 따라 범죄혐의가 짙은 코리아 아카데미 및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에 대하여 수사에 들어가 코리아 아카데미 관계자로 위 호, 소외 유 , 원고(나중에 위 코리아 아카데미 회장인 소외 혼도 함께 입건되었다)를 유학여권을 받을 수 없는 250명의 중, 고등학생을 유학알선하고 그 명목으로 함께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혐의로,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 원장인 소외 김 를 학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토플성적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태평양 유학진흥원 상담실장인 소외 오 을 위 유학희망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위 김 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위조된 토플성적표를 교부받아 이를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각 입건하였다.

(5) 그러나 경찰에서는 코리아 아카데미 운영관계자로 위 유 에 대한 신병만을 확보하여 조사하였고, 위 유 에 대하여는 그를 검거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주소지를 찾아 갔으나 그가 이미 도주한 관계로 조사를 할 수 없었으며, 원고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상 1991. 3. 1.자로 인천 18로 전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서울 아파트 에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 내어 위 경찰관이 위 거주지를 찾아갔으나 역시 만날 수가 없어 조사하지 못하였고, 한편, 원고는 1991. 3. 7.부터 같은 달 11.까지와 같은 해 4. 4.부터 같은 달 9.까지 두차례에 일본에 다녀왔으나 위와 같이 수사가 시작된 후 자신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도피하거나 달아난 사실은 없었다.

(6) 서울특별시 경찰국은 1991. 4. 11. 09 : 30경 수사과 기자실에서 서울 시경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위 불법해외유학사건을 수사한 보도자료를 배부하였는데,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 원장인 김 가 소외 정 , 모 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토플시험성적표를 이용하여 그들의 자녀를 유학하게 한 사실이 밝혀져 동인들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코리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위

호, 익과 그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원고에 대하여는 그들이 공모하여 1990. 1. 25.부터 1991. 4. 10.까지 사이에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여권발급신청시 그 목적과 체류기간 등을 유학이 아닌 일반 관광 목적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250명 중, 고등학생의 불법유학을 알선하여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하였다는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였는데, 위 호는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여권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와 유은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토폴성적위조와 사기 부분은 원고에 대한 혐의사실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기자들의 질문에 서울특별시 경찰국 담당직원은 「원고가 위 호 등과 공모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원고는 현재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미국으로 도피하여 신병이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배중이다」라고 보충설명을 하였다.

(7) 이에 따라, 라디오를 비롯한 방송매체들은 같은 날 13:00경 뉴스부터 마치 원고가 위 불법유학사기사건의 주모자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피하여 도주한 듯한 표현으로 뉴스를 내보내었고, 같은 날 오후 석간신문인 중앙일보에서도 『여우가 해외유학사기』라는 제목과 『최 씨 미 도피, 2백여명에 백억원 가로채』, 『중고생등 미국서 영어 못해 목장일 하기도』라는 소재목아래 「해외 유학자격이 없는 2개 해외유학알선업체 대표, 브로커 등 4명이 구속되거나 영장이 신청됐으며 최씨 등 2명은 수배됐다. (중략) 서울 시경은 11일 해외유학여권을 받을 수 없는 만 18세이하 중, 고생들을 미국 캘리포니아고등학교에 유학알선해 주겠다며 2백50여명으로부터 1백억원 상당을 받은 (주)코리아 아카데미 이사장 최

영화배우), 대표 유 등 2명을 여권법위반등 혐의로 수배하고 상무 호 씨 를 구속했다. (중략)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부터 이모 양(16, 중3) 등 부유층자녀들을 대상으로 미국, 프랑스 등 외국 정규종합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중, 고생 조기유학생모집이라는 신문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2백50여명을 1년짜리 관광비자로 미국고등학교 어학연수과정에 취학시킨 뒤 알선비등 명목으로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1백억원 상당을 받았으며 최근 물의를 빚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배포하였다.

(8) 한편, 피고 코리아헤럴드는 영자지인 특수한 사정으로 경찰서에 상주하는 기자가 없는 관계로 경찰수사 관련기사나 기타 사건기사는 국내 통신사인 소외 주식회사 연합뉴스로부터 수신료를 지불하고 수신하는 통신문과 방송, 기타 다른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을 위주로 기사를 작성하며, 나머지 피고들은 지방지인 관계로 서울에서 발생한 국내 시사사건은 거의 위 연합뉴스의 통신문에 의존하고 있는데 연합뉴스는 같은 날 오후 피고들에게 『학

생 250여명 불법유학』이라는 제목과 『알선업자 넷 영장신청 2명 수배』, 『토플성적위조－관광비자이용』이라는 소재목 아래 「서울 시경은 11일 해외유학자격이 없는 중고교생들을 토플성적표를 위조하거나 관광비자를 발급받게 해 미국과 호주 등지로 유학시켜 온 (주)코리아 아카데미 상무 호(서울 13)등 해외유학알선업자 4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 여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주)코리아 아카데미 이사장 최 영화배우)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자녀의 해외유학을 의뢰한 학부모 채모 씨(45, 주부 서울 강남구

아파트)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월 해외유학 알선업체인 (주)코리아 아카데미를 설립, 미국유학경험이 있는 배우출신의 최씨를 월 1백50만원씩 주고 이사장으로 내세운 뒤 일간지등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남모 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남씨의 아들을 관광비자를 발급받게 해 유학을 보내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250여명의 학생들을 불법유학시켜 주고 25억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최씨는 유학희망자 모집과 진학상담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통신문을 송신하였다.

(9) 피고 코리아헤럴드 소속 기자들은 위 방송을 들은 사회부장인 소외 김 의 지시에 따라 서울특별시 경찰국에 가서 당시 다른 신문사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던 보도자료를 위 김 에게 팩시밀리를 통하여 전송하는 한편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고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원고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코리아 아카데미에서도 그 진위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피고 코리아헤럴드는 경찰의 보도자료, 연합뉴스의 통신문, 다른 신문사의 보도기사, 방송매체의 방송내용 등을 참고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기사의 제목만 연합뉴스와 조금씩 다르게 붙였을 뿐 연합뉴스의 통신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다.

(10) 원고는 언론매체가 위 사건을 보도한 이후인 1991. 4. 18.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 호, 유 , 훈과 공모하여 국외유학자격이 없어 유학여권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관계로 국외로 출국할 수 없는 중, 고등학생의 여권을 여권발급신청시 진정한 목적인 유학이 아닌 관광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았다는 여권법위반의 점과 유학알선을 구실로 국외유학자격이 없는 중, 고등학생의 부모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에 관한 각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같은 해 5. 18. 원고 및 소외 호등에 대한 여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

와 같이 여권 신청시 그 목적을 유학이 아닌 관광등으로 기재하여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후 그 목적과는 달리 유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권발급신청 자체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원고와 위 유호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일단 기소중지 결정(위 유호에 대하여는 사기죄로 구속기소를 하였다)을 하였으나, 그후 1992. 6. 26.에 이르러 원고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도 원고가 위 코리아 아카데미의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여 위 유호 등이 불법유학알선의 대가로 금원을 받은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배포한 경우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시된 기사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또는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취재행위에 관련된 자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는 위법성 내지 책임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 코리아헤럴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위 유호등의 해외유학알선에 대하여 원고가 관여하게 된 경위와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사들의 내용 중 위 코리아 아카데미 및 원고가 토플성적위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도한 부분과 원고가 불법유학을 알선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한 것으로 표현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어서 이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는 영화배우등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으로 일반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공인(公人) 또는 유명인이며 위 기사내용은 불법유학알선등의 위법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피고들로서는 지방지인 관계로 보도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비교적 공신력이 있는 위 연합통신이 제공한 기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연합통신이 제공한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피고들이 위 기사를 작성, 배포함으로써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성 내지 책임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 코리아헤럴드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인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불법유학사기에 관련된 듯한 표현의 기사와 경찰로부터 수배를 받아 미국으로 도피하였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되나(원고는, 위 피고가 토플성적위조에도 코리아 아카데미 관련되었다고 허위로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피고는 토플성적위조에는 다른 유학알선업체인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 대표 김 가 관련된 것으로 보도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위 기사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당시 위 피고로서는 경찰에 출입하는 기자가 없었던 관계로 위 사건을 경찰로부터 직접 취재한 것이 아니라 후에 입수한 경찰의 보도자료, 연합뉴스의 통신문, 다른 신문사의 보도기사, 방송매체의 방송내용 등을 참고로 하였으며 원고에 대하여서도 가능한 한 접촉을 시도하여 원고의 반론권을 보장하려 하려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가 위 기사를 작성, 배포한 행위는, 비록 그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취재행위에 관련하여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결국 위법성 내지 책임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위 각 보도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손해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5. 26.

□

재판장 판사 이 강 국
 판사 최 병 철
 판사 김 형 진

보도자료에 대하여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과장보도하였고, 취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없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3. 9. 2.자 판결(92가합18321)

서울고등법원 1994. 4. 14.자 판결(93나43059)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용웅 부장판사)는 1994년 4월 14일 TV탤런트 겸 영화배우인 최 씨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소송에서 「당사자인 원고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반박의 기회가 부여됨이 없이 방송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이 인정된다」며,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 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 소속 기자들이 서울시 경찰국에서 제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취재원으로부터 확인한 것과는 다르게 시청자 및 청취자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과장되게 보도하였고, 취재과정에서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원고인 최씨는 한국방송공사와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원고가 불법유학을 알선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등의 기사를 보도하자 각 3천만원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가 원고에게 진위 여부 확인등 반박의 기회가 부여됨이 없이 보도되어 원고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며 각 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하자 한국방송공사가 항소했다.

1審 判決文

사 건 : 92가합18321 손해배상(기)

원 고 : 최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창 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 현 석, 이 건 호, 장 건 상

피 고 : 1. 한국방송공사(韓國放送公社)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홍 두 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문 호

2. 주식회사 문화방송(文化放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강 성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재 후, 최 재 경

변론종결 : 1993. 8. 12.

주 문 :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원고가 유학사기에 관련되었다는 위 피고의 1991. 4. 11. 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원고가 1992. 7. 23. 언론중재위원회에 92서울중재147호로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사기 무협 의 사실등을 방송하도록 중재하여 달라고 언론중재신청을 하여 위 피고가 원고와 절충 끝에 위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면 원고는 위 언론중재신청을 취하하고 금후 어떠한 이의도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위 피고가 1992. 8. 5. 위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고 원고는 다음날 위 언론중재신청을 취하하였던 바, 원고와 위 피고 사이의 위 합의는 부제소합 의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 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 주장대로 원고가 언론중재신청을

하고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무혐의처분사실을 방송하였으며 원고가 언론중재신청을 취한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각 판결), 갑 제4, 5호증(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6호증의 1 내지 5(각 사진), 을 제1호증(언론중재신청서), 을 제3호증(사건송치), 을 제9호증(외국유학알선업자 수사결과보고, 갑 제3호증과 같다), 을 제13 내지 15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뉴스데스크 속기록), 을 제5호증(보도본문)의 각 기재와 증인 의 각 증언(다만, 증인 이 의 증언 중 위에서 믿지 않은 부분 및 위 증인, 증인 박 의 각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 않은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아역배우로 연예활동을 시작한 연예인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1981.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1986. 6.경 귀국하여 국내에서 다시 연예활동을 하여온 사실, 원고는 1989. 2.경 소외 호가 경영하던 유학알선업체인 주식회사 코리아 아카데미 여행사(이하 코리아 아카데미라 한다)와 광고모델로 출연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유학 경험과 대학 전공과목인 심리학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유학에 관한 상담을 하여주기로 하고 그 보수로 월 금 1,5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일주일에 한두번 약 1시간씩 위 코리아 아카데미에 출근하여 유학 상담을 하였는데 그 후 위 호는 원고를 코리아 아카데미의 이사장으로 광고한 사실, 교육법, 병역법 및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지 않은 사람의 경우 교육감의 유학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국외 유학을 할 수 없음에도 1989. 1. 부터 시행된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이후 17세 미만자들의 경우 관광이나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일반여권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는 점과 미국내 고등학교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약 4주간의 단기어학연수과정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미국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단 미국으로 출국하기만 하면 학업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학비만 지급하면 쉽게 입학할 허가하는 학교가 있어 탈법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학을 원하는 중고등학생 및 학부형을 상대로 마치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유학생을 모집, 알선하고 그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경우

가 늘어나자 1991. 3.경 서울 시경찰국에서 이에 대한 수사를 하기 시작한 사실, 위와 같은 수사사실을 취재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각 TV방송의 경우 원고의 사진을 부각시킨 화면과 함께,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별지 제1 KBS 보도 내용과 같은 내용을,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별지 제2 MBC 보도 내용과 같은 내용을, 1991. 4. 11. 각 TV의 경우 밤 7시, 9시, 마감뉴스에, 각 라디오의 경우 오후 1시 이후 매 시간 뉴스를 통하여 방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송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보도를 한 경우 그 보도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일반의 시청자 및 청취자가 보도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보도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가 시청자 및 청취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는 일반 시청자 및 청취자에게 연예인으로 널리 알려진 원고가 소위 호등과 공모하여 불법유학 알선업체인 코리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해외유학을 갈 수 없는 중고생들을 상대로 가짜 여권과 토폴성적위조 등의 방법으로 유학을 알선하여 그 대가로 수십억 내지 1백억원의 금원을 편취한 후 해외로 도피하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인 원고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그 반박의 기회가 부여됨이 없이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이 막대한 수의 시청자 및 청취자에게 방송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 내용을 방영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 내용을 전국에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정신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고, 피고들 소속 기자들은 당시 서울시 경찰국의 수사관이 이 사건 보도의 정보로 제공한 보도자료를 참작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 게재한 것이며 그 내용 또한 사실에 부합되므로 위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다룬다.

일반적으로 방송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경우라도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을 하고, 보도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또는 진실성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취재행위에 관련된 자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

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는 위법성 내지 책임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취재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려면 언론매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지대함에 비추어 그 보도 내용이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작성자의 신뢰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존재하여야 한다 할 것이며 수사당국의 수사과정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보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취재 기자로서는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보도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작성자가 그 정보의 진실성을 신뢰한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닌 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았다는 보도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그 후 1991. 5. 18. 원고 및 소외 호 등에 대한 여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여권 신청시 그 목적을 유학이 아닌 관광등으로 기재하여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 후 그 목적과는 달리 유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권발급신청 자체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 코리아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과세 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모두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진 후 1992. 6. 26. 원고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고가 위 호등이 불법유학알선의 대가로 금원을 받는 데에 관여한 바가 없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이 , 박 의 각 일부 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고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코리아 아카데미의 경영 및 유학알선 절차에는 관여하지도 아니하고 그 대가로 학부모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는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고도 할 수 없고, 위 피고들 소속 기자들이 서울시 경찰국에서 제시한 위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보도는 위 취재원으로부터 확인한 것과도 다르게 시청자 및 청취자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과장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취재 과정에서 위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원고가 위 코리아 아카데미의 강남지사장으로 행세하다가 그 후 소외 호가 원고를 그 이사장으로 하여 광고를 내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 오다가 위 피고에게 위 코리아 아카데미의 이사장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음을 탓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상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4호증, 을 제13 내지 17호증의 기재와 증인 박 의 증언(위에서 믿지 않은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코리아 아카데미의 강남지사장 또는 이사장이라는 적합 사용을 묵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 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 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에 대한 사기 무혐의처분 사실을 피고들을 비롯한 언론매체에서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는 회복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위자할 원고의 정신상 고통은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2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보도자

료)의 각 기재와 증인 이 의 증언(위에서 믿지 않은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사기 무혐의처분 사실을 피고들을 포함한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의 정신상 고통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 또한 이유없다.

3. 위자료 액수의 결정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전체 보도 내용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원고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그 내용이 상이한 점이 있기는 하나 서울시 경찰국의 수사 보도자료에 기하여 작성된 점, 피고들을 비롯한 언론매체에서 원고에 대한 무혐의처분 사실을 보도한 점, 원고는 위 코리아 아카데미로부터 월 금 1,500,000원을 받고 유학상담 및 광고모델을 하였으며 위 코리아 아카데미의 강남지사장 내지 이사장 직함 사용을 묵인한 점, 그밖에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지위, 피고들이 우리 나라 언론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피고들에 대하여 각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각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9. 2.

재판장 판사 이 국 주
판사 국 상 중
판사 송 영 철

제1 KBS 보도 내용

제목 : 유학사기

내용 : 영화배우 최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원이 주선해서 해외 유학길에 오른 학생들이 막상 현지에서는 막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부모들의 진정이 잇달아서 경찰이

최씨를 찾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유학알선한 브로커들도 적발되었습니다. 이른바 유학사기 사건의 수법을 알아봅니다. 영화배우 최 씨가 경영하는 유학알선업체 코리아 아카데미입니다. 이 학원에서는 해외유학 자격이 없는 중고생 250여명을 관광비자를 통해 미국등지에 불법유학을 시켜주고 수십억원 가량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역탤런트로 데뷔한 최 씨는 자신이 직접 외국유학을 다녀온 사실을 신문광고까지 내며 유학생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씨의 학원을 통해 유학을 간 학생들 대부분은 미국에서 열악한 기숙사에 수용되어 말사육등 목장일 사역까지 하는 등 미국 내에서조차 인권유린시비를 일으켜 이 학원에 대해 수사를 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잠적한 최씨를 수배하는 한편 이 학원 상무 호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2 MBC 보도 내용

제목 : 유학알선사기

내용 : 해외유학 자격이 없는 중고등학생 250여명을 불법으로 외국에 보내온 유학알선업체 대표와 영화배우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경찰국은 오늘 유학알선업체인 코리아 아카데미 상무 호 씨를 여권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행방을 감춘 이 회사 이사장 최 씨 등을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또 토폴영어시험 성적표를 위조해 한장에 이삼천만원씩을 받고 팔아온 이화텍사스 주립유학원장 김 씨와 태평양유학진흥원 상담실장 오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각각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코리아 아카데미 상무 유씨는 지난 해 1월부터 영화배우 최 씨를 내세워 일간지에 조기유학 모집광고를 낸 다음 유학이 불가능한 18살 이하의 부유층 자녀 250여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 천만원씩을 받고 관광을 목적으로 한 일반 여권으로 미국등지에 보내는 불법송출로 지금까지 100억원을 알선비로 챙긴 혐의입니다. (중략)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 쫓기다시피 유학간 부유층 자녀들은 집단수용시설에 살면서 대부분이 어학능력부족으로 학교에 정식 입학할 못한 채 1년 짜리 관광비자가 다 돼서 귀국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학생들은 목장에서 잡역부로 일하거나 수퍼마켓 배달원으로 취직하기도 하고 심지어 약물복용으로 정신병까지 얻는 경우도 있어 재미동포 사회에서 물의를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2審 判決文

사 건 : 93나4305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최

충남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창 국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 현 석, 이 건 호, 장 건 상

피고, 항소인 : 1. 한국방송공사(韓國放送公社)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홍 두 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문 호

변론종결 : 1994. 3. 17.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3. 9. 2. 선고, 92가합18321 판결

주 문 :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실시할 판결 이유는 원심판결 중 해당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갑 제1, 2, 4,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5, 6, 9, 10, 11(갑 제3호증과 같다),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의 각 증언(다만 원심 증인이 ○○○○, 박 ○○○의 각 증언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과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아역배우로 연예활동을 시작한 연예인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1981. 미 국에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1986. 6.경 귀국하여 국내에서 다시 연예활동을 하여 오던 중, 1989. 2.경 소외 ○○○○호가 경영하던 유학알선업체인 주식회사 코리아 아카데미 여행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광고모델로 출연하기로 계약을 체결하

면서, 또한 원고의 유학경험과 대학 전공과목인 심리학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유학에 관한 상담을 하여주기로 하고 그 보수로 월 금 1,5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일주일에 한두번 약 1시간씩 위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유학 상담을 하였고, 위 호는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원고를 위 소외 회사의 이사장이라고 광고하였다.

(나) 교육법, 병역법 및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지 않은 사람의 경우 교육감의 유학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국외유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1989. 1.부터 시행된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이후 17세 미만자들의 경우 관광이나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일반여권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는 점과 미국 내 고등학교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약 4주간의 단기 어학연수과정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단 미국으로 출국한 후 학비만 지급하면 쉽게 입학할 허가하는 학업환경이 열악한 학교가 있어 탈법적인 방법으로 위와 같은 학교에 유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학을 원하는 중 고등학생 및 학부형을 상대로 마치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유학생을 모집, 알선하고, 그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1991. 3.경 서울시 경찰국에서 이에 대한 수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수사사실을 취재하면서 원고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1992. 4. 11. 별지 기재 보도내용을 티브이(TV) 방송의 경우 원고의 사진을 부각시킨 화면과 함께 밤 7시, 9시, 마감뉴스에 라디오 방송의 경우 오후 1시 이후 매 시간 뉴스를 통하여 방송하였다.

(2) 일반적으로 방송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보도를 한 경우 그 보도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일반의 시청자 및 청취자가 보도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보도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가 시청자 및 청취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 사실들에 의하면, 위 보도내용은 일반 시청자 및 청취자에게 연예인으로 널리 알려진 원고가 소외 호등과 공모하여 불법유학 알선업체인 소외 회사를 운영하고 해외유학을 갈 수 없는 중고생들을 상대로 가짜 여권과 토폴성적 위조 등의 방법으로 유학을 알선하여 그 대가로 수십억 내지 1백억원의 금원을 편취한 후 해외로 도피하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인 원고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그 반박의 기회가 부여됨이 없이 위 보도내용이 막대한 수의 시청자 및 청취자에게 방송됨으로 인하여 원고

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보도내용을 방영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위 보도내용을 전국에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정신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보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된 것이고, 피고 소속 기자들은 당시 서울시 경찰국의 수사관이 위 보도내용의 정보로 제공한 보도자료를 참작하여 위 보도내용을 작성, 방송한 것이며, 그 내용 또한 사실에 부합되므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일반적으로 방송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경우라도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보도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또는 진실성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취재행위에 관련된 자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는 위법성 내지 책임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취재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려면 언론매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지대함에 비추어 그 보도내용이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작성자의 신뢰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수사당국의 수사과정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보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취재 기자로서는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보도내용으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작성자가 그 정보의 진실성을 신뢰한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닌 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먼저 원고는 영화배우등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으로 일반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공인(公人)이며, 위 보도내용이 불법유희알선등의 위법행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보도내용이 과연 진실하거나 진실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취재과정에서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나온 증거들에다가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인정에 반하는 원심 증인 의 각 일부 증언은 모두 믿지 아니하며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는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호등이 경영하는 소외 회사에서 월 금 1,500,000원의 보수를 받고, 해외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소개 및 현지 적응 등의 상담을 하였을 뿐 그 유학 절차 및 경영 등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소속 기자들이 1991. 4. 11. 위와 같은 수사개시 사실을 알고 이를 취재하기 위하여 서울시 경찰국을 방문하자, 그 담당직원인 수사관은 기자들에게 위 소외 회사를 운영하는 소외 호, 유 과 그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원고에 대하여 여권발급 신청시 그 목적과 체류기간 등을 유학이 아닌 일반관광목적등으로 허위기재하여 불법유학을 알선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여권법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며, 위 호에 대하여는 여권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만 원고는 현재 소재불명(당시 원고는 1991. 4. 4.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9. 입국하여 국내에 있었다)으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보도자료를 제시하였는데, 당시 원고등에 대한 사기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위 유학알선을 의뢰한 사람들의 수나 그들이 대가로 지급한 금원 등에 대하여는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제공받았다는 보도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그 후 위 사건의 수사담당 검사는 1991. 5. 18. 원고 및 소외 호 등에 대한 여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여권 신청시 그 목적을 유학이 아닌 관광등으로 기재하여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 후 그 목적과는 달리 유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권발급 신청 자체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위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을 처분을 하였으며,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모두 기소중지 결정을 한 후, 1992. 6. 26. 원고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고가 위 호등이 불법유학알선의 대가로 금원을 받는 데에 관련한 바가 없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 회사의 경영 및 유학알선절차에는 관여하지도 아니하고, 그 대가로 학부모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일이 없으므로, 위 보도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 소속 기자들이 서울시 경찰국에서 제시한 위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한 위 보도내용은 위 취재원으로부터 확인한 것과도 다르게 시청자 및 청취자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과장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취재 과정에서 위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피고는 또한 원고에 대한 사기 무혐의처분 사실을 피고를 비롯한 언론매체에서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는 회복되었으므로, 피고가 위자할 원고의 정신상 고통은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갑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 일부(위에서 믿지 않은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에 대한 사기 무혐의 처분 사실을 피고를 포함한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의 정신상 고통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의 명예가 회복되어 정신상의 고통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위자료 액)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전체 보도 내용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보도내용은 원고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그 내용이 상이한 점이 있기는 하나 서울시 경찰국의 수사 보도자료에 기하여 작성된 점, 피고를 비롯한 언론매체에서 원고에 대한 무혐의처분 사실을 보도한 점, 원고는 위 소외 회사로부터 월 금 1,500,000원을 받고 유학상담 및 광고 모델을 하였으며, 위 소외 회사의 강남지사장 내지 이사장 직함 사용을 묵인한점, 그밖에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지위, 피고가 우리 나라 언론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배상할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4. 14.

재판장 판사 이 용 웅
 판사 강 현
 판사 박 동 영

보도내용

제목 : 유학사기

내용 : 영화배우 최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원이 주선해서 해외 유학길에 오른 학생들이 막상 현지에서는 막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부모들의 진정이 잇달아서 경찰이 최씨를 찾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유학알선한 브로커들도 적발되었습니다. 이른바 유학사기 사건의 수법을 알아봅니다. 영화배우 최 씨가 경영하는 유학알선업체 코리아 아카데미입니다. 이 학원에서는 해외유학 자격이 없는 중고생 250여명을 관광비자를 통해 미국등지에 불법유학을 시켜주고 수십억원 가량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역 텔런트로 데뷔한 최 씨는 자신이 직접 외국 유학을 다녀온 사실을 신문광고까지 내며 유학생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씨의 학원을 통해 유학을 간 학생들 대부분은 미국에서 열악한 기숙사에 수용되어 말사육등 목장일 사역까지 하는 등 미국 내에서 조차 인권유린시비를 일으켜 이 학원에 대해 수사를 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잠적한 최씨를 수배하는 한편 이 학원 상무 호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

.....

인터뷰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단독인터뷰를
통해 이혼사유 등을 밝힌 것처럼 허위보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2. 7.자 판결(93가합25344)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4부(재판장 오윤덕 부장판사)는 1993년 12월 7일 청와대 정책수석비서관에 내정되었던 바 있는 전병민 씨의 전 부인인 최 씨가 토요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토요신문사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요신문사가 지난 3월 13일자 신문에서 최씨와 인터뷰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단독인터뷰를 통해 이혼사유등을 속속들이 밝힌 것처럼 허위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원고 최씨는 토요신문이 1993년 3월 13일자에 『전병민의 전처 최모 씨 본지 최초 고백』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자신과 직접 인터뷰한 사실이 없는데도 직접취재한 것인 양 전병민과의 결혼생활, 이혼 경위 및 전병민의 성향 등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자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소송을 냈다.

判 決 文

사 건 : 93가합25344 손해배상(기)등

원 고 : 최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용 일, 최 일 숙

피 고 : 1. 주식회사 토요신문사

서울 중구 다동 35

대표이사 홍 성 목

2. 구

서울

3. 한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유 주

변론종결 : 1993. 11. 16.

주 문 : 1. 피고 주식회사 토요신문사, 한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3. 13.부터 1993. 12. 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토요신문사는 주간지 토요신문의 제3면에 제목은 100호 견고덕 장4체 활자로, 내용은 14호 신문명조 평1체 활자로 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3. 원고의 피고 구 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토요신문사, 한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구 사이에 생긴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토요신문사, 한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3.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 송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간지 「토요신문」의 제1면 우측 상단에 120호 견고덕 평4채 활자로 『본지 1993. 3. 13.자 전병민 전처 최모 씨 관련기사, 최씨의 프라이버시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제3면에 제목은 100호 견고덕 장4채 활자로, 내용은 14호 신문명조 평1채 활자로 하여 별지 제2목록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각 게재하라.

이 유 : 1. 피고 주식회사 토요신문사, 한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갑 제1호증의 1, 2(각 신문), 갑 제2호증(사과문, 갑 제3호증의 8과 같다), 갑 제3호증의 2(공소장), 5(고소장), 6, 14(각 진술조서), 7(답변요구서), 11, 13, 15, 17(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다만 갑 제3호증의 11, 13, 14, 15, 17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각 제외) 및 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주간지인 「토요신문」등 정기간행물의 출판업 등을 경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토요신문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자유기고가로 종사하던 피고 한 은 피고 회사 정치부장인 소외 이 의 지시에 따라 1993. 2. 25.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청와대 정책수석비서관에 내정되었던 소외 전병민이 그 장인 한 의 전력등이 문제되어 내정이 취소됨에 따라 동인의 결혼생활 등 사생활에 세인의 이목이 집중되자, 마침 언론 출판계에 20년 가까이 종사하고 있는 원고가 위 전병민의 전처였던 사실을 알아내고 원고를 상대로 위 전병민과의 결혼생활, 이혼 경위 및 전병민의 성향 등에 대하여 기획취재를 하기로 마음먹고, 1993. 3. 4. 당시 세계일보사에서 발행사는 월간잡지 「세계여성」의 편집부장으로 근무하던 43세의 이혼녀인 원고를 사무실로 찾아가 원고에게 취재목적을 설명하고 회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

고가 이를 거절하였고, 그 이후 약 3 내지 5분간에 걸쳐 이어지는 상식적인 차원의 질문에 대하여도 이것이 기사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소극적으로 이미 이 사건은 기사 가치가 없다고 하였으며, 위 전병민과 일본에서 알게 되었다고 현 부인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한 바도 없었고, 위 전병민의 성격에 대하여는 부부 사이라고 하여도 상대의 성격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였을 뿐이며, 위 전병민이 지금 어디에선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는 위 피고의 말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였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 피고의 질문을 받은 적도 답변을 한 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하여 당시 일반 독자가 갖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호기심을 만족시켜 이른 바 기사거리가 되게 할 욕심에서, 그 시경 서울

소재 위 피고의 자택 등지에서 원고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하여 같은 달 13.경 위 기사가 위 피고가 직접 원고를 회전하여 원고로부터 직접 취재한 것인 양 피고 회사에 송고하여 피고 회사의 정치부장인 위 이 로 하여금 같은 날짜 발행 「토요신문」 지상 제1면 우측 상단 부분에 『전병민의 전처 최모 씨 본지 최초 고백』이라는 제목 아래 120호 견고덕 평4채 활자로 『나와 전병민의 과거 밝힌다』라는 설명을 달고, 제3면 중안 부분에 『본지 단독 고백, 전병민 전처 최모 씨 전남편과 이혼 사유를 밝힌다』라는 제목 아래 100호 견고덕 장4채 활자로 『개인적 상처일 뿐...이젠 담담해요』라는 요약을 달아, 14호 신문명조 평1채 활자로 하여 원고를 최모 씨(43세)라는 표현 아래 원고가 위 전병민과의 이혼과정에 「일반적인 수준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 일설이라는 전제로 이를 인용하여 「일본에서 한 씨와 밀애를 나누던 전씨가 귀국 후 최씨에게 이혼을 강요했다고 한다.」, 케이(K)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일본에서 연구목적으로 가끔 만나는 현 부인과의 관계를 최씨가 지나치게 상상하여 의심했던 것이 불화의 시작이었다.」, 위 전병민의 성격에 대하여 원고가 「워낙 소탈 같은 사람이라 5~6년을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정치에는 남다른 관심과 집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물러지는 않을 것이다.」, 「전씨의 개인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 공직 자리가 아닐지라도 그의 밀실정치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된다고 밝혔다.」는 취지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편집 게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9(93. 4. 23.자 토요신문기사), 10(93. 4. 24.자 토요신문기사), 12(진술서)의 각 기재 및 갑 제3호증의 11, 13, 14, 15, 17의 각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그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통상 신문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기사의 내용, 기사의 배치, 기사의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 부여하는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이 사건 기사에 43세의 최씨 성을 가진 이혼녀 정도로만 표시되어 있으나, 원고가 언론계에 종사하는 43세의 직장여성으로서 적어도 그녀가 생활을 하는 범위 내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기사에서 지칭하는 43세의 최 모씨가 원고를 지칭하는 것이라 여기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기사의 제목 배치와 내용,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위 전병민과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여자들과의 관계나 의심하는 의부증(疑夫症)이 있는 여자이고, 남편의 성격조차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그 정도로 소원한 관계에 있다가 위 전병민과 현처와의 관계에 밀려서 이혼까지 강요당한 무능력한 여자로서 위 전병민과의 이혼으로 큰 상처를 입었으며, 위 전병민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세인의 관심이 쏠리자 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사에 전 남편의 행태를 비난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내용의 심경 고백이나 즐기는 경솔한 여자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기사가 게재되어 수많은 독자에게 넓게 보도·공표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위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는 모두 진실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신문의 사명에 비추어 적법히 허용된 범위 내에서 게재된 것으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결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 사건 기사 내용이 모두 진실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9 내지 15, 1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5 내지 8의 각 기재 및 증인 박 ○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대부분이 허위의 사실인 점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위 피고들은 또한, 이 사건 기사는 원고로부터 그 기사화를 승낙받아 위 토요신문에 게재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결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9 내지 15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기사의 작성 자체

를 거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항변도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 한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신문에 게재되게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회사는 위 피고 및 위 피고에게 기사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편집한 위 이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위 피고 및 위 이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및 내용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신문이 배포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명예가 상당히 훼손된 사실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위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언론 출판계에 20년 가까이 일 해오면서 그 업무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이름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다만 최 모씨라고 표시하여 기사를 게재한 점 및 앞서 본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6, 11, 13의 각 기재 및 증인 〇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고등학교 재학중인 위 전병민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딸을 키우고 있으며,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주위 친척과 친지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사정과 그 밖에 원고의 나이와 직위, 피고 회사의 규모와 신문발행부수,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크기 및 그 게재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서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정보도를 명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그 위자료의 수액은 금 10,000,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함께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위 「토요신문」을 발행하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1 목록기재 정정보도문을 위 「토요신문」에 이 사건 기사에 준하는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게재토록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 한에 대하여도 위 손해배상청구에 더하여 위 피고의 노력과 비용으로 위 「토요신문」에 명예회복을 위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는 피고 회사의 기자에 불과하여 위 「토요신문」의 기사 작성권 이외에 기사의 편집 및 발행권을 갖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위 피고에 대해 위 정정보도를 명함은 무의미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2. 피고 구봉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구은 피고 한과 공모하여 1993. 2. 25.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청와대 정책수석비서관에 내정되었던 소위 전병민이 그 장인 한의 전력등이 문제되어 내정이 취소됨에 따라 동인의 결혼 생활등 사생활에 세인의 이

목이 집중되자, 원고가 위 전병민의 전처였던 사실을 알아내고 일반 독자들이 갖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호기심을 만족시켜 위 「토요신문」의 발행부수를 늘리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위 전병민과의 결혼생활, 이혼경위 및 전병민의 성향 등에 대하여 기획 취재함으로써 그 사생활을 파헤쳐 주간지인 위 「토요신문」에 기사화하여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명예를 훼손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 한정곤이 작성한 신문 기사를 편집하여 위 제1항에서 살핀바와 같이 1993. 3. 13.자 「토요신문」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구 가 위 「토요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위 피고가 피고 한 과 공모하였거나 이 사건 신문 기사를 실제로 편집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5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갑 제3호증의 12, 14,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구 는 피고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인으로서 운영자금의 조달, 수입 및 지출의 결재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뿐 실제로 위 토요신문 기사의 편집 및 발행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위 「토요신문」의 발행 및 편집은 피고 회사 편집국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시 이 사건 신문 기사에 대한 발행 및 편집은 피고 회사 편집국장이 공식적인 관계로 피고 회사 정치부장인 소외 이 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구 가 이 사건 신문 기사를 실제로 편집,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와 피고 한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위자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로서 이 사건 기사가 실린 신문이 발행된 1993. 3. 13.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3. 12. 7.까지는 민법 소정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할 5분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위 「토요신문」의 제3면에 별지목록기재 제1정정보도문을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구 에 대한 청구와 피고 회사 및 피고 한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는 모두 이유없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2. 7.

재판장 판사 오 윤 덕

판사 김 기 정

판사 이 선 희

1. 정정보도문

가. 제목

본지 1993. 3. 13.자 전병민 전처 최모 씨 전남편과 이혼사유를 밝힌다는 기사에 관하여 최씨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본지에 손해배상판결

나. 내용

본지 1993. 3. 13.자에 게재된 『전병민 전처 최모 씨 본지 최초 고백』 관련 기사는 최씨가 회견을 거절하였음에도 최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가 임의로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하여 최씨의 사생활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잘못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보도문

가. 제목

본지 1993. 3. 13.자 「전병민 전처 최모 씨 관련기사」, 최씨의 프라이버시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판결

나. 내용

본지 1993. 3. 13.자에 게재된 『전병민 전처 최모 씨 고백』 기사는 최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터뷰도 거치지 않은 채, 기자가 자의로 추측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하여, 최씨의 사생활을 침해하였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기사는 마치 최씨가 본

지와 단독으로 인터뷰를 하여 전병민씨와의 이혼사유를 스스로 밝혔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적당한 시기에 밝힐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씨는 본지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였고, 기사화하는 것에도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기사는 매우 잘못된 것으로 불법적인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

작품소개를 위해 인터뷰에 응한 원고의 의사에 위배하여 원고의 이혼을 주내용으로 하는 사생활에 관한 기사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손해배상하고 판결내용을 게재하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4. 1. 12.자 판결(93가합3572)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현순도 부장판사)는 1994년 1월 12일 소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작가인 공 씨가 「주부생활」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학원 사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뷰에 응한 원고의 의사에 위배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문제의 기사가 원고의 장편소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에 관한 기사라기 보다는 원고의 이혼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기사라 이해될 수 있도록 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원고 공씨는 1993년 1월에 출간한 소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에 관한 작품소재, 배경, 작품세계 등을 기사화하기로 하고 인터뷰에 응했으나, 「주부생활」이 표지나 목차 또는 내용란의 첫면만을 보면 자신의 이혼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생활에 관한 기사로 이해될 수 있게 게재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판결전문을 게재하라는 소송을 냈다.

判 決 文

사 건 : 93가합3572 손해배상등(기)

원 고 : 공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응 일

피 고 : 1. 주식회사 학원사(學園社)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의 37

대표이사 김 영 수

2. 김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 철 민

변론종결 : 1993. 12. 15.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3. 1.부터 1994. 1. 12.까지는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분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학원사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부생활」에 별지목록 제 1기재와 같은 내용을 같은 목록 제 2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게재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분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학원사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부생활」의 표지란과 목차란에 『본지 93. 3.호 기사, 소설가 공지영의 명예를 훼손하여 손해배상판결』이라는 제목을, 내용란에 이 사건 판결 전문을 각 게재하라는 판결.

이 유 : 1. 원고 및 피고들의 지위

원고는 이 사건 장편소설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등을 저술한 소설가이고, 피고 주식회사 학원사(이하 피고 학원사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월간잡지인 「주부생활」등을 발행, 판매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김 ○ ○ 은 피고 학원사의 직원으로서 위 「주부생활」 1993년 3월호에 이 사건 기사내용을 게재한 기자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불법행위 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증 1 내지 3, 갑 제 3호증, 갑 제 4호증, 갑제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 ○ ○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김 ○ ○ 은 1993. 2. 18. 피고 학원사가 발행하는 월간잡지 「주부생활」에 원고가 같은 해 1. 16.경 출간한 장편소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에 관한 작품소재, 배경, 작품세계 등을 기사화 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취재를 목적으로 원고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나) 원고는 다른 잡지에 자신의 사생활이 기사화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터라 피고 김 ○ ○ 에게 위 소설의 소개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자신의 사생활을 기사화할 것을 당부하면서 위 취재에 응하여 다음날인 같은 해 2. 19. 16 : 00 경 서울 동숭동 소재 카페 「37도 2부」에서 위 피고를 만나 잡지에 게재할 사진을 촬영한 다음 원고의 위 장편소설에 관한 이야기를 위주로 하면서 상호간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었으나, 원고는 위 피고에게 자신의 이혼경력등의 사생활을 위 장편소설의 소개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기사화 하도록 재차 당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김 ○ ○ 은 위 취재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 학원사가 발행하여 1993. 3. 1.경 배포한 1993년 3월호 「주부생활」 잡지에 위 장편소설을 소개하면서 표지에 『소설가 공 ○ ○ 바람피지도 않은 남편, 때리지도 않는 남편을 떠나 나는 왜 혼자가 되었나』, 목차란에 『이 여자의 자기선언 소설가 공 ○ ○ , 나는 왜 바람피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는 남편을 떠나 혼자가 되었나』, 내용란의 첫면에 『이 여자의 인간선언, 여자의 재능과 자아성취 욕구 꺾는 결혼생활에 반발, 이혼선언하고 자신의 체험을 소설로 쓴 작가 ○ ○ ○ 바람을 피우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는 남자를 떠나 왜 나는 혼자가 되었나』라고 한 후, 그 다음면부터 원고에 대한 서술을 명조체로, 위 장편소설의 「혜완」이라는 주인공에 대한 서술을 고딕체로 하여 연이어 게재함으로써 위 잡지의 표지나 목차, 또는 내용란의 첫면만을 보는 독자

들로 하여금 위 기사가 원고의 위 장편소설에 관한 기사라기 보다는 원고의 이혼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기사라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위 잡지의 표지란, 목차란, 내용란의 첫면에 기사전체의 내용을 연결하여 보아도 원고와 위 소설속의 「혜완」이라는 인물이 실제로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글자체의 구별 외에는 명확한 구별이 없이 기사를 작성하여 원고의 이 장편소설을 잘 정독하여 읽지 않은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고딕체로 게재한 소설속의 「혜완」에 대한 내용이 원고 자신에 대한 내용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도록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 ○○은 원고가 자신의 사생활이 기사화되는 것을 극히 꺼려한 사실을 알고 있어서 원고의 사생활 부분이 기사화되면 그것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키리라는 것을 적어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락 없이 위 인터뷰에 응한 원고의 의사에 위배하여 위 「주부생활」 잡지의 1993. 3월호에 위와 같이 원고와 원고의 위 장편소설에 관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학원사는 위 잡지의 발행자이자 피고 김 ○○의 사용자로서, 피고 김 ○○은 위 기사를 작성한 자로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

(3) 피고들은 위 기사내용은 원고와의 인터뷰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진실에 기초한 것이고, 또한 원고의 위 장편소설이 원고의 직접 또는 간접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이므로 위 장편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그 작품에 투영된 작가의 생활과 의식세계를 알 권리가 있고, 피고들로서는 이를 알려줄 의무가 있어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을 기사화한 것일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어서 위법성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위 기사의 내용이 위 장편소설에 투영된 작가의 생활과 의식세계를 게재하였다고 이해되기 보다는 원고의 이혼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사생활에 관한 기사라고 이해될 수 있도록 게재하였고, 그 내용란의 게재방법에 있어서도 원고와 위 소설속의 「혜완」이라는 인물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없이 기사를 작성하여 소설속의 「혜완」에 대한 내용이 원고 자신에 대한 내용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도록 한 이상 이는 독자들의 알권리나 언론 출판의 자유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 기사의 게재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상당히 저하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히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연령, 신분, 교육정도, 소설가로서

의 문단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저명도, 이 사건 기사내용을 실게된 경위 및 원고의 명예 훼손의 정도, 피고들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기사내용이 실린 「주부생활」의 판매부수, 피고들이 위 기사게재 후 원고에게 명예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가 없었던 점 및 피고 학원사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예회복 방법으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재를 명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다. 명예회복의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의 위 행위로 말미암아 명예를 훼손당하여 이에 대한 정신적 위자로서 위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였으나, 위 손해배상만으로는 원고의 구제가 실질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므로 위 손해배상과 함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적당한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기사 내용에 쓰인 활자의 크기와 종류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학원사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부생활」에 별지목록 제 1기재와 같은 내용을 같은목록 제 2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게재함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위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재가 사죄광고를 구하는 것이어서 피고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별지목록 기재내용은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이 법원으로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안을 피고 학원사 발행의 위 「주부생활」에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지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의 양심에 반하여 원고에게 동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사과를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 일인 1993. 3. 1.부터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4. 1.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분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명예회복의 적당한 방법으로 피고 학원사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부생활」에 별지목록 제 1기재와 같은 내용을 같은 목록 제 2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게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 12.

재판장 판사 현 순 도

판사 서 태 환

판사 이 완 식

게재내용 및 방식

1. 게재할 내용

가. 목차란 게재내용

「본지 93. 3.호 기사중 일부가 소설가 의 명예를 훼손」이라는 제목

나. 내용란의 게재내용

「본 출판사가 본지 1993년 3월호에 『소설가 바람피지도 않는 남편, 때리지도 않는 남편을 떠나 나는 왜 혼자가 되었나』라는 제목하에 위 공 의 소설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인터뷰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공 의 의사에 반하여 표지나 목차, 또는 내용란의 첫면을 공 의 사생활에 관한 기사로 오해될 수 있도록 게재하였고, 그 내용란에 있어서도 공 과 위 소설속의 <혜완>이라는 인물에 대한 명확한 구별이 없이 기사를 작성하여 위 소설속의 <혜완>에 대한 내용이 공 자신에 대한 내용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본 출판사와 담당기자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1994. 1. 12. 「공 과 위 소설속의 인물인 혜완을 서로 동일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마치 공 의 사생활을 기사화 한 것처럼 보여지게 하여 공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
니다 라는 내용.

2. 게재 방식

가. 목차란 내용의 게재방식

목차란에 18포인트 크기의 고딕체 활자로 가로로 게재

나. 내용란 내용의 게재방식

내용란에 9포인트 크기의 명조체 활자로 가로로 게재.

□

원고가 중앙정보부 출신이라는 허위내용을 보도하여 부도덕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주어 국회의원으로서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4. 9. 14.자 판결(93가합14585)

서울고등법원 1995. 4. 12.자 판결(94나35185)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1995년 4월 12일 당 임의원이 월간 「한국의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잡지에 게재된 잘못된 기사로 국회의원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된 만큼 피고는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상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는 형사상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고의적인 비방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성립된다」고 밝혔다.

「한국의회」 1993년 11월 창간호에서 「제14대 총선의 당선자 분석」이라는 기획기사중 88면 『국회의원 임 서울 을 당 막상막하 스타일의 승리를 이루다』 제하의 기사에서 제14대 총선에서 재검표를 통해 당선된 원고가 동아일보 기자출신으로 중앙정보부 출신이라고 보도되자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야당의원으로서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는 것을 경력 기반으로 하여 당선된 국회의원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원고가 국민들의 정서에 군사독재정권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앙정보부 출신이라는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어 원고가 부도덕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주어 국회의원으로서의 원고의 사회적 평

가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이 명백하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문제의 기사가 보도되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으나 피고측이 사실에 근거한 보도이므로 정정할 수 없다 하여 중재가 성립되지 않자(93서울중재218)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함께 제기해 정정보도인용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審 判決文

사 건 : 93가합14585 손해배상(기)

원 고 : 임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신영한

피 고 : 1. 윤

2. 윤

3. 김

피고들 주소, 서울 마포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성 기

변론종결 : 1994. 8. 31.

주 문 : 1. 피고 윤 은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12. 27.부터 1994. 9. 1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윤 , 김 세 대한 청구 및 피고 윤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윤 ,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1/2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부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분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피고 윤정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21,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서종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 을구의 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가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재검표를 통해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이고, 「월간 한국의회」는 1989. 6. 5.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월간지로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제도 및 관계법령을 해설 소개하고 각급 의원의 의정활동상과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제언을 수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타블로이드판으로 100면 이상 200면 이내로 편집,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하는 잡지인 바, 피고 윤 은 1993. 10. 15. 소외 으로부터 위 월간지의 발행 운영권을 인수하여 위 월간지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서 1993. 11. 1.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나) 위 월간지 창간호에서 당시 이 월간지의 편집국장이던 소외 조 은 「제14대 총선의 당선자 분석」이라는 기획기사란 88쪽에 『국회의원 임 서울 을 당, 막상 막하 스틸의 승리를 이루다』라는 제목하에 「제14대 총선에서 김 의원과의 재검표를 통해 당선 확정 되는 순간, 그에게는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그 미소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그의 14대 국회 임기가 끝나야 할 정도로 그에게 있어서의 평가는 조심스럽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중앙정보부 출신이라는 것이 흠으로 지적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의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으며, 위 창간호는 약 3,000권이 인쇄되어 299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각 1권씩 배포되고, 그 밖에 원고의 지역구인 구 시의원인 소외 윤 이 약 150권 정도를 구입하여 지구당에 배포를 하는 등 지구당 위원장 및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부가 배포되고 나머지는 일반 서점에서 권당 가격 5,000원에 판매되었다.

(다) 위 조 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1990. 11월 「말」지 별책부록 「보안사 민간사찰 개인별 기록카드」 99쪽에 실렸던 「원고가 1963. 3.부터 같은 해 10.까지 세기상사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기사와, 과거 중앙정보부에 근무하였던 소외 조 , 오

으로부터 중앙정보부를 「세기문화사」라고 통칭하고, 중앙정보부 이문동 본부를 「세기상사」라고 통칭한다고 들은 말과, 1987. 제13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에서 주

민들 사이에 떠돌던 풍문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과거 중앙정보부에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 확인도 해보지 않고서 위와 같이 원고가 과거 중앙정보부에 근무하였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편집인 겸 발행인인 피고 윤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창간호를 발행함에 있어서 기사 내용의 진위확인을 하지 않았다.

(라) 그러나 실제 원고가 1965. 3. 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근무하였던 「세기상사」는 영화배급업체로서 원고는 당시 위 회사 광주지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이며, 원고는 1976.경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통하여 언론자유운동을 하는 등 재야운동을 전개하여 오다가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러한 재야활동등을 기반으로 하여 국회의원에게 당선된 것이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야당의원으로서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다는 것을 경력 기반으로 하여 당선된 국회의원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원고가 국민들의 정서에 군사독재정권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앙정보부 출신이라는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어 원고가 부도덕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위 월간지가 인쇄, 일반인에게 배포됨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3) 피고 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 게재함에 있어서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거나, 적시한 내용이 허위의 것이라는 인식 또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민사상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사상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과는 달리 비방할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신문, 잡지와 같이 독자들에게 배포됨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매체에서 기사를 작성, 게재함에 있어서 그 기사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막연한 풍문등을 근거로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 배포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를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위자료

이 사건 기사가 실린 위 월간지가 시중에 배포, 판매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고 원고가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 윤은 원고의 위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앞서 본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 원고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위 월간지의 발생부수, 이 사건

기사의 게재부분의 크기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명예회복경비

원고는 피고 윤 의 불법행위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지역구 주민들에게 해명편지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는 비용으로 금 50,000,000원이 소요되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허위 기사로 인하여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필요 조치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고, 증인 의 증언만으로 위와 같은 금액이 필요경비로 소요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윤 김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윤 , 김 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피고들은 피고 윤 과 공동으로 위와 같이 위 월간지에 허위의 이 사건 기사를 작성 편집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위 월간지 창간호가 「발행처는 주식회사 한국의회, 대표이사는 피고 윤 , 수석기자는 피고 김 」으로 표시되어 발간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 윤 김 이 피고 윤 및 위 조 과 공모하여 이 사건 기사를 편집, 발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제2호증의 7, 8, 11, 12, 13, 17,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윤 는 피고 윤 란의 오빠로 피고 윤 과 함께 위 월간지를 인수하여 주식회사로 설립, 경영할 의도였으나, 위 월간지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 윤 이 발행, 편집 등을 혼자 맡아하기로 하고, 위 월간지의 발행인 등록도 피고 윤 명의로만 하였으며, 단지 위 월간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법인 설립을 추진하다가 창간호에는 「주식회사 월간 한국의회의 대표이사」로 피고 윤 가 표시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 윤 , 김 이 실제로 위 월간지를 편집,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윤 은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 12. 2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4. 9.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분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윤 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 윤 , 김 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9. 14.

재판장 판사 양 동 관
판사 지 영 난
판사 최 인 규

2審 判 決 文

사 건 : 94나35185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임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기 욱

피고, 항소인 : 윤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성 기

변론종결 : 1995. 3. 15.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4. 9. 14. 선고 93가합 14585 판결

주 문 :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이 판결에 실시할 이유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일부 반하는 당심증인 조
의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4. 12.

□

재판장 판사 신 정 치
판사 구 만 회
판사 조 동 섭

.....

속칭 「오렌지족」의 생활양태를 비판적으로
다른 기사에서 원고들의 얼굴사진을 승낙없이
게재하여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0. 20.자 판결(94가합36754)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21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1994년 10월 20일 탤런트 전
서 김 씨가 월간 주니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
게 2천8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로지 보도를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본인들의 승낙없이 사진
등을 무단으로 게재했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비록 피고측의 기사내용이
오렌지족을 비판하는 건전한 내용이며 게재된 사진에 이름등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 역시 초상권 침해로 보아야 한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전 씨등은 월간 주니어 1993년 1월호 『압구정동 문화의 실체를 벗긴다』 제하의 기
사에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부 지역에서 1993년을 전후하여 번성한 부유한 신세대 젊
은이들의 향락적인 과소비 문화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 취재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평
상복차림의 원고등이 함께 거리를 걷어가는데 같은 또래의 남자가 말을 붙이는 듯이 보이

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함께 게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4가합36754 손해배상(기)

원 고 : 1. 전

서울

2. 서

서울

3. 김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신 호

피 고 : 이

서울 서초구

월간주니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충 진

변론종결 : 1994. 9. 15.

주 문 : 1. 피고는 원고 전 , 같은 서 에게 각 금 10,000,000원, 원고 김 에게 금 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3. 1. 2.부터 1994. 10. 20.까지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3. 1.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1986년경부터 1994. 6.경까지 1976. 12. 16. 등록번호 라2024호로 창간된 월간

잡지 「จู니어」의 발행인으로서 주 독자층을 청소년으로 삼는 상업지인 위 잡지를 발행, 배포하였는데, 1993. 1. 1.자로 발행한 「จู니어」 1993년 1월호(이하 이 사건 잡지라 한다)의 327면 내지 331면에 『압구정동 문화의 실체를 벗긴다』라는 제목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부 지역에서 1993년 전후하여 번성한 부유한 신세대 젊은이들의 향락적 과소비 문화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취재 분석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남들과 뭔가 달라야 한다』, 『삶은 즐기는 것이다』, 『넘쳐 흐르는 외국문화』, 『한풀이 소비문화의 단면』, 『카페에서 지금 막 부킹에 성공한 남학생에게 묻는다.』, 『문답으로 풀어 본 오렌지족』 등의 소제목을 달아 게재하면서, 그 329면의 상단에 별지와 같이 그 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크기(세로 약 12.5cm, 가로 약 20.5cm)로 평상복 차림의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3명이 함께 거리를 걸어가는데 같은 또래의 젊은 남자가 말을 붙이는 듯이 보이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삽입하였다.

나. 이 사건 사진에 나와 있는 3명의 여자들 중 사진의 왼쪽이 원고 서○, 가운데가 원고 전○, 오른쪽이 원고 김○으로서, 원고 서○은 얼굴을 약간 옆으로 돌린 모습으로, 원고 전○은 얼굴을 앞으로 조금 숙인 모습으로, 원고 김○은 작은 크기의 선글라스를 끼고 얼굴을 앞으로 약간 숙인 모습으로 찍혀 있는데, 원고 전○, 같은 김○은 그들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 금방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얼굴 윤곽이 뚜렷하게 사진에 나타나 있고, 원고 김○도 선글라스를 껴지만 체격, 얼굴모양, 의상 등으로 보아 조금만 자세히 보면 같은 원고임을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게 사진에 나타나 있다. 또 이 사건 사진에는 원고들이 함께 거리를 걸어 가다가 젊은 남자가 접근하자 미소를 짓는 듯이 보이는 모습으로 찍혀 있다.

한편 이 사건 기사에는 이 사건 사진 이외에 압구정동 거리의 풍경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6장의 사진이 기사 중에 삽입되어 있는데 이 사진들은 대부분 거리의 풍경이나 커피숍, 음식점 등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찍은 것으로서 이 사건 사진보다 작은 크기로 삽입되어 있고 그에 나타난 인물들의 얼굴들은 이 사건 사진의 원고들처럼 분명히 식별할 수 있지는 않다.

다.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부 지역에 1970년대에 태어난 부유층 자녀들 일부가 비싼 외국제 옷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고 모여 들어 화려한 시설과 값비싼 음식들이 갖추어진 나이트 클럽, 카페 등에서 아끼지 않고 돈을 쓰며, 소비적, 향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렌지」라는 은어로 통하는 이들은, 부모의 세대가 이룩한 물질적 풍요의 바탕 위에서 향락과 쾌락주의를 선민의식과 일류의식으로 오해

하여 무국적, 무절제, 외국풍 모방의 속칭 압구정동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고, 이들을 아무런 의식없이 흉내내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이며, 전문가는 「오렌지족」의 등장배경은 정치, 사회적 개방과 소비를 마음껏 경험해 보지 못한 부모세대의 한풀이 소비 욕구에 사회의 전반적인 소비풍조가 한데 어울려 나타난 결과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또 이 사건 기사 중에는 「그저 일본 유명 잡지의 모델을 복제한 듯한 젊은이들이 활보하고 있고 일본이나 미국의 삼류문화가 뒤섞여 있을 뿐 아무런 실체가 없는 문화」, 「철저하게 외부의 세계와 두꺼운 담을 쌓고 향락과 쾌락주의를 선민의식과 일류의식으로 오해하며 서서히 병들어 가고」, 「외모와 돈이 평가기준이 되는 이 곳에서는 무절제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도 문제」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또 기사 뒷쪽에는 『카페에서 지금 막 부킹에 성공한 남학생에게 묻는다』라는 소제목 아래 커피숍에서 처음 보는 여자에게 말을 붙여 대화상대로 삼는 데 성공했다는 22세 남자와의 문답과 『문답으로 풀어 본 오렌지족』라는 소제목으로 속칭 오렌지족이라 불리는 젊은이들의 생활양태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라. 원고 전 는 1991. 1. 17. 제3회 롯데제과주식회사 전속모델 선발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경력을 가진 1974년생의 여자이고 이 사건 잡지가 발행된 1993. 1.경에는 대학교 연극영화과 재학중의 대학생으로서 소외 서울방송의 2기 탤런트로 활동중이었으며, 원고 서 는 1972년생의 여자로서 그 무렵 대학의 졸업을 앞둔 상태의 대학생으로서 역시 서울방송의 2기 탤런트로 활동중이었고, 원고 김 은 1973년생의 여자로서 당시 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재학중인 대학생이었는데, 이 사건 사진이 촬영된 때에 원고들은 압구정동 소재 커피숍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 귀가하던 중이었고, 이 사건 사진에 원고들에게 접근하여 말을 거는 듯이 보이는 젊은 남자는 원고들에게 업소를 선전하는 명함을 건네주던 사람이었다.

마. 이 사건 사진은 피고가 고용하고 있던 소외 조 에 의하여 원고들의 아무런 동의 없이 원고들 모르게 촬영되었고, 「주니어」의 1993. 1.경 발행부수는 약 22,000부 정도이고 정기구독이나 가두판매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전국의 서점을 통하여 판매되었다.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가. 살피건대, 통상의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얼굴이나 행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고 공표되면 수치심, 곤혹감 등의 불쾌한 감정을 강하게 느껴 정신적 평온이 침해받게 된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이고, 개인이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이익은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인격에 관한 권리의 일부가 되는 것(이러한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진을 찍고 이를 이 사건 잡지에 게재하여 전국의 서점에 배포한 행위는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일부 젊은이들이 무분별한 과소비와 향락적 생활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사건 기사 중간에 우연히 압구정동의 커피숍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 후 귀가하던 중에 젊은 남자가 업소 선전용 명함을 제시하는 것을 스쳐보며 웃는 원고들의 사진을 삽입하여 놓았는데, 이 사건 기사를 읽은 통상의 독자들이라면 이 사건 사진에 나타난 원고들이 위 기사에서 향락적, 소비적, 무절제적으로 묘사된 속칭 「오렌지족」이거나 그러한 「오렌지족」을 흉내내고자 하는 사람 또는 「오렌지족」의 유희상대가 되고자 하는 젊은 여자들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의 얼굴과 전신이 잘 나타나고 마침 젊은 남자가 원고들에게 접근하는 듯한 모습으로 찍힌 이 사건 사진을 이 사건 기사 중에 삽입된 다른 사진들보다 훨씬 큰 크기로 기사에 넣은 이 사건 잡지의 편집 의도도 독자들에게 그러한 인상을 전하려고 한 데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 이 사건 사진을 삽입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원고들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원고들의 명예에 손상을 입혔다고 아니 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위와 같은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의 성별과 나이, 신분, 이 사건 사진의 촬영경위, 이 사건 기사의 내용, 게재된 사진의 크기 및 얼굴윤곽의 분명한 정도, 이 사건 잡지의 성격, 배포부수와 배포지역,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 전 , 같은 서 에게는 각 금 10,000,000원, 원고 김 에게는 금 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전 , 같은 서 에게 각 금 10,000,000원, 원고 김 에게 금 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잡지의 발행일 다

음날인 1993. 1.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4. 10.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도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 및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0. 20.

□

재판장 판사 손 기 식
판사 이 현 철
판사 전 명 호

기계식 ABS의 성능 및 유통상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지적하였고, 보도의
목적이 일반대중의 이익보호와 사회적인 손실방지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편파보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11. 11.자 판결(93가합21447)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1994년 11월 11일 자동차의 기계식 ABS(ANTI-LOCK BREAK SYSTEM의 약자, 미끄럼 및 잠김방지 브레이크)를 생산하는 유영실업 대표인 이 씨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판매업자들의 광고로 인하여 기계식 ABS를 신뢰하고 이를 구입

장착하는 현실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러한 기계식 ABS에 대한 과신이 가져 올 수도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보도의 목적이 원고의 개인적 사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일반 소비대중의 이익보호와 사회적인 손실 방지란 공공의 이익에 있었고, 실험결과치를 조작하였다는 증거 또한 없어 이 사건 보도가 허위로 왜곡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KBS-1TV 1993년 10월 25일 저녁 9시 뉴스「ABS 과신은 금물」이라는 내용의 기사에서, 물을 뿌린 철판 위에서 시속 60Km의 속도로 달리다 급제동 조치를 취했을 때 기계식 ABS는 미끄럼 방지 효과가 별로 없었으나, 만도기계의 전자식 ABS를 장착한 차량은 회전하지 않고 정지하였다고 보도하자, 원고는 비상식적이고 극한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기계식 ABS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강조하였다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하였다(93서울중재226).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문제의 보도에는 원고의 회사명이 거명되지 않았다고 주장, 중재불성립되자,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判 決 文

사 건 : 93가합21447 손해배상(기)

원 고 : 이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 윤 기, 정 명 석

피 고 :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표자 사장 홍 두 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문 호

변론종결 : 1994. 10. 14.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일부
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을제2호증과 같다),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2, 3,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의 1, 2, 갑제14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 10, 을제6호증의 1, 2, 을제7내지 9호증, 을제11, 12호증, 을제13호증의 1 내지 11, 을제16, 17, 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각 일부증언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9. 3. 25. 유영실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스포츠용품 및 자동차부품의 도, 소매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1993. 10. 5. 소외 주식회사 유진산기와의 사이에 위 소외 회사가 생산하는 가스식 및 유압식 에이 비 에스(ABS는 ANTI-LOCK BREAK SYSTEM의 약자로서 미끄럼 및 잠김 방지 브레이크장치이다)를 매수하여 원고의 책임과 부담으로 전국에 판매하기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당일 위 소외 회사에게 금 8,000,000원을, 같은 달 25일 금 18,5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위 에이 비 에스 400개(출고가격 가스식 1개에 금 80,000원, 유압식 1개에 금 43,000원)를 납품받았고, 같은 날 조선일보를 비롯한 국내 일간지등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국대리점 및 딜러모집광고를 게재하였고 같은 내용의 광고전단을 배포하였다.

ㄱ. 유영 에이 비 에스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며 1회 작동시 약 10 내지 15회의 펌핑 압력파가 발생, 더블 브레이크보다 5배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고 그 탁월한 제동력은 일반 브레이크에 비해 제동거리를 현저히 단축시키며 비에 젖어 미끄러운 길, 눈이 많이 쌓인 빙판길, 그리고 각종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하므로 마음놓고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있다.

ㄴ. 빙판길 및 빗길에서도 급제동시 차량선회 방지 및 조향을 유지한다.

ㄷ. 돌발사태시 급정거와 동시에 장애물 회피가 가능하다.

ㄹ. 시속 100Km 주행시 제동거리가 최대 30%까지 단축된다.

ㅁ. 고속코너링시 급브레이크 사용이 가능하며 전복위험이 감소된다.

ㅂ. 브레이크 잠김현상을 방지하여 핸들조작이 용이하며 타이어의 수명을 혁신적으로 연장한다.

ㅅ. 유압식 135,000원, 가스식 금 260,000원

나. 한편, 피고 공사에 소속된 기자인 소외 정 〃은 기계식 에이 비 에스의 성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전화를 받고 일반 운전자들로 하여금 기계식 에이 비 에스의 성능에 대한

과신 및 이로 인한 위험성을 경고할 생각으로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판매 장착되는 기계식 에이 비 에스의 문제점을 보도하기로 마음먹고, 소외 주식회사 만도기계의 기술연구소에 실험요청을 하여 위 연구소가 제공하는 에이 비 에스 테스트 트랙에서 1993. 10. 22. 아무런 에이 비 에스도 장착하지 않은 자동차, 위 유진산기가 생산한 기계식 에이 비 에스를 장착한 자동차, 위 만도기계에서 생산한 전자식 에이 비 에스를 장착한 자동차의 3종류를 가지고, ㄱ. 눈이 내린 빙판길과 마찰계수가 거의 비슷한 조건인 철판 위에 물을 뿌린 상태에서 시속 60킬로 미터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급정거 했을 때 바퀴의 잠김상태등을 보는 것, ㄴ. 철판 노면과 아스팔트 노면의 이질 노면위를 시속 60킬로미터로 달리다가 급정거 했을 때 차량의 상태를 알아보는 것, ㄷ. 아스팔트길에서 급정거 했을 때 바퀴의 잠김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앞의 물체를 피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세가지 실험을 하였는데, 위 실험결과 위 첫번째의 실험에서는 에이 비 에스를 달지 않은 차와 마찬가지로 기계식 에이 비 에스를 장착한 차도 바퀴의 잠김현상이 발생하였고, 위 두번째 실험에서는 위 두 종류의 차 모두 바퀴의 잠김현상이 발생하였고, 위 세번째 실험에서는 위 두종류의 차 모두 앞의 물체를 피하지 못하고 그 물체와 충돌함으로써 기계식 에이 비 에스는 미끄럼 방지효과가 별로 없었으나 만도기계의 전자식 에이 비 에스를 장착한 차량은 물을 뿌린 철판 위에서 급제동조치를 취했을 때에도 회전하지 아니하고 정지하였다.

다. 위 실험결과를 취재한 위 정 은 위 전자식 에이 비 에스 장착 차량의 실험부분을 빼고 그 취재내용의 일부를 편집한 다음 피고 공사의 보도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그로부터 보도결정을 허락받고, 1993. 10. 25. 피고공사의 21 : 00 뉴스 시간에 「에이 비 에스 과신은 금물」이라는 제목하에 별지 「1993. 10. 25. KBS 9 뉴스 정 리포트」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내용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일반적으로 자동차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장치중 미끄럼 방지 제동장치 또는 바퀴잠김 방지장치를 가르켜 에이 비 에스 라고 하는데, 현재 국내에는 완성된 자동차에 미리 장착되어 출고되는 전자식 에이 비 에스와 차량출고 후 장착되는 기계식 에이 비 에스(이는 유압식과 가스식 및 전기식 에이 비 에스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가 있는데, 전자식 에이 비 에스는 차량바퀴의 회전속도를 감지하는 센서와 속도센서가 감지한 각 바퀴의 회전속도에 따라 최적의 제동조건을 찾아 자기진단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인 전자제어장치(ECU)와 위 전자제어장치의 신호에 따라 각 바퀴의 유압을 제어하는 하이드로릭 유니트(Hydraulic Unit), 그리고 전자제어장치의 명령에 따라 브레이크의 유압을 증압 또는 감압시키는 장치인 모듈레이터(Modulator) 및 전자제어장치가 분석한 작동신호에 맞춰

각종 장치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전원을 공급하는 릴레이박스(Relay Box)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유압식 에이 비 에스는 원통형의 금속용기 내에 합성고무, 코일스프링 등을 내장하고 이것의 탄력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가스식 에이 비 에스는 위와 같은 금속용기 내에 질소가스를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기계식 에이 비 에스는 엄밀한 의미의 에이 비 에스 구성요소를 갖추지 않고 디스크나 드럼의 변형으로 차량제동시 발생하는 브레이크 유압의 불균형을 보완해 주는 압력 평형기(Pre-pressure Accumulator)의 일종인데, 현재 국내에는 정부에 의하여 공인된 에이 비 에스의 기준이 없는 관계로 기계식 에이 비 에스를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위 기계식 에이 비 에스를 브레이크의 성능이 우수한 에이 비 에스라고 광고하고 있다.

마. 한편, 전자식 에이 비 에스는 만도기계가 유일하게 생산하는 국산 전자식 에이 비 에스와 외국에서 수입한 외국산 전자식 에이 비 에스가 국내에 다량 보급되어 있으나 소비자들이에 의하여 그 성능에 관한 시비가 거의 없는 반면에, 기계식 에이 비 에스는 이를 판매하는 업체가 국내에 약 50여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자체 생산하는 업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업체가 자체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고 외주 가공형태로 아무런 기술적 지식의 축적없이 판매에만 치중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는 자동차의 출고후 쉽게 장착할 수 있는 관계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경정비업소에서도 대량으로 장착(브레이크 계통의 장착은 단순점검, 정비외에는 2급 이상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만 정비가 가능하다)되고 있는 형편이고, 그 소비자 가격이 전자식에 비해 약 1/5 정도로 저렴함에도 그 성능이 우수하다는 광고등에 힘입어서 현재 국내의 많은 자동차에 기계식 에이 비 에스가 장착 보급되어 있는데,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위 광고를 그대로 믿고 자동차 경정비업소등에서 기계식 에이 비 에스를 쉽게 구입, 장착한 후에 그 성능상의 하자로 인하여 차량 사고가 발생한 사례등을 소비자보호원등에 고발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 등 최근 기계식 에이 비 에스의 성능이 사회문제화되자 국내 언론매체가 이에 관하여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주장내용을 이유로 피고 공사의 이 사건 보도내용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편파보도로서, 이 사건 보도가 있는 후에 원고가 판매하는 기계식 에이 비 에스에 관하여 원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업자들이 그 계약을 모두 해약하고 공급받은 에이 비 에스 제품을 반품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직, 간접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 손해액의 산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그에 상당한 위자료의 청구

를 한다고 주장한다.

주장내용 : 피고소속 기자인 소외 정 ○○은 이 사건 보도를 위하여 에이 비 에스의 성능 실험을 함에 있어 에이 비 에스에 대한 소개자료, 테스트 장소 및 테스트 조건에 관하여 공정성을 담보할 자체 실험이 아닌 전자식 에이 비 에스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주식회사 만도 기계라는 특정업체가 제공한 장소와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기계식 에이 비 에스 제조업체의 참여를 배제한 채 성능실험을 하였는데, 위 정 ○○은 위 실험을 하기 전에 사전에 한국기유화시험연구원의 신 ○○○과장으로부터 기계식 에이 비 에스의 장점을 들어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실험결과를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시중에서 판매되는 기계식 에이 비 에스가 일률적으로 그 성능이 없으며 대부분 판매업자나 자동차 정비업소의 정비기술자격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불법으로 장착되고 있으며, 에이 비 에스에 대한 그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기계식 에이 비 에스를 자동차에 장착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과 같다는 과장보도를 하였고, 또한 만도기계가 생산하는 전자식 에이 비 에스의 성능에 관한 실험결과에 대하여는 위 보도물에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위 실험장소가 철판 위에 물이 뿌려진 상황임에도 이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이 단지 미끄러운 길이라고만 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비에 젖은 일반 도로에서 조차도 기계식 에이 비 에스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착각을 갖게 하였고, 그러한 현실성이 없는 실험조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실험을 한 것은 기계식 에이 비 에스의 성능을 악의적으로 감쇄시키기 위한 것이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방송을 포함한 언론기관의 보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어 그 부당한 보도 내용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언론기관에 물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보도 주체의 보도행위가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임을 먼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방송보도 주체에게 요구되는 보도자로서의 주의 의무란 방송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확인의무라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보도의 공정성이란 본질적으로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보도자로서의 「균형있는 보도」와 동일 시간이나 동량 지면을 할당하여 사물에 대한 쌍방의 견해를 편향되지 않게 취급하려는 보도경향으로서의 「형평적인 보도」를 의미하고, 보도의 객관성이란 전달자가 보도대상이 되는 사건이나 사물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보도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 바, 먼저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피고 공사의 피용자인 소외 정 ○○○ 기자와 피고 공사의 보도국장이 이 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

인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가에 관하여 보전대, 상대적으로 그 성능에 대한 시비가 덜 하고 에이 비 에스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자동차가 출고되기 전에 장착되는 관계상 그 유통구조 및 기능상의 문제점도 덜한 전자식 에이 비 에스에 비하여 기계식 에이 비 에스는 에이 비 에스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지 않고 있고 자동차의 출고후에 쉽게 장착할 수 있는 관계로 그 유통구조 및 기능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기계식 에이 비 에스의 성능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자주 표출되고 있고 그 성능상의 결함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손실이 증가함으로써 사회적인 관심거리가 된 점과 이 사건 보도내용이 사실(실험결과)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논평이 아닌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보도의 목적 및 그 보도내용을 기계식 에이 비 에스의 성능에 초점을 맞추고 전자식 에이 비 에스의 성능과의 비교를 하지 않은 점이나 전자식 에이 비 에스를 생산하는 업체가 제공하는 실험장소에서 실험을 하였다는 점만 가지고 보도의 공정성을 잃은 태도라고 할 수는 없으며, 한편, 위 정 은 기계식 에이 비 에스의 성능에 관한 최근의 논란과 소비자들의 불만전화를 받고 이 사건 보도를 하기로 한 점에서 그 보도의 동기에 어떤 편견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소비자들이 판매업자들의 광고로 인하여 기계식 에이 비 에스를 신뢰하고 이를 구입 장착하는 현실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러한 기계식 에이 비 에스에 대한 과신이 가져 올 수도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보도의 목적이 원고의 개인적 사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일반 소비대중의 이익보호와 사회적인 손실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에 있었고 또한 이 사건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는 위 실험결과를 취재 편집한 이 사건 보도내용과 기계식 에이 비 에스 판매업자들의 광고내용을 비교함으로써 판가름 날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광고한 기계식 에이 비 에스의 성능이 철판 위에 물을 뿌린 상태에서 실험한 결과(원고 광고에서 밝힌 조건인 눈 쌓인 빙판길과 거의 같은 조건이며 이러한 조건은 겨울철에 흔히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지도 않다), 원고가 광고한 바와 같은 성능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그밖의 실험에서도 원고가 광고한 것과 같은 성능은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 사건 보도내용은 위와 같은 실험결과를 있는 그대로 지적하고 있으며(편집하여 방영되지 않은 부분은 보도 내용의 객관성 여부와는 무관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도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이다), 기계식 에이 비 에스의 유통상의 문제점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지적한 것이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정 기 한국기유화시험연구원 신 과장으로부터 기계식 에이 비 에스의 장점 및 자료에 관하여 사전에 이를 듣고 교부받았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위 실험결과치를 조작하였다는

증거 또한 없어 결국 이 사건 보도가 허위로 왜곡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바이므로 비록 이 사건 보도내용중 기계식 에이 비 에스에 대한 과신은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수도 있다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도 이 점만 가지고 위 보도내용이 보도의 객관성을 잃은 태도에 기인한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 공사의 이 사건 보도내용이 피고 공사 직원의 고의나 상당한 주의의무를 결한 과실로 인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1. 11.

□

재판장 판사 이 종 찬
 판사 박 성 수
 판사 박 범 계